

2011년도판

JFSA 백서



일본대금융협회

Japan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번역 | 한국대부금융협회

인사말

일본대금업협회 회장 이지마 이와오



2011년도 협회 활동 내용을 보고하면서 각종 관련 자료와 공지 드렸던 정보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협회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의연금을 모금하는가 하면 각종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는 협회가 설립되고 4년이 경과한 해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활동도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개정 대금업법의 단계적 시행에 맞추어 체제를 정비해 왔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법령 준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금업계의 건전화는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서류 감사와 현장 감사 등의 감사 업무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의 철저를 도모해 왔는데 서류 감사의 평가 결과나 처분 건수에서 개선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의 또 하나의 역할인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2년 전부터 도입한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담과 민원, 분쟁접수를 받고 있는데 민원의 경우 2009년도에는 785건에 이르던 건수가 2011년도에는 247건으로 70%나 감소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운슬링도 949회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활동은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중인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와 소비자단체, 대금업계의 협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자율규제기능이 대금업계 전체에 미치도록 가입을 향상을 도모하고, 협회 가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회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회원중에 새겨진 협회 로고인 굴거리나무 마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금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로 정착시켜 회원 여러분의 신용 보완의 한 방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금업법이 공포되고 5년, 완전 시행되고 2년이 경과한 지금 금융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금업계가 믿을 수 있는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하여 건전한 대금업 시장의 창설을 위한 새로운 과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JFSA 백서 한국어판을 발행하면서



우리 협회에서는 일본 대금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대부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일본대금업협회가 매년 발행하고 있는 대금업 백서인 JFSA를 발행해 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에는 2011년도 판을 발행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의 일본의 대금업계는 대출총액을 연소득의 1/3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와 상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정 대금업법이 2010년 6월 완전 시행 되면서 대금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그 파장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그 피해를 가져왔는데 일본 대금업협회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토대로 대금업법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금융청 장관에게 제출했고 금융청은 이를 받아들여 대금업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판 JFSA에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협회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법령 개정 동향과 통계자료 이렇게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록에는 대금업계와 대금업체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앙케트 조사 결과가 게재되어 있어 일본의 대금업계와 이용자 현황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규제의 칼바람 속에서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준법영업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경영체제의 내실화, 그리고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꾸준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를 통하여 과도한 규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규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 대금업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4월 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이승응

CONTENTS

제1편 협회 활동 보고

제1장 협회 활동 개요	3
제2장 업무에 관한 사항	13
1. 회원사 수 및 가입율 추이	13
2. 컴플라이언스 활동	14
3. 회원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구축	23
4. 상담·민원·분쟁	24
5. 감사의 실시	34
6. 홍보·계몽 활동	48
7. 조사 연구 활동	50
8.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등록·강습	51
9. 행정협력사무	60
10. 동일본대지진 대응	61
11. 각종 의견·요청	62
부록 대금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자금공급기능 관련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개요)	72
제3장 총회·이사회·위원회·협의회·임원 등	91

제2편 법령 개정 동향

제1장 대금업법 관련 법령 개정 동향	105
제2장 개정 대금업법의 구체적인 내용	115

제3편 통계자료

제1장 금융청 대금업 관련 자료	127
제2장 일본대금업협회 월사통계자료	139
제3장 공시정보·기타 통계 자료	153
연대표	164

제1편

협회 활동 보고

제1장 협회 활동 개요

저희 협회는 대금업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도에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개정 대금업법 제4조 시행(완전 시행)후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협회의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확립을 지향함과 아울러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은 물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1. 자율규제부문 활동

1) 회원사에 대한 법령·각종 규칙의 준수 철저 및 각종 규칙의 정비·충실

2010년도까지는 제4조 시행(완전 시행)과 완전 시행 후의 개정 대금업법,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 규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금업자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계몽 활동을 실시했다.

2011년도에는 회원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법령과 각종 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도모하는 한편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지도 등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확립을 지향했다.

- ① 회원사가 법령과 각종 규칙 등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컴플라이언스 체제 정비를 위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전국 10개소에서 업무 연수회와 매월 기관지를 이용하여 주지하는 한편 회원사의 문의와 법령·각종 규칙 등에 관한 실무 상담 등 연간 4,429건에 대응했다.
- ② 회원사의 사내 규칙 적정성과 관련하여 1,542개 회원사의 사내 규칙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하는 한편 작성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12년 3월 기준 98.0%의 회원사가 사내 규칙이 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금업법상 교부·게시·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 법정 표시 서류나 금융ADR¹⁾ 대응 등에 따라 개정된 업무용 서식을 책정하여 제공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1) 금융 분야의 분쟁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금융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라고 하며, 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무관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금융ADR기관이라고 한다.

- ③ 회원사가 법령·판례 등에 따라 적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판례 및 협회의 각종 규정, 행정, 협회의 처분 사례 등에 대해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한 “법령·판례 등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④ “개인 채무자의 사적 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민법(채권 관계) 개정에 관한 중간적인 논점 정리”,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시안”,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등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와 기관지를 이용하여 회원사는 물론 대금업체 전체에 대한 주지를 도모했다.
- ⑤ 광고 심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전화번호부에 신규로 접수된 광고 700건의 심사를 실시하여 이 중 678건을 승인하였고 텔레비전 광고 3,786건, 신문·잡지 광고 19,304건, 전화번호부 광고 1,053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령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11개 회원사를 개별 지도했다.
 더불어 전체적인 대금업계의 광고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일본민간방송연맹과 일본신문협회, 일본광고심사기구(JARO)등과 같은 광고 관련 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악질적인 광고는 금융청 등에 보고하고, 해당 광고의 삭제 및 해당사업자의 적발 등을 요청했다.
- ⑥ 회원사가 보고한 법령 등 위반 신고 414개 사안과 개인정보 누설 등 사안 1,212건 중 4개 회원사(서류감사 시 대응 미비 1개 회원사 포함)를 처분(회원권 정지 3개사, 견책 1개사)했으며 3개 회원사에 권고, 6개 회원사에 문서 주의, 개선 지도를 함과 동시에 법령 등 위반 신고 사안을 위반 조항별로 집계한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의 환기했다.

2) 상담·민원·분쟁해결 대응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는 2010년 9월 15일, 금융청장관의 지정을 받아 대금업계의 지정분쟁해결기관(금융 ADR)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 및 대금업 업무에 대한 신뢰 확보를 도모하면서 2011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 대응·민원 처리·분쟁해결절차 및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 ① 상담 대응·민원 처리·분쟁해결절차의 접수건수는 “상담”이 42,886건(전년 대비 -7.3%), “민원”이 247건(전년 대비 -29.8%)이었으며,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분쟁”

은 2011년도에 7건을 수리했다. 상담·민원·분쟁의 총 신청건수는 43,140건으로 지난해 대비 7.5% 감소했다. 대출자숙제도²⁾의 경우에도 등록이 1,350건, 철회가 604건, 정정이 5건으로 총 1,959건(전년 대비 -6.6%)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 지원의 경우에는 신규 상담자 116명을 포함해 179명에게 949회의 카운슬링을 면담 또는 전화로 실시했다.

- ② 각 도도부현³⁾ 내의 주요 소비생활센터와의 제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문 활동(대상: 144개소, 총 방문횟수 789회)을 실시했다.

2011년 8월 30일, 전국소비생활상담원협회, 소비과학연합회, 주부연합회 등과 같은 주요 소비자단체(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대금업협회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활동 현황 등에 관한 설명 및 향후 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한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 ③ 자금수요자 등의 건전한 가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가게 관리 진단/소비 행동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의식을 높이고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하였다.

- ④ 금융청과 재무국, 소비자단체, 소비생활센터 등의 요청을 토대로 소비생활상담원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에 강사를 파견하여 “협회의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현황”과 “심리 카운슬링을 기준으로 한 상담원으로서의 자세와 대응 스킬” 등에 대해 33개 단체, 1,31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부의 다중채무 문제 개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대책 본부(또는 동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 39개 자치단체와의 제휴를 한층 더 강화했다.

3) 회원사에 대한 감사 실시

2011년도에는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에 따라 필요한 각종 체제의 정비 현황 등과 관련하여 법령·자율규제기본규칙 등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한다”는 2011년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 결과가 회원사의 내부 관리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2) 대출을 계속해서 받는 가족이 있거나 본인의 낭비벽 등을 이유로 대금업체에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다. 의뢰를 받은 일본대금업협회는 자숙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의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기관의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3)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 ① 현장 감사의 경우 7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반감사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특별감사로서 서류감사보고서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follow-up감사⁴⁾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의 요청과 자금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동적 감사⁵⁾를 실시했다.
 그 결과 84개 회원사는 현장 감사를 실시했고, 이 중 19개 회원사의 57개 사안에 대해 개선 지도 등을 실시했다.
- ② 서류 감사의 경우 2011년 12월말 기준 총 회원사 1,454개사를 대상으로 “내부 관리 체제의 실시 현황 확인”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72개 설문 항목으로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했다. 서류 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공표하고 2012년 7월 회원사에 통지했다.
- ③ 감사를 통하여 행정당국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과 감사 결과 및 개선 상황 등에 대해 의견·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등 한층 더 강한 제후를 도모했다.

2. 대금업 전략 부문 활동

1) 적극적인 정보 공개·홍보 실시

당 협회는 지금까지 자금수요자와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앙케트 조사를 통해 업계의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회원사가 업무 건전화로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실시해 왔다.

2011년도부터는 새롭게 전략적 홍보로 전환하기 위해 회원사가 대금업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금업계의 사회적 평가 및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건전화 도모 및 동향 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등을 다음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했다.

- ① 월간지 “JFSA NEWS” 발행 (매월 1회, 4,500부 발행)
- ② 기관지 “특집 JFSA” 발행 (연 2회 발행 : 4월 7,000부, 10월 8,000부 발행)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협회와 금융ADR 계약을 체결한 대금업체와 소비자단체, 변호사회, 사법서사회 등 배포기관을 확대했다.

4) 협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지도사항의 개선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5) 감독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항목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는 감사

- ③ 협회 홈페이지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업체 피해 방지와 관련된 정보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업계 동향 및 협회 활동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공표했다.
- ④ “월차 통계 자료”와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대금업체의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 등 조사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 ⑤ “월간 소비자신용”에 협회 활동 기사를 매월 기재하고 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2) 자금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식의 보급 및 계몽

당 협회는 지금까지 소비자 계몽을 위한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장 강좌(강사 파견) 실시 및 협회 홈페이지에 악질업체 검색 사이트를 게재하는 등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계몽 활동을 실시해왔다.

2011년도에는 일반소비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금업 관련 금융 지식의 보급 계몽 활동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몽 활동을 실시했다.

- ① 자금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책자 “론·캐싱 Q&A BOOK”을 발행하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성인식(361곳)과 소비생활센터(246개 센터) 등에 208,697부를 무상 배포했다.
- ② 금전 교육교재 “생활과 론, 크레디트”와 이 교재의 해설서를 희망하는 교육 현장과 소비생활센터 등에 제공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소비생활센터의 강좌 및 워크숍 등에서 본 교재를 활용했다.
- ③ 공익재단법인 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소비자교육교재 자료 표창”에 응모하여 “론·캐싱 Q&A BOOK”이 인쇄자료 부문, 금전 교육교재 “생활과 론, 크레디트”와 해설서가 시청각 자료 부문에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④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포스터(40매)와 리플릿(2,480매)을 회원사와 소비생활센터 등에 배포했다.
- ⑤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소비생활센터,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학생과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계몽을 위한 강사 파견과 출장 강좌를 총 60회 실시하여 2,198명이 참가했다.
- ⑥ 협회 홈페이지 내에 악질업체 검색사이트를 게재하여(2012년 3월 현재, 622건) 자금수요자 등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했다.

- ⑦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활동 등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협조했다.
- ⑧ 2011년 5월, 금융청이 주최한 “당신은 괜찮은가요? 캠페인 포스터”와 2011년 10월, 금융청이 의뢰한 “다중채무자 대상 상담 창구 안내 포스터”의 배포 및 게재를 회원사에 게 의뢰하는 등 정부 홍보에 협력했다.

3) 대금업 현황 관련 조사 연구의 실시

- ① 통계자료로서의 연속성적인 관점과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정착 등을 고려하여 대금업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 공급 기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금수요자”와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실시시기	실시내용	대상	비고
2011년 10월	대금업자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앙케트 조사	회원사, 금융ADR계약 체결 대금업체	2012년 2월 24일 공표
2011년 11월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자금수요자	
2011년 4월~ 2012년 3월	월차실태조사 ※2011년 8월말 현재 62개사	회원사	매월 공표

- ② 2010년도에 실시한 각종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여 “2010년도판 JFSA 백서”를 2011년 6월에 발행했다.

4) 법령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정부 건의 사항

대금업무 관련 세제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2012년도 세제개정 요청을 책정한 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 ① 금융청에 제출하여 2011년 8월 3일, 아즈마 내각부 차관이 참석한 정부 공청회에서 건의했다.
- ② 2011년 9월 22일에 실시된 민주당의 “정책 조사회 세무금융부문 회의”와 같은 해 11월 30일에 실시된 자유민주당의 “예산·세제에 관한 정책 간담회”에서 건의했다.

5) 연수 등의 실시

- ①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재무(지)국의 대금업 담당자가 발표한 “완전 시행 후의 유의할 사항과 체제 검사의 실시 등에 대해” 와 당 협회의 자율규제부문 담당 부장이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확립을 위한 과제” 를 테마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된 지구협의회와 병행하여 업무 연수회를 실시하여 회원사와 금융ADR 체결 대금업자 총 1,063개 업체에서 1,625명이 참석하였다.
- ② 2011년 11월 24일에 등록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설명회를 2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 ③ 2011년 10월 5일과 같은 해 10월 12일에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청의 “2011년도 검사 기본 방침” 설명회를 오사카에서 실시하여 91개 회원사에서 120명 참석했으며 도쿄에서 실시하여 146개 회원사에서 233명이 참석했다.

6) 협의회 활동 현황

- ① 2011년 6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전체회의(오키나와현은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4회 정기총회 보고를 하는 한편 회원사의 협회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의견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해 촉진을 도모했다.
- ② 지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2011년 12월 16일에 도쿄에서 개최하여 협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완전 시행 후 현지 자금수요자에게 미친 영향 등 각 지구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

3. 주임자 자격 부문 활동

1) 자격 시험의 실시

- ① 전국 17개 지역(26개 시험장)에서 2011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1회 실시했다.

② 시험 결과

시험일	2011년 11월 20일(일)
시험신청자수	12,300명
응시자수	10,966명
응시율	89.2%
합격자수	2,393명
합격율	21.8%
합격발표일	2012년 1월 12일(목)

2) 주임자 등록 사무 처리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했다.

(2011년 4월 1일 ~ 2012년 3월 31일)

등록신청서 접수 건수	2,082건
등록완료 통지 발송 건수	2,113건
2012년 3월 31일 현재 등록 주임자 수	40,219건

3) 등록 강습 사무 처리

① 2011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은 2회 개최하여 총 431명이 수료했다.

② 강습 실시 및 결과

강습회장	오사카	도쿄	연도별 합계
강습일	2011년 9월 1일(목)	2011년 12월 1일(목)	-
수강신청자수	130명	315명	445명
수강자수	126명	306명	432명
수강율	96.9%	97.1%	97.1%
수료자수	125명	306명	431명

4. 총무 부문 활동

1) 회원사 수 추이 (2011년 4월 ~ 201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
가입	8	3	5	6	2	5	3	1	3	2	3	4	45
탈회	△7	△2	△6	△5	△2	△5	△3	△7	△3	△3	△5	△9	△57
폐업	△17	△8	△10	△14	△8	△9	△7	△3	△13	△9	△10	△10	△118
미갱신	△1	0	0	△1	△1	△2	△1	△2	0	△3	△1	0	△12
등록취소	0	△1	0	△2	0	△2	△1	0	0	0	△1	△1	△8
제명	0	0	0	0	0	0	0	0	0	0	0	△1	△1
승계·기타	0	0	0	0	0	0	1	0	0	0	0	0	1
월말회원사수	1,543	1,535	1,524	1,508	1,499	1,486	1,478	1,467	1,454	1,441	1,427	1,410	
협회가입율	60.3%	60.6%	60.6%	60.4%	60.4%	60.5%	60.8%	60.5%	60.5%	60.3%	60.2%	60.0%	

2) 협회 가입 촉진

- ① 협회 홈페이지에 “입회 안내”와 “가입신청서” 등을 제공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가입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했다.
- ② “협회 가입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여 가입을 권장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 ③ 전국 10개소에서 실시한 업무 연수회에 참가한 비협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 관계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을 촉진하는 활동을 했다.
- ④ 신규로 대금업 등록을 신청한 자와 비협회원인 대금업자의 등록 신청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사내규칙 책정과 등록 신청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비협회원과의 접점을 강화하여 가입 촉진을 도모하는 시책을 펼쳤다. 이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지인 “특집 JFSA”에 게재하여 비협회원인 대금업자에게 고지하고 행정기관에도 알려 사내규칙 정비 등 행정기관이 협회와 연계하도록 의뢰하여 가입 촉진을 도모했다.
- ⑤ 도쿄도와의 연대를 통하여 가입을 촉진하고자 도쿄도가 실시하는 “등록 갱신 시 연수”에 참석하여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협회 가입 촉진을 도모했다.

3) 행정 협력 사무 관련

회원사의 사무 부담 경감과 적정한 작성 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대금업자 등록 신청 절차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금업자 등록 신청서·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업무보고서”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다.

4) 규칙의 개정

회원사로부터 업무보고서를 징구 받을 수 있도록 정관 시행에 관한 규칙 제6조(보고사항)에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회원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5) 시스템 환경의 정비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확충한 “회원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6) 지부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 추진

2007년 12월 협회 설립 당시 회원사 수가 4,063개사였는데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1,410개사로 격감하자 협회 규모 축소가 급선무인 점을 감안하여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 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49명의 직원이 퇴직했다.

그리고 지부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부 규칙에 의거하여 지부에 속한 회원사 수가 20개사 미만이면서 재무국 소재지 지부 이외의 26개 지부를 “특례 지부”(상시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지부)로 지정했다.

7) 내부 감사의 실시 및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의 철저

협회 업무의 정비와 운용 상황을 검증하여 업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내부 관리 체제의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부의 8개 부서와 38개 현 지부를 대상으로 내부 감사(지부는 서면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향상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토대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의 철저를 기했다.

제 2 장 업무에 관한 사항

1 등록대금업자수, 회원사 수 및 협회 가입율 추이

협회 설립당시인 2007년 12월부터 2012년 3월말까지의 등록 대금업체수와 회원사 수, 협회 가입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국의 등록 대금업체수는 협회 설립당시인 2007년 12월에는 10,108개사였는데 2012년 3월말에는 2,350개사로 약 77%가 감소했다. 회원사 수도 협회 설립 당시인 4,063개사에서 2012년 3월말에는 1,410개사로 약 65%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협회 가입율은 협회 설립 당시에는 40.2%였는데 2012년 3월말에는 60.0%로 약 20포인트 상승했지만 1년 전인 2011년 3월말의 60.3%와 비교하면 0.3포인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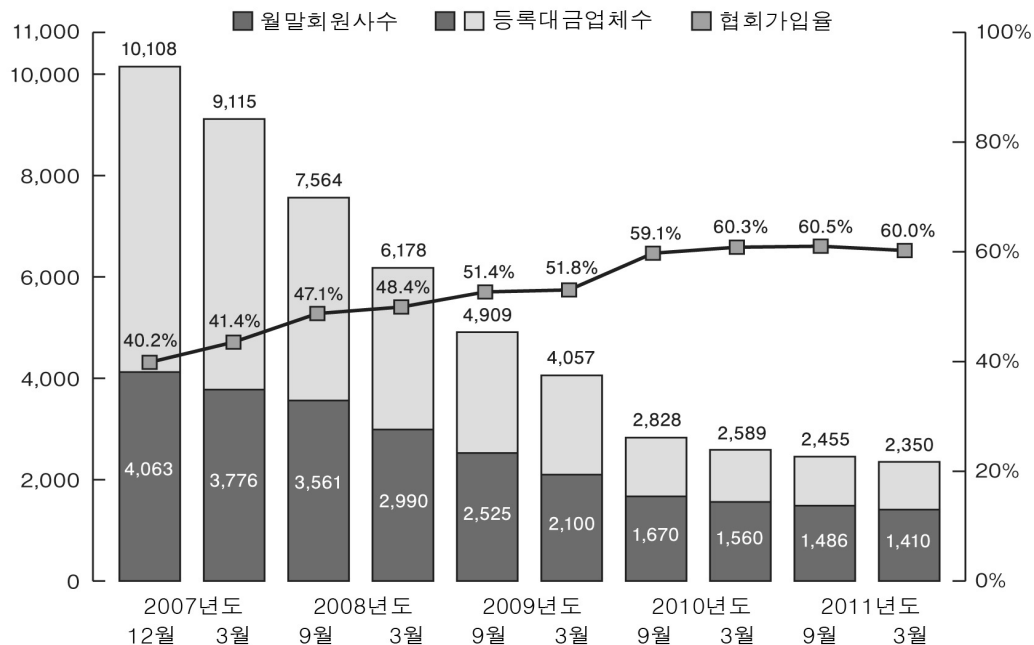
등록 대금업체 수와 회원사 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개정 대금업법의 시행으로 진입 요건이 엄격해졌고, 금리 규제와 총량규제⁶⁾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고 합병이나 폐업·철수하는 업체가 연이은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한층 더 협회 가입율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회원사수 및 가입율 추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2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월말회원사수	4,063	3,776	3,561	2,990	2,525	2,100	1,670	1,560	1,486	1,410
등록대금업체수	10,108	9,115	7,564	6,178	4,909	4,057	2,828	2,589	2,455	2,350
협회가입율	40.2%	41.4%	47.1%	48.4%	51.4%	51.8%	59.1%	60.3%	60.5%	60.0%

6) 소비자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 총액이 연 소득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금하는 규제



2. 컴플라이언스 활동

1. 법령개정 등 대응

1) 동일본 대지진 대응

동일본 대지진으로 자금수요자 등이 받은 영향을 고려하여 대금업법 규정 운용의 완화를 요구한 요청서를 협회장 명의로 금융청 장관에게 2011년 4월 14일자로 제출했다.

당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28일 교부, 시행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에 대응하여 회원사와 대금업체에게 공지함과 아울러 이후의 연장(2011년 10월 28일)과 종료(2012년 3월 31일)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더불어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이른바 이중론⁷⁾ 대책인 “개인 채무자의 사적 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금융청 등 관계기관과의 조율을 실시하여 2011년 8월 22일자로 회원사와 대금업자에게 운용하도록 공지했다.

7) 주택론 등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가 재해로 피해를 입어 기존 주택론 상환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해 또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함

2)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 관련 정·성령⁸⁾ 대응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공포된 정·성령 등을 2012년 3월 28일자로 회원사와 대금업자에게 공지했다.

2. 사내규칙의 작성 지원·지도

1) 업무의 개요

2010년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면서 2010년 6월에 완전 시행된 개정 대금업법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사의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제11조에 따른 사내체제 정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내규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책정 현황을 점검하여 개별적으로 책정 지원과 지도를 2011년도에 실시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사의 사내규칙을 점검하고 개별적으로 책정 관련 지원과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2012년 3월말까지의 전 회원사의 사내규칙 점검현황>

총점검수	폐업	탈회	2012.3.31.기준 회원사수
1,542개사	91개사	41개사	1,410개사

<2012년 3월말 현재 점검결과>

	적격 사내규칙	부적격 사내규칙	합계
1차 ~ 5차 점검	1,514개사	28개사	1,542개사
폐업·탈회 등	▲132개사	-	▲132개사
합계	1,382개사 (98.0%)	28개사 (2.0%)	1,410개사 (100%)

사내규칙을 점검할 대상은 2010년도 서류감사 대상 1,477개사에 이후 신규로 가입한 65개사를 합하여 1,542개사였지만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폐업과 탈회한 업자 132개사를 제외하면 1,410개사가 된다.

8) 정령과 성령으로 정령은 내각이 발표하는 명령이며 성령은 재무성이나 국토교통성 등과 같은 성이 발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지도 및 지원방법은 제출된 사내규칙을 바탕으로 지적당한 부분에 대한 지도를 문서 송부와 전화로 실시했으며 지도 후 사내규칙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차 점검까지 실시)

거의 1년에 걸친 지원과 지도로 전 회원사의 98.0%가 적합한 사내규칙을 책정하게 되었다.

3. 업무상 문제해결 지원 · 지도

1) 회원사의 업무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전화 대응 현황

회원사로부터의 법령 및 각종 규칙 등과 관련한 실무 상담이나 사내규칙 책정, 광고 사전 심사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회원사의 각종 문의 및 상담건수〉

(단위: 건)

연도 분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사내규칙 등	1,274	1,413	152	541	1,518
광고권유 등	601	1,239	1,457	1,411	840
법령 등 해석	689	3,055	4,249	5,470	1,607
서식 관계	210	390	296	734	220
ID/패스워드	126	60	5	0	0
기타	230	513	476	942	244
계	3,130	6,670	6,635	9,098	4,429
(월평균)	783	556	553	758	369

2011년도에는 대금업법 완전시행이 있었던 전년도에 비해 문의 건수가 거의 절반 정도 감소했는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내규칙의 개별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여 사내 규칙 관련 문의가 전년대비 28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문의 내용은 FAQ등을 이용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관지에 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게재했다.

2) 업무용 서식 및 법정 교부 서류 등의 모범양식 제공

대금업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금업법 상 교부·게시·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서류를 현재 협회가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고 있는 업무용 양식을 회원사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판매하고 있지 않은 “법정 교부 서류 등” 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업무용 서식 및 법정교부서류 등의 일람〉

	서식명	근거법령 등
1	※대출신청서(고객카드)	감독지침Ⅱ -2-12-1(1)①나
2	종업원증명서	법12조의 4 제1항
3	종업원명부	법12조의 4 제2항
4	대부조건표	법14조
5	○대부계약사전설명서	법16조의 2 제1항
6	※연대보증계약개요설명서	법16조의 2 제3항
7	○※연대보증계약상세설명서	법16조의 2 제3항
8	※연대보증계약상세설명서 보충설명서	법16조의 2 제3항
9	○※차용증서	법17조 제1항
10	○※연대보증계약서	법17조 제3항
11	※영수증	법18조
12	특정공정증서 작성 사전설명서	법20조 제3항
13	채권양도통지서(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통지)	법24조 제1항
14	대출계획서(사업자금/단기긴급자금/창업자금)	시행규칙 10조의 23 제2항 제4호
15	교섭경과기록부(법19조 장부의 일부)	시행규칙 16조 제1항 제7호
16	개인정보취급동의서(CIC사 신청서용)	법41조의 36 제1항
17	개인정보취급동의서(CIC사 계약서용)	법41조의 36 제2항
18	※개인정보취급동의서(JICC사 신청서용)	법41조의 36 제1항
19	※개인정보취급동의서(JICC사 계약서용)	법41조의 36 제2항

(주) ○ 표가 있는 서류는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협회 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표가 있는 서류는 회원사 전용 업무용 서식으로 협회 지부에서 판매

3) 법령·판례 등 검색 시스템의 제공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령·판례 등에 의거한 적절하고 적정성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에 협회의 각종 규정 등을 추가하여 열람, 검색할 수 있는 맞춤형 “법령·판례 등 검색 시스템”을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행정기관과 협회의 처분 사례를 추가한 “처분 등 사례 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 업그레이드하여 수록 데이터나 갱신 빈도의 향상 및 행정기관이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도 게재했다.

4. 광고 사전 심사·지원·지도

1) 광고 사전심사의 연도별 실시 현황

회원사의 중요한 영업활동 중 하나인 광고가 한 때 과장광고와 다중채무자를 양산한다고 하여 문제시되었던 점과 자금수요자가 업체 및 상품을 선택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2008년 8월 신문·잡지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텔레비전·전화번호부에 게재되는 개인 대상 무담보 무보증 대부계약과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사전심사광고대상인 광고가 협회의 승인을 받고 게재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사의 신규신청건수〉

(단위: 건)

매체(심사 개시 시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신문·잡지 (2008년 8월부터)	662	570	866	403
전화번호부 (2009년 8월부터)	-	179	264	194
텔레비전 (2008년 9월부터)	31	92	113	103
합계	693	841	1,243	700

2010년도에는 대금업법 완전시행으로 대부조건 등을 변경한 광고 심사 신청이 증가한 데 비해 2011년도에는 대금업자가 감소하여 광고심사 신청도 감소했다.

2) 광고 중인 광고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사전심사 대상인 광고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규칙” 제48조에 규정된 “방송 시간대”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조사를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광고의 미승인 광고비율 (미승인건수/조사건수)

· 텔레비전 광고의 자율규제위반건수 (전체광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텔레비전
2008년도	17.2% (666/3,872)	-	2건 (-)
2009년도	1.3% (192/14,322)	-	4건 (0.09%)
2010년도	0.9% (211/23,595)	13.9% (132/948)	1건 (0.03%)
2011년도	0.45% (86/19,304)	1.6% (17/1,053)	2건 (0.05%)

모니터링 조사를 시작한 2008년도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게재된 신문 광고 비율이 17.2%였지만 해당 광고를 게재한 회원사에 대한 지도 및 광고 관련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전 매체의 미승인 광고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전 심사와 모니터링 조사로 2011년도 말 기준 회원사 광고의 99.5%가 적정한 광고로 실시되고 있으며 광고 실시 현황은 큰 폭으로 건전화되었다.

3) 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대응 현황

적정한 광고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고 관련 단체와 제휴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전화번호부 광고 기준을 작성하고 있는 NTT 타운페이지 주식회사와 일반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반사단법인 일본신문협회, 공익사단법인 일본광고심사기구(JARO)와의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등과 같은 악질적인 업자의 광고도 감시하고 있다.

5. 법령 등 위반 신고와 조치 현황

1) 회원사의 법령 등 위반 관련 신고 현황

당 협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당 협회의 감사 또는 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법령 등 위반사안과 관련된 “발생원인”과 함께 “시정 개선 현황”과 향후 예정된 “재발방지책”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회원사에게 필요한 개별 지도 내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

〈법령 등 위반 신고 해당 조문별 일람표 (연도별)〉

(단위: 사안 수)

해당조문 등	연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계	
						건수	구성비
8조 (변경신고)		59	63	161	82	365	21.9%
12조의 3 (대금업무취급주임자)		6	6	11	2	25	1.5%
12조의 6 (금지행위)		6	5	8	0	19	1.1%
13조, 13조의 2,3,4 (상환능력 조사 등)		3	0	90	53	146	8.8%
14조 (대부조건 등의 게시)		5	6	34	12	57	3.4%
15조 (대부조건 등의 광고 등)		5	8	27	9	49	2.9%
16조의 2 ((보증)계약체결 전 서면교부)		3	6	35	38	82	4.9%
17조 (계약체결시의 서면교부)		22	23	69	48	162	9.7%
18조 (수취증서의 교부)		11	14	30	9	64	3.8%
19조 (장부의 구비)		26	8	48	13	95	5.7%
21조 (추심행위규제)		23	7	36	13	79	4.8%
41조의 35,36,37,38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0	0	9	44	53	3.2%
출자법 5조 2항 (고금리 처벌)		13	3	6	1	23	1.4%
자율규제기본규칙		44	34	66	32	176	10.6%
기타		56	42	116	58	272	16.3%
합계		282	225	746	414	1,667	100.0%

회원사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출한 법령 등 위반 신고의 총 건수는 1,667건이었다. 개정 대금업법이 2010년 6월 18일 완전 시행됨에 따라 과잉대부를 억제하기 위한 총량규

제의 도입,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배치 의무화, 사전 교부 서면의 교부 의무 도입 등이 시행되었고 2010년도 이후에는 상환능력 조사 등과 관련된 법 제13조 등의 위반과 지정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취급과 관련된 법 제41조의 35 등의 위반, 사전 교부 서면과 관련된 법 제16조의 2를 위반한 신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0년도에 신고 건수가 이전 연도의 신고건수에 비해 급증한 이유는 2011년 1월에 실시한 협회의 서류 감사 시 행정당국의 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법령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서 지난 연도에 발생한 법령 등 위반사안이 다수 신고 접수되어 증가하게 되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신고가 증가한 요인이 해소되면서 전년 대비 56%로 신고건수가 감소했지만 업무 위탁업체의 시스템 미비로 제41조 개인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한 법령 등 위반 신고가 증가했다.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법령 등 위반에 대해서는 협회 설립 이후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회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례를 소개하여 주의 환기를 하고 있다.

2) 회원사에 대한 조치 현황

회원사가 제출한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의 경우 “규율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해당 회원사에 대한 정관상의 처분 등의 필요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회의 등에 회부하여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처분 등의 조치가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자율규제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조치건수 일람표 (연도별)〉

(단위: 회원사수)

연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계
조치	제명	0	6	5	0	11
	회원권 정지	86	51	8	3	148
	견책	26	1	2	1	30
	소계	112	58	15	4	189
처분 이외의 조치	권고	31	0	0	3	34
	문서주의	62	6	10	6	84
	소계	93	6	10	9	118
합계		205	64	25	13	307

(주) 서류감사에 따른 조치 포함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조치를 받은 회원사는 총 307개사이며, 정관 제21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회원사는 “제명”이 11개사(이 중 협회감사에 따른 처분은 10개사), “회원권 정지”가 148개사(협회감사는 138개사), “견책”이 30개사(협회감사는 27개사)였다.

이 밖에도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관 22조에 의거하여 “권고”를 받은 회원사가 34개사(협회감사 29개사), “문서 주의”를 받은 회원사가 84개사(협회감사 58개사)로 집계되었다.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회원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제명을 당한 회원사가 없었고 처분이나 처분 이외의 조치를 받은 회원사도 전년도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다.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회원사 중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사는 이후 시정 개선 현황 및 재발 방지책 등의 진척 상황 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 및 지도 등을 하고 있다.

6.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보고 사안

〈2011년도 상반기(2011년 4월 ~ 9월)〉

(단위: 건)

누설 등의 양태		누설 등을 한 자			
		종업원	위탁처 배송자	배송자 이외의 위탁처	기타
① 배송 등의 오류	525	345※1	176※2	2	2
② FAX 오류 송신	18	16	0	2	0
③ 메일의 오류 송신	0	0	0	0	0
④ 직접 교부 시 오류	3	3	0	0	0
⑤ 구두 누설	1	1	0	0	0
⑥ 오류 폐기	6	6	0	0	0
⑦ 분실	38	18	6	4	10
⑧ 신용정보기관의 오류 등록	0	0	0	0	0
⑨ 도난	1	0	1	0	0
⑩ 불법적인 액세스	4	0	0	1	3
⑪ 기타	11	7	1	1	2
합계	607	396	184	10	17

※1 345건 중 285건이 고객이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

※2 176건 중 164건이 우편사업(주)의 오류 배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하반기 (2011년 10월 ~ 2012년 3월)>

(단위: 건)

누설 등의 양태		누설 등을 한 자			
		종업원	위탁처 배송자	배송자 이외의 위탁처	기타
① 배송 등의 오류	522	339※3	179※4	4	0
② FAX 오류 송신	18	14	0	1	3
③ 메일의 오류 송신	13	12	0	1	0
④ 직접 교부시 오류	1	1	0	0	0
⑤ 구두 누설	1	1	0	0	0
⑥ 오류 폐기	9	7	1	1	0
⑦ 분실	33	22	5	4	2
⑧ 신용정보기관의 오류 등록	1	0	0	1	0
⑨ 도난	2	0	1	1	0
⑩ 불법적인 액세스	3	0	0	0	3
⑪ 기타	2	1	0	0	1
합계	605	397	186	13	9

※3 339건 중 275건이 고객이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

※4 179건 중 161건이 우편사업(주)의 오류 배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회원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구축

1) 구축 배경

2011년도는 개정 대금업법이 시행되고 5년째에 접어드는 해로 일본대금업협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금의 회원관리 시스템은 필요한 미션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회원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① 대금업계 전체에 미친 영향 조사 필요성
- ②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 필요성
- ③ 업계의 건전화 어필의 필요성

2) 회원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개요

① 업무 시스템의 통합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각부서와 각 업무별로 독립해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 공정이 가시화되도록 “업무 처리 매뉴얼”을 정비했다.

② 회원사의 업체 정보를 통합하고 일원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실태를 파악한 효과적인 지도와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축적된 업체 정보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각종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업체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③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기능·분석 환경의 정비

이용자 스스로 필요시 바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다.

3) 향후 전개

회원 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업체 정보의 등록 환경이 정비되어 일원화 관리된 회원사 정보가 축적됨으로써 분석 환경이 한층 더 구비되어 갈 것이다.

앞으로는 회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분석 틀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꼼꼼한 지도를 실시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4) 상담·민원·분쟁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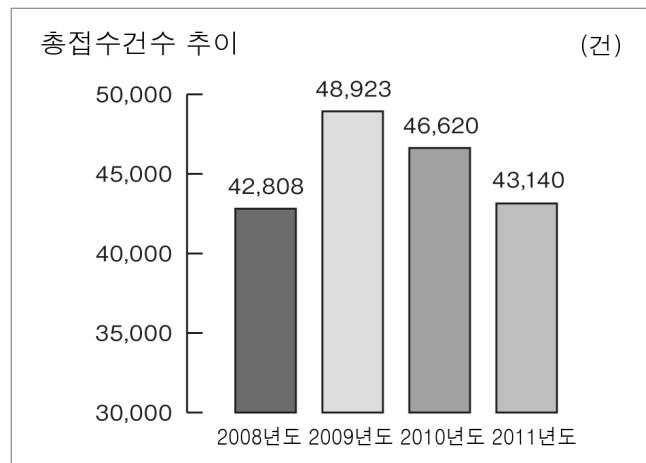
1) 총 접수건수

2011년도(2011년 4월 1일~2012년 3월 31일)에 접수된 상담과 대금업무 관련 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 건수는 “상담”이 42,886건, “민원”이 247건이었으며, 상담과 민원건수를 합하면 총 43,133건이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대금업무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2011년도 수리 건수는 7건이었으며 “상담·민원·분쟁”의 총 접수건수는 43,140건으로 조사됐다.

“상담”과 “민원”을 접수 받은 경로별로 살펴보면 전화로 접수받은 건수가 42,607건(98.8%),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나 도도부현 지부 상담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건수가 431건(1.0%), 문서 등으로 접수한 건수가 95건(0.2%)이었다.

총 접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6,115건(14.3%)이 증가하였지만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2,308

건(-4.7%),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3,482건(-7.5%)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신청자의 속성 (상담·민원)

“상담”과 “민원”을 신청한 사람을 남녀 성비로 분류하면 남성이 21,373명(49.6%), 여성이 21,655명(50.2%),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05명(0.2%)이었다. 그리고 신청자를 “채무자 본인”과 “본인 이외(배우자·친척 등)”으로 분류하자 “채무자 본인”이 34,681명(80.4%), “친척”이 3,822명(8.9%), “배우자”가 2,061명(4.8%), 친구 및 회사 상사 등 “제3자”가 756명(1.8%)으로 나타났다.

2. 상담

1) 접수 건수

“상담”으로 접수된 건수는 42,886건이었으며, 월간 평균 건수는 약 3,573건이었다. 2010년도와 비교해보면 -3,377건(-7.3%)이었다.

2) 상담 내용

상담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금업체에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업체의 연락처” 관련 상담이 11,920건(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확인을 희망하는 “계약 내용”이 7,332건(17.1%), 대출자숙제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인 “대출 자숙 의뢰·철회”가 4,668건(10.9%), 채무국 및 지자체 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등록업체 확인”이 3,438건(8.0%), 대출 받을 곳을 소개

해 달라는 상담 및 문의인 “대출 관련” 이 3,174건(7.4%), 다중채무 등으로 상환에 지장을 겪고 있어 상담을 신청한 “상환 곤란” 이 1,724건(4.0%), 과불금⁹⁾ 관련 상담인 “과불금” 이 1,638건(3.8%)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 추이〉

(단위: 건)

상담내용	2010 년도	2011년도												연도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구성비	전년 대비 증감율
업체연락처	8,899	1,027	916	956	964	1,007	925	1,020	1,062	832	923	1,114	1,174	11,920	27.8%	33.9%
계약내용	4,873	397	482	527	549	631	613	659	634	624	661	740	815	7,332	17.1%	50.5%
대출자속 의뢰·철회	5,030	348	385	423	412	414	407	400	337	289	376	447	430	4,668	10.9%	-7.2%
등록업체 확인	4,569	308	319	389	307	326	348	260	239	189	260	252	241	3,438	8.0%	-24.8%
대출관련	5,380	256	324	280	225	305	312	251	233	161	236	264	327	3,174	7.4%	-41.0%
상환곤란	3,008	225	191	163	159	135	141	135	122	100	105	122	126	1,724	4.0%	-42.7%
과불금	3,428	195	194	221	115	140	113	142	109	87	118	102	102	1,638	3.8%	-52.2%
신용정보	2,039	168	151	135	95	139	110	88	95	66	76	122	108	1,353	3.2%	-33.6%
불법사금융 · 위법업자 피해 없음	1,340	124	121	105	109	119	105	95	78	83	82	74	88	1,183	2.8%	-11.7%
신분증 등의 분실	1,061	78	84	72	57	78	67	57	61	64	66	59	71	814	1.9%	-23.3%
불법사금융 · 위법업자 피해 있음	852	77	69	95	76	83	61	60	48	47	50	66	58	790	1.8%	-7.3%
상환의무	753	53	61	50	43	47	51	52	56	40	47	55	48	603	1.4%	-19.9%
금리·계산 방법	473	33	38	28	20	27	33	29	18	13	13	25	18	295	0.7%	-37.6%
장부 공개	226	20	24	20	6	13	18	16	7	12	3	14	8	161	0.4%	-28.8%
자기파산· 조정·민사 회생절차	156	2	11	9	2	14	9	4	5	1	7	4	3	71	0.2%	-54.5%
DM	80	5	9	4	9	5	5	7	7	4	0	1	6	62	0.1%	-22.5%
보증인 관계	70	3	5	5	11	1	4	7	6	6	4	3	5	60	0.1%	-14.3%
수수료	39	2	2	4	3	7	7	2	3	4	1	3	5	43	0.1%	10.3%
기타	3,987	195	216	346	314	300	277	312	339	274	273	380	331	3,557	8.3%	-10.8%
계	46,263	3,516	3,602	3,832	3,476	3,791	3,606	3,596	3,459	2,896	3,301	3,847	3,964	42,886	100.0%	-7.3%

9) 대금업체가 대출을 실시할 때 이자제한법상의 금리(15~20%)가 아닌 출자법 상의 금리(29.2%)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시해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금업체가 이자제한법상의 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를 과불금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어졌다.

〈참고 1〉 동일본 대지진 관련 상담 내용

2011년도에 전화로 상담을 받은 건수는 183건이었다. 월별 추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담자를 거주지별로 분류한 결과 미야기현이 75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후쿠시마현이 55건(30.1%), 이와테현 및 이바라키현이 각각 19건(10.4%)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2011년 3월 1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접수를 받은 상담 82건을 합산할 경우 2012년 3월말 기준 누계 대응 건수는 265건이었다.

〈동일본대지진 관련 상담내용별 추이〉

(단위: 건)

분류	연도	2010 년도	2011년도												연도 계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지불곤란		45	58	19	10	11	3	6	3	4	3	4	3	1	25	170
대출희망		9	9	5	6	2	1	1	1	0	0	1	0	0	26	35
지불절차 곤란		26	5	0	0	0	0	0	0	0	0	0	0	0	5	31
기타		2	3	7	8	2	1	1	1	0	0	1	3	0	27	29
합계		82	75	31	24	15	5	8	5	4	3	6	6	1	183	265

* 2010년도와 2011년도의 합계

〈참고 2〉 과불금 관련 상담 건수 추이

과불금 관련 상담·문의 건수는 1,638건이었으며, 2010년도와 비교하면 -1,790건(-52.2%)이었다. 이 중 주식회사 다케후지 관련 상담·문의는 267건이었으며, 2010년도와 비교하면 -745건(-73.6%)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3) 대응 결과

상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처를 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대응은 “협회 지도에 따른 처리·시정·조언 등”으로 총 29,532건(68.9%)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 제공”이 7,060건(16.5%), “타 기관에 소개”가 6,153건(14.3%)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 소개”에서 소개한 상담 기관으로는 개인신용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 “신용정보 기관”이 2,224건(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등록업체의 감독기관으로 안내한 “도도부현”이 1,024건(16.6%), 법적 분쟁 해결 종합 안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테라스¹⁰⁾”가 632건(10.3%), 채무 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호사회·사법서사회”가 507건(8.2%), 불법사금융 등에 관한 상담 창구인 “경찰”이 478건(7.8%) 등으로 나타났다.

4) 경제적 자립 지원 (카운슬링)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에서는 다중채무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계 개선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쇼핑중독이나 도박중독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상담자에게 심리 카운슬링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신규 상담자 116명(채무자 본인 43명, 배우자·친척 73명)을 대상으로 530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했는데 협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화로 상담(이하 “면담 등”이라 한다)을 받았다. 또한 2010년도 이전부터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담 예정자 84명 가운데 2011년도의 경우에는 63명(채무자 본인 23명, 배우자·친척 40명)을 대상으로 419회에 걸쳐 면담 등을 실시하여 신규 상담자와 계속 상담자를 합산한 2011년도 면담 등의 총 합계는 179명(채무자 본인 66명, 배우자·친척 113명), 949회였다.

그리고 949회 중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횟수가 186회(19.6%), 전화 상담이 763회(80.4%)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의 합계는 914시간, 1회 평균 면담 등 시간은 약 58분이었다.

〈상담자 수와 면담 횟수〉

항목		채무자 본인	본인 이외 (배우자·친척)	합계
신규 상담자	상담자 수	43명	73명	116명
	면담 횟수	189회	341회	530회
계속 상담자	상담자 수	23명	40명	63명
	면담 횟수	160회	259회	419회
합계	상담자 수	66명	113명	179명
	면담 횟수	349회	600회	949회

10) 2006년 4월 종합법률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약칭으로 사법제도를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 체제〉

- 모든 상담은 무료
 - 전화 또는 협회를 직접 방문한 자에게 카운슬링 실시(방문 상담은 본부만 가능)
 - 전화 카운슬링의 경우 상담자의 전화요금 부담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대응
 - 상담자가 중증 의존증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을 안내
 - 첫 회 상담시간은 90분, 두 번째부터는 60분을 설정
 - 인정 심리사와 산업 카운슬러 등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카운슬러와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 7명이 전임 카운슬러로서 대응하고 있다.
- ※ 2012년 3월 현재

3. 민원

1) 접수 건수

민원 처리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이 247건이었으며 월간 평균 건수는 약 21건이었다. 그리고 2010년도(352건)와 비교하면 -105건(-29.8%)으로 2009년도(785건)부터 큰 폭으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247건 중 전화로 신청한 건수는 186건(75.3%), 이어서 문서로 신청한 건수는 14건(5.7%),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나 지부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건수는 7건(2.8%), 기타가 40건(16.2%)이었는데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창구나 일본크레딧 카운슬링 협회 등으로부터 대응을 요청한 건수이다. 그리고 등록관청별로 살펴보면 재무국 등록업체가 169건, 도도부현 등록업체가 78건이었다.

2) 민원 내용

민원 내용별로는 “장부 공개”가 54건(21.9%), “계약 내용”이 53건(21.5%), “추심행위”가 46건(18.6%), “사무 처리”가 30건(12.1%), “과불금”과 “개인정보”가 각각 19건(7.7%)이었다. “기타” 5건은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의 응대에 납득이 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다.

〈민원 내용별 추이〉

(단위: 건)

상담내용	2010 년도	2011년도												연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구성비	전년 대비 증감율
장부 공개	85	10	3	7	12	7	4	0	2	1	2	5	1	54	21.9%	-36.5%
계약내용	59	7	5	7	4	7	5	3	3	5	3	2	2	53	21.5%	-10.2%
추심행위	77	5	5	4	1	3	4	5	4	2	4	9	0	46	18.6%	-40.3%
사무처리	20	4	2	4	2	1	2	3	5	4	2	0	1	30	12.1%	50.0%
개인정보	28	2	2	2	3	0	4	1	1	1	0	2	1	19	7.7%	-32.1%
과불금	21	5	0	1	0	0	1	4	3	2	1	1	1	19	7.7%	-9.5%
대출관련	32	0	0	0	0	4	3	1	0	0	0	1	1	10	4.0%	-68.8%
광고·권유 (사칭이외)	2	0	0	1	1	0	2	1	0	1	0	0	0	6	2.4%	200.0%
과잉대부	0	0	1	1	0	0	0	0	0	2	0	0	0	4	1.6%	-
연금담보	1	0	0	0	0	1	0	0	0	0	0	0	0	1	0.4%	0.0%
보증계약	8	0	0	0	0	0	0	0	0	0	0	0	0	0	-	-
금리	4	0	0	0	0	0	0	0	0	0	0	0	0	0	-	-
행정당국 사칭·등록 업체사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기타	15	1	0	0	0	1	0	1	1	1	0	0	0	5	2.0%	-66.7%
합계	352	34	18	27	23	24	25	19	19	19	12	20	7	247	100.0%	-29.8%

3) 처리 결과

협회에 접수된 민원 247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대응을 한 결과 “협회의 처리·시정·조언 등”이 228건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으며, “중단”이 7건, “분쟁접수과에 이행”이 3건, “타 기관에 소개”가 2건, “취하”가 1건, “기타”가 2건(연락이 안 되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회답한 건과 결과 연락 중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건)이었다.

그리고 2012년 3월말 기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은 4건이었다.

4. 분쟁

1) 업무처리 기본 계약의 체결 현황

당 협회는 2010년 9월 15일, 금융청장관으로부터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같은 해 10월 1일에 분쟁해결업무를 시작하여 1년 반이 경과했다. 2012년 2월말 현재 금융청 공표 기준 대금업체의 업무처리 기본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사가 1,427개사, 비회원사가 942개사로 총 2,369개사가 체결을 체결한 상태로 전체 등록대금업체인 2,371개사의 계약율이 99.9%이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금업체의 경우 폐업 예정이다.

2) 분쟁해결 절차 수리 현황

2011년도의 분쟁 사안의 수리 건수(신규 수리건수)는 7건이었으며, 2010년도 하반기(2010년 10월 1일~2011년 3월 31일)의 분쟁 사안 미해결 건수 2건을 더하면 이번 연도 계속 사안은 총 9건이다. 신규 수리건수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계약 내용”이 3건, “대출 관계”와 “과불금”, “장부 공개”, “기타(변제 조건)”이 각각 1건이었다. 신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7건 중 4건이 민원 접수에서 이관된 건이었다.

3) 분쟁해결 절차 대응 현황

계속 사안 9건 가운데 2011년도의 6건이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다. 종료된 사유로는 “화해 성립”이 2건, “취하”가 2건, “기타”가 2건(판결 확정·상대방 대금업체의 폐업)이었다.

〈사례 1〉

유형	손해배상청구	수리일	2011년 4월
신청인	자금수요자	종료일	2011년 9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2회
분쟁의 개요	신청인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지정하는 건축업자와 자사 빌딩의 건축 청부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이를 보증하는 것과 상기 계약의 상대방이 건축 대금 상당액의 대출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약속한다는 내용을 신청인과 상대방, 건축업자 이렇게 3자간 합의했다. 또한 신청인은 상기 부동산에 상대방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상기 계		

	약의 상대방은 건축대금 상당액을 대출해주지 않고 상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자사 빌딩의 청부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상대방은 대위변제 후 상기 합의한 바에 따라 자사 빌딩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신청인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사 빌딩의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당사자간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없었다.
분쟁해결 현황	【취하】 상대방을 원고,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자사 빌딩의 소유권 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본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점이 판명되자 분쟁해결위원은 청문 기일에 쌍방으로부터 재판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재판 절차 중 화해를 시도했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분쟁해결절차를 밟더라도 화해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신청인은 취하했다.

〈사례 2〉

유형	과불금 반환 청구	수리일	2011년 10월
신청인	자금수요자	종료일	2012년 3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4회
분쟁의 개요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재계산한 후 과다지불한 이자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했지만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당사간의 해결이 곤란해졌다.		
분쟁해결 현황	【화해성립】 분쟁해결위원이 과불금 반환금액에 대해 화해안을 제시했고 쌍방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례 3〉

유형	장부 공개	수리일	2011년 11월
신청인	자금수요자	종료일	2012년 2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3회
분쟁의 개요	신청인은 상대방이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회원번호가 다른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어 왔고 이를 카드의 갱신이라고 생각한 신청인은 예전 카드를 폐기한 후, 새로운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상대방이 발송한 거래 내역에 기억에 없는 거래가 있어 이를 새로운 카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직원이 신청인 명의로 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부정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정한 거래를 제외한 정확한 내용의 장부를 공개할 것과 기억에 없는 거래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신청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당사자 간의 해결을 도모할 수 없었다.
분쟁해결 현황	【취하】 당사자 간에 사실 관계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며, 신청인이 분쟁해결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여 분쟁해결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힘들어졌다. 결국 신청인이 본건을 취하했다.

5. 대출자숙

각 도도부현 지부를 창구로 직접 협회를 방문하여 “등록”, “철회”, “정정” 접수를 받고 있는데 2011년도에 접수를 받은 건수는 “등록” 이 1,350건, “철회” 가 604건, “정정” 이 5건으로 총 1,959건을 접수 받았다. 2010년도와 비교하면 -138건(-6.6%)이었다.

6.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현황

2011년도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총 1,97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인 42,886건의 4.6%를 차지했다. 이 중 “보증금을 가로채갔다”, “마음대로 입금시킨 후 협박성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와 같이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담인 “불법사금융·위법업자 피해 있음” 이 790건(40.0%)이었으며,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 와 같이 실제로 피해를 입기 전 단계의 상담인 “불법사금융·위법업자 피해 없음” 이 1,183건(60.0%)이었다. 후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바로 전에 회피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대비 -30.9%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219건(-10.0%)이었다.

상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이스피싱구제법에 따라 인출된 예금 계좌의 거래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으며, 채무의 근본 원인을 청취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처 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입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금융청과 재무국, 경찰당국에 제공하여 피해 확대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Ⅴ 감사의 실시

1. 업무 개요

당 협회의 감사는 대금업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자금수요자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사의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 업무규정, 기타 규칙의 준수 현황 및 회원사의 영업 및 재산 상태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정관에 따라 현장 감사 및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감사 (협회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협회 설립 당시인 2007년도(2007년 12월~2008년 3월)에 실시된 감사는 회원사의 법령 및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규칙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점을 토대로 이러한 법령 등의 준수 체제 및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했다.

2008년도에는 회원사의 법령·그 밖의 각종 규칙의 준수 체제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운용 현황, 과잉 대부, 추심행위 등에 관한 사내규칙의 정비·운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컴플라이언스 의식 향상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서류 감사와 함께 협회 감사원이 회원사의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2009년도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회원사의 법령·각종 규칙의 준수 상황과 내부 관리 체제의 운용 현황을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과잉 대부, 추심행위, 거래 내역의 공개 등 사내 규칙에 따른 업무 운영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중점 사항으로 하여 효율적인 감사의 실현을 도모했다.

또한 대금업법 3조 시행에 따른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2010년도에는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에 따라 대금업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운용 현황, 완전 시행에 대응한 사내규칙과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운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등의 준수를 한층 더 철저히 요구했다.

이상과 같이 협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컴플라이언스의 철저,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를 요구해 온 결과 서류감사에서는 대체적으로 합격 레벨이라고 인정되는 A, B평가를 받은 비율이 2007년도의 첫 회 감사에서는 전체의 13%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2011년도에는 92%를 차지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일반 현장감사의 경우에도 법령 위반 등을 시작으로 하는 지적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등 회원사의 법령 등 준수 체제와 내부 관리 체제는 급속히 정비·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실시될 감사의 경우 상기 현황을 토대로 서류 감사에서 C평가 이하를 받은 회원사에 대한 대응과 함께 그 밖의 회원사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관리 체제를 한층 더 내실화하기 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태 파악과 지적을 중시했던 감사에서 개선과 지도에 중점을 둔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3. 2011년도 감사

1) 현장감사

(1) 현장감사의 개요

2011년도에는 개정 대금업법 완전 시행에 따라 필요한 각종 체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해 법령·자율규제 기본규칙 등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했으며, 회원사 자체적으로 업무 운영에 관한 자기 개선 노력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이를 보완하고 감사 결과 및 감사원의 지도가 회원사의 내부 관리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사를 시의 적절하게 실시했다.

(2) 감사의 중점 사항

- 내부 관리 체제의 운용 현황
- 총량규제에 대응한 사내 규칙 등의 정비 및 운용 현황
- 추심행위에 관한 사내 규칙 등의 정비 및 운용 현황
- 외부 위탁에 관한 사내 규칙 등의 정비 및 운용 현황
- 민원 및 분쟁 등의 대응에 관한 사내규칙 등의 정비 및 운용 현황
- 완전 시행 후의 회원사의 경영 실태 및 경영자의 의견 등의 정보 수집

(3) 감사 대상처의 선정

현장감사의 대상 후보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선정(동일본대지진으로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현은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 대상 대금업체와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를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업체 구분에
서 선정
- 대출 잔액 200억엔 미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선정
- 서류 감사의 평가가 낮은 회원사, 민원 상담을 받은 회원사, 법령 등 위반과 관련된
신고를 제출한 회원사 등에서 선정

(4) 현장감사의 실시 현황

현장감사는 회원사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감사를 받는 회원사 수는 증가하는 추
세이다.

현장감사 건수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50개사 정도였지만 2011년도에는 75개사로
증가시켰다.

이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서류 감사에서 2년 연속 C평가 이하를 받은 회원사가
상당수 존재하여 이러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감사 등을 통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체제면에서도 협회가 발족되고 3년이 경과하여 감사 수법이 확립
되었고 감사능력이 향상되는 등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현장감사에서는 협회 감사에서 개선 보고를 요구한 회원사에 대한 follow-up감
사 등을 특별감사를 통해 점검했고 2011년도에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는 follow-up감사와 기
동적 감사를 합하여 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 실시 현황〉

(단위: 회원)

감사의 종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일반감사	29	56	52	75
특별감사	3	8	9	9
특별감사 중 follow-up감사	-	8	7	7
특별감사 중 기동적 감사	3	-	2	2
합계	32	64	61	84

(5) 감사 결과의 개요

① 감사 결과의 추이

일반감사의 지적 사항 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연도의 지적총건수를 현장 감사를 실시한 회원 수로 나눈 1회원사당 지적 건수를 비교하면 2008년도에는 6.3건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0.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현장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던 회원사의 비율은 2008년도에는 0%에서 2011년도에는 약 83%로 증가하는 등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이 향상되었고, 서류 감사의 계속 실시 등으로 회원사의 내부 관리 체제 및 법령 등 준수 체제의 정비가 개선되고 있어 감사에 따른 실효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정된다.

<감사 결과의 추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일반감사 실시 회원사 수 (A)	29	56	52	75
지적사항의 총 건수 (B)	183	171	72	30
1개 회원 당 지적건수 (B/A)	6.3	3.1	1.4	0.4
지적을 안 당한 회원 수 (C)	0	5	26	62
지적을 안 당한 회원의 비율 (C/A)	0%	8.9%	50.0%	82.7%

② 지적 건수

2011년도에 현장 감사(일반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수는 30건으로 2010년도의 72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적건수〉

(단위: 건)

지적항목		2011년도			2010년도		
		지적건수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지적건수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일반감사	대금업법	27	13	14	55	28	27
	자율규제 관련	3	1	2	13	10	3
	기타 법령	0	0	0	4	3	1
일반감사 합계		30	14	16	72	41	31
특별감사	대금업법	18	13	5	16	7	9
	자율규제 관련	8	6	2	4	2	2
	기타 법령	1	1	0	2	0	2
특별감사 합계		27	20	7	22	9	13
총계		57	34	23	94	50	44

(주1) “법령 등 위반 우려”란 “법령 등 위반”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지만 법령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항이나 기재 항목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양식이 미비한 점 등 중대한 사항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 경미한 미비 사항을 말한다.

(주2) 기타법령이란 대금업법과 자율규제기본규칙 이외의 법률로 대금업 업무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등이 있다.

또한 모든 지적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법령 등 위반사항을 지적한 회원사의 경우에는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종료 후에 폐업한 회원은 제외)

③ 지적사항의 내용

2011년도에 지적한 총 57건의 지적 사항의 내용은 서면 교부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지적사항의 내용〉

법령 등		지적 사항	2011년도		2010년도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우려
대금업법	대금6조	등록거부요건에 해당 (순자산액 부족)			1	
	대금8조	변경신고서 미제출	1			1
	대금12조의3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미설치	1			
	대금12조의2의2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미공표				1
	대금12조의4	종업원명부 구비 불충분	1			
	대금12조의6	금지행위 (거래약정서에 허위사항 기재)			1	
	대금12조의8	이자제한법 규정 금액 초과 이자 계약 체결, 수령	1			
	대금13조	상환능력 조사 미실시	2		2	
	대금13조의2	과잉대부 등의 금지	2		2	
	대금13조의3	기준액 초과 한도계약 관련 조사 불충분	1	1		
	대금13조의4	기준액 초과 한도계약 관련 필요한 조치 미실시	1			
	대금15조	대부조건의 광고 기재 미비			2	
	대금16조	광고 문구 표현이 부적절				1
	대금16조의2	계약체결 전 서면의 미교부, 기재 미비	7	4	12	2
	대금17조	계약체결 시 교부서면 미비	2	12	5	19
	대금18조	영수증 양식 미비, 기재 누락	3		3	
	대금19조	장부의 기재 불충분	1	2	5	11
	대금21조	최고장 기재 미비	1			
	대금22조	채권증서의 반환 누락			1	
	대금23조	표식의 미게시, 게시가 부적절	1			
	대금41조의35	개인신용정보의 미제공	1		1	
	시행12조	대부조건의 광고 기재 미비				1
대금업법 계			26	19	35	36
자율규제기본규칙	정관12조	“검사착수신고서” 및 “검사종료신고서” 미제출	1		4	
	정관14조	감사 기피	1			
	자율11조	사내체제의 미정비	3	2	3	1
	자율19조	민원 기록 미비			2	
	자율22조	대출의사의 확인 부족, 기재 미비	1	1	1	3
	자율32조	상환능력 확인 미실시			1	
	자율58조	홈페이지의 명시사항이 부적절		1		
	자율66조	대부계약 관련 권유의 승낙 기록 누락			1	
	정관규칙5조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 미제출	1			
	사내세칙5조	외부위탁에 관한 사내체제정비 불충분				1
자율규제기본규칙 계			7	4	12	5
기타법령	개인18조	개인정보 취득 시 이용목적 통지 누락			1	
	범수4조	본인확인 미실시			1	
	범수6조	본인확인 기록 누락	1			3
	금상29조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데 미등록			1	
기타법령 계			1	0	3	3
총계			34	23	50	44

(주) 대금 : 대금업법 시행 : 대금업법 시행규칙
정관 :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자율 :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정관 규칙 :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시행에 관한 규칙
사내세척 : 업무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사내규칙책정 시의 세척
개인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범수 :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금상 : 금융상품거래법

④ 참고 (현장감사의 일수·규모·업태 등의 내역)

〈감사일수별 회원사 수〉

감사일수	일반감사		특별감사	
	2011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
1일간	0개 회원	0개 회원	1개 회원	0개 회원
2일간	1개 회원	2개 회원	0개 회원	1개 회원
3일간	13개 회원	3개 회원	3개 회원	0개 회원
4일간	59개 회원	47개 회원	4개 회원	8개 회원
5일간	2개 회원	0개 회원	0개 회원	0개 회원
17일간	0개 회원	0개 회원	1개 회원	0개 회원
합계	75개 회원	52개 회원	9개 회원	9개 회원

〈자본금별 회원사 수〉

자본금	일반감사		특별감사	
	2011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
1억엔이상	6개 회원	7개 회원	0개 회원	0개 회원
5천만엔이상~1억엔미만	22개 회원	20개 회원	1개 회원	2개 회원
2천만엔이상~5천만엔미만	23개 회원	8개 회원	3개 회원	2개 회원
2천만엔 미만	17개 회원	9개 회원	3개 회원	3개 회원
개인사업자	7개 회원	8개 회원	2개 회원	2개 회원
합계	75개 회원	52개 회원	9개 회원	9개 회원

〈대출 잔액별 회원사 수〉

대출 잔액	일반감사		특별감사	
	2011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
50억엔이상	5개 회원	3개 회원	0개 회원	0개 회원
10억엔이상~50억엔미만	20개 회원	12개 회원	3개 회원	0개 회원
1억엔이상~10억엔미만	33개 회원	25개 회원	2개 회원	6개 회원
5천만엔이상~1억엔미만	12개 회원	10개 회원	3개 회원	1개 회원
5천만엔미만	5개 회원	2개 회원	1개 회원	2개 회원
합계	75개 회원	52개 회원	9개 회원	9개 회원

〈업태구분별 회원사 수〉

자본금	2011년도		2010년도	
	실시회원사 수	등록회원사 수	실시회원사 수	등록회원사 수
1:소비자대상무담보대금업자	34개 회원	634개 회원	24개 회원	925개 회원
2:소비자대상유담보대금업자	5개 회원	139개 회원	4개 회원	180개 회원
3:소비자대상주택담보대금업자	1개 회원	30개 회원	1개 회원	38개 회원
4:사업자대상대금업자	18개 회원	374개 회원	11개 회원	464개 회원
5:어음할인업자	2개 회원	66개 회원	4개 회원	74개 회원
6:신용카드회사	7개 회원	157개 회원	1개 회원	166개 회원
7:신용판매회사	2개 회원	46개 회원	1개 회원	50개 회원
8:유통·제조업체 계열회사	2개 회원	25개 회원	3개 회원	29개 회원
9:건설·부동산업자	2개 회원	39개 회원	2개 회원	53개 회원
10:전당포	0개 회원	3개 회원	0개 회원	4개 회원
11:리스회사	2개 회원	39개 회원	1개 회원	41개 회원
12:일수대금업자	0개 회원	8개 회원	0개 회원	57개 회원
합계	75개 회원	1,560개 회원	52개 회원	2,081개 회원

〈대금업무 종사자수별 회원사 수〉

대금업무 종사자 수	2011년도		2010년도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
1인	5개 회원	3개 회원	5개 회원	1개 회원
2인~3인	26개 회원	2개 회원	15개 회원	5개 회원
4인~5인	19개 회원	2개 회원	12개 회원	3개 회원
6인~9인	6개 회원	2개 회원	11개 회원	0개 회원
10인~19인	3개 회원	0개 회원	1개 회원	0개 회원
20인 이상	16개 회원	0개 회원	8개 회원	0개 회원
합계	75개 회원	9개 회원	52개 회원	9개 회원

2) 서류감사

(1) 서류감사의 개요

① 목적

2011년도의 서류감사는 “현장 감사와 서류 감사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감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감사 결과가 회원사의 내부 관리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라는 감사 방침에 의거하여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령 등의 준수 체제 및 내부 관리 체제의 실시 현황에 대해 감사했다.

② 실시 개요

2011년도 서류감사는 2011년 12월말 기준 1,45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령 등의 준수 체제와 내부 관리 체제의 실시 현황에 대해 서류감사보고서에 회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서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우편 이외에 메일 첨부 방식으로 “서류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감사 항목은 대금업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부터 과불금 지급까지 20개 항목 총 72개 설문으로 제출된 서류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원이 각 설문을 점검하고 실시 현황을 확인했다.

평가방법은 전 설문 수에 대한 “실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설문 수”의 비율(실시율)에 따라 A~E까지 5단계로 평가했다.

〈평가방법〉

평가	실시현황	실시율
A	모두 실시하고 있다	100%
B	거의 실시하고 있다	90%~100% 미만
C	실시가 불충분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90% 미만
D	실시가 불충분한 사항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50%~70% 미만
E	실시가 불충분하며,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 미만

(2) 감사의 실시 현황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류 감사에 대한 회원사의 협력 정도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며, 서류감사 미제출 회원사 수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는 150개사(미제출 비율 4.3%)였는데 2011년도에는 1개 회원사(미제출 비율 0.1%)로 회원사의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01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메일 첨부 방식으로 제출한 회원사는 268개 회원사로 전체 제출수의 19.4%였다.

〈보고서 제출 현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고서 제출 회원사 수	3,299	2,638	2,005	1,515	1,378
(구성비)	95.7%	95.8%	98.2%	99.7%	99.9%
보고서 미제출 회원사 수	150	117	37	5	1
(구성비)	4.3%	4.2%	1.8%	0.3%	0.1%
합계	3,449	2,755	2,042	1,520	1,3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1년도 서류감사 대상 1,454개 회원사 중 75개 회원사는 감사 도중 폐업 등으로 탈퇴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1,379개 회원사였다.

(3) 감사 결과의 개요

① 감사 결과 (평가)의 추이

서류감사 결과를 평가 현황별로 살펴보면 거의 합격 레벨이라고 인정되는 A와 B평가를 받은 비율이 2007년에는 13%였는데 2011년도에는 92%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C와 D, E평가를 받은 비율은 2007년도에는 83%였는데 2011년도에는 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향후 이 8%의 회원사에 대한 개선 지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감사결과 추이〉

평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회원사 수	구성비 (%)	회원사 수	구성비 (%)	회원사 수	구성비 (%)	회원사 수	구성비 (%)	회원사 수	구성비 (%)
A	430	13	341	13	483	24	395	26	672	49
B			1,143	43	1,018	51	831	55	590	43
C	1,071	32	768	29	362	18	197	13	91	6
D	1,682	51	357	14	114	6	78	5	25	2
E			29	1	28	1	14	1	0	0
평가 대상외	116	4	-	-	-	-	-	-	-	-
합계	3,299	100	2,638	100	2,005	100	1,515	100	1,378	100

② 실시율 (설문 수 대비 “실시를 확인할 수 있던 설문 수”의 비율)

● 평균 실시율

전체 설문에 대한 평균 실시율은 2011년도에는 96.8%로 2010년도 보다 3.3% 개선되었다.

〈평균 실시율〉

	2011년도 (2012년 4월 25일 현재)	2010년도
설문 수	72문항	75문항
평균 실시율	96.8%	93.5%

● 설문별 실시율

2011년도의 설문별 실시율은 ①번 “경영관리 등”에서 ⑱번 “과불금 지불”까지 전체 항목에 걸쳐 2010년도 보다 개선되었다.

이번에 실시율이 낮은 ⑤번 “본인 확인”과 ⑧번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⑨번 “금지 행위”는 업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다.

〈설문별 실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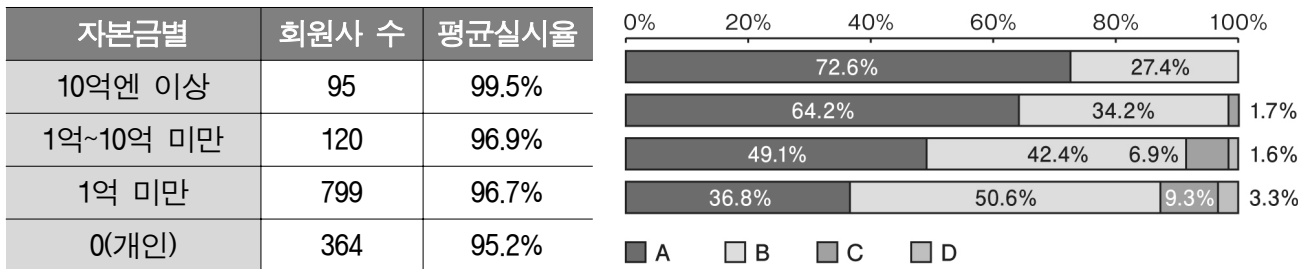
항목	설문	실시율	항목	설문	실시율	항목	설문	실시율
①경영관리 등	3	97.1%	⑦민원 등 대응	3	95.8%	⑬서면교부	7	97.9%
②법령 등 준수	10	98.7%	⑧대금업 주임자	1	92.8%	⑭추심행위	3	97.2%
②-(2)반사회적	2	95.4%	⑨금지행위	1	93.1%	⑮내역 공개	3	94.2%
③개인정보	5	98.0%	⑨-(2)이자보증	2	96.1%	⑯채권양도 등	3	98.6%
④외부 위탁	3	99.1%	⑩계약의 설명	4	96.3%	⑰영업점 등록	2	93.5%
⑤본인확인	2	91.8%	⑪과잉대부	11	97.7%	⑱과불금 지불	1	95.3%
⑥상담조언	3	95.8%	⑫광고 취급	3	97.4%	전체	72	96.8%

③ 평가구성

● 자본금별 평가구성

A평가의 구성비는 규모가 큰 회원사일수록 높았고 개인사업자(자본금 0)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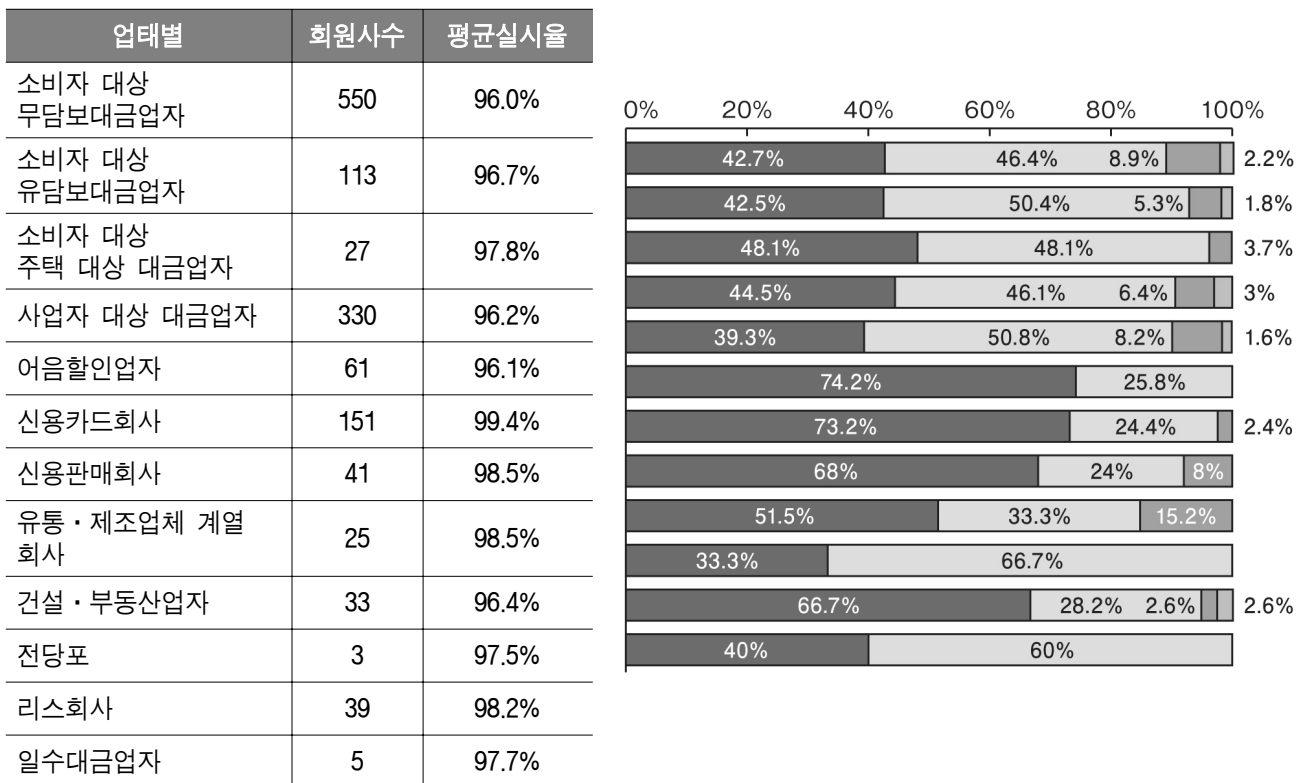
〈자본금별 평가구성〉



● 업태 구분별 평가 구성

A평가를 받은 구성비는 규모가 큰 법인(크레디트·신용판매회사 등)의 경우 70%를 넘었지만 회원사 수가 많은 소비자 대상 무담보·유담보 대금업체는 40% 전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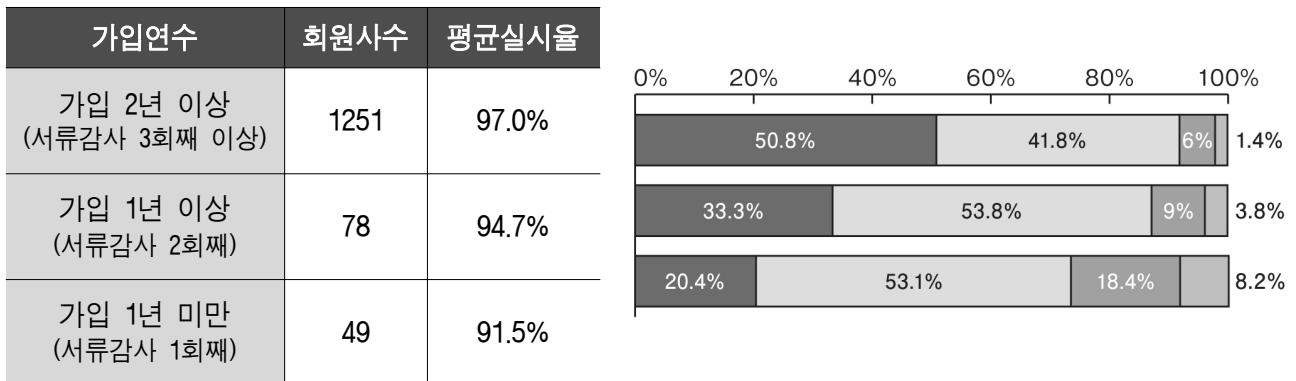
〈업태구분별 평가구성〉



● 협회 가입 연수별 평가 구성

협회 가입 연수가 오래될수록(서류감사를 받은 횟수가 많은) A평가가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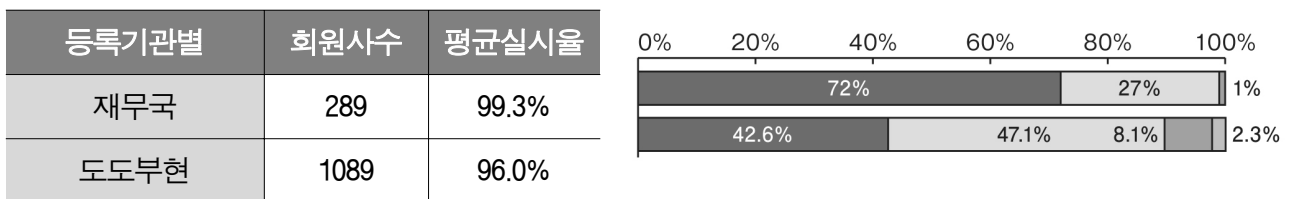
<협회 가입연수별 평가구성>



● 등록기관별 평가 구성

재무국 등록 회원사는 거의 대부분이 실시가 양호하다고 생각되는 A 또는 B평가였다. (99.0%)

<등록기관별 평가구성>



④ 2010년도 서류감사 결과와의 관계

2년 연속 A 또는 B평가를 받은 회원사 수는 1,042개 회원사(75.6%)였다. (2010년도에 2년 연속 A 또는 B평가를 받은 회원사 수는 1,000개 회원사, 66.6%)

2년 연속 C평가 이하를 받은 회원사 수는 56개 회원사(4.1%)였다. (2010년도에 2년 연속 C평가 이하를 받은 회원사 수는 122개 회원사, 8.1%)

〈2010년도 서류감사결과와의 관계〉

(단위: 회원사)

		2010년도 서류감사 평가					2011년도 첫회 (신규가입)	합계
		A	B	C	D	E		
2011 년도 서류 감사 평가	A	2년 연속 A 또는 B 1,042개 회원사 (75.6%)		(2011년도에 A 또는 B를 받은 회원사) 184개 회원사			10	672
	B						26	590
	C	(2010년도 A·B부터 2011년도 C·D·E까지 받은 회원사) 47개 회원사		2년 연속 C·D 또는 E를 받은 회원사 56개 회원사 (4.1%)			9	91
	D						4	25
	E						0	0
소계		1,089		240			49	1,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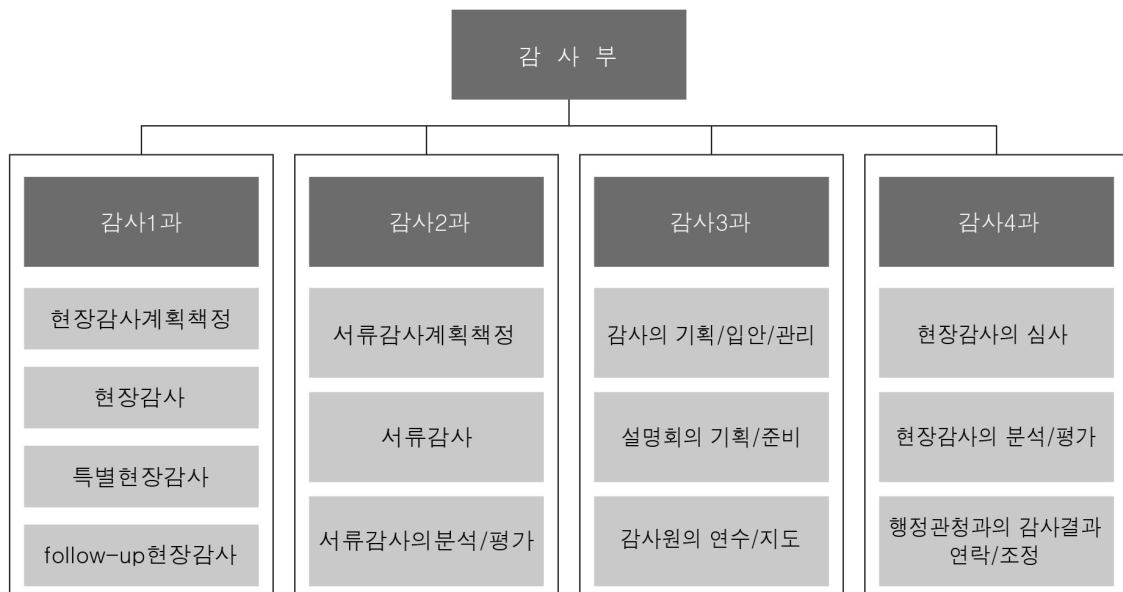
(3) 행정기관 등과의 제휴

감사를 통해서 행정 당국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과 감사 결과 및 그 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의견·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한층 더 강력한 제휴를 도모했다.

더불어 행정기관과의 제휴의 일환으로 금융청의 “2011년도 검사 기본방침”과 관련하여 협회 주최 하에 2011년 10월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금융청 담당관을 강사로 하여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4. 감사체제 등

〈감사부의 운영체제 (2011년도)〉



6홍보 · 계몽활동

1. 업무 개요

대금업계 전체의 사회적 평가와 신뢰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금융 지식의 보급 및 계몽 활동을 실시했다.

1) 홍보 활동

매월 발행하는 “JFSA NEWS”와 연 2회 발행하는 “특집 JFSA”, 협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협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 계몽 활동

다중채무자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소비자와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같은 교육 현장과 소비생활센터 등의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금전 및 이자, 대금업, 금융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의 보급과 계몽 활동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서 불법사금융으로 대표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의 환기와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상담창구의 인지도 향상에도 힘썼다.

2. 활동 실적

〈활동 개요〉

	활동명칭	실시시기	개요
홍보활동	홍보지를 이용한 활동	매월 및 반기별	월간지 “JFSA news” 와 기관지 “특집 JFSA” 를 발행하여 회원사의 업무 적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업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수시	협회 홈페이지 내에 일반인 대상 콘텐츠와 “악질업자 검색” 과 “대금업법에 대해” 등과 같은 콘텐츠를 게재했다.
	섭외활동을 통한 활동	수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행정기관이나 각 관계단체 및 매스컴 등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계몽활동	소비자 계몽용 책자 배포	2012년 1월~3월	대출이나 현금서비스에 관한 기초지식을 정리한 가이드북(※론·캐싱 Q&A BOOK)을 제작·배포(성인식용 142,028부, 소비생활센터 외 66,669부) ※(공익재단법인)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최의 교재표창에서 “소비자교육교재자료표창(제8회) 우수상” 을 수상
	금전교육교재의 작성	2011년 4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립 가능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금융 지식을 학교 등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전교육교재(※프레젠테이션교재 “생활과 론, 크레디트”)를 제작 ※(공익재단법인)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최의 교재표창에서 “소비자교육교재자료표창(제8회) 우수상” 을 수상
	출장강좌 등을 통한 활동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수시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 소비생활센터 등 각종 단체 주최의 세미나 등에 당 협회 담당자가 실제로 방문하여 금융 관련 기초지식·트러블·다단계와 같은 악질 상행위를 테마로 한 강연 실시

〈출장강좌 등의 실시 현황〉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계
횟수			12회	44회	54회	60회	170회
참가인수			567명	1,212명	2,395명	2,198명	6,372명
내역	상담원 대상	횟수	1회	14회	25회	35회	75회
		참가인수	30명	284명	522명	1,339명	2,175명
	소비자 대상 등	횟수	11회	30회	29회	25회	95회
		참가인수	537명	928명	1,873명	859명	4,197명

7 조사연구활동

1. 업무 개요

대금업계가 국민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입장에서 대금업계의 현황과 동향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2. 활동 실적

1) 조사 연구 활동

〈조사 연구 활동의 개요〉

실시항목	공표일 및 제출일	개요
월차실태조사	2008년 7월 1일~ (이후 매월 공표)	대금업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사 각 사의 협력 하에 잔액 규모의 동향 등을 월 단위로 조사, 결과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 ※ 본 백서 제3편 제2장 참조
자금수요자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앙케트 조사	2011년 4월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의 영향 및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조사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JFSA 백서 (2010년도판) 발행	2011년 6월	대금업계의 동향 및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발행, 당 협회의 자율규제활동에 관한 통계수치와 각종 앙케트 조사결과, 금융청 통계자료와 같은 공지 정보 등을 기재
대금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공급기능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2012년 2월	대금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공급기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 (“대금업자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 조사 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 ※ 본 백서 제1편 부록 참조
기타 조사	-	기타 협회 운영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조사를 실시

2) 세제 개정 요청

대금업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다음 내용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조사 연구 활동의 개요〉

제출일	제출기관	내용
2011년 7월	금융청	1. 대금업계의 적절한 자금공급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1) 과불이자반환과 관련한 법인세의 환급 (2) 파산채권의 취급 관련 재검토 (3) 일정 기간 거래 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과 관련한 대금업체의 개인대상 대출에 대한 적용 (4) 결손금의 이월기간 및 환급기간의 연장
2011년 9월	민주당	2. 경제 활성화와 과세의 적정화를 위한 활동 (1) 인지세 제도의 재검토에 따른 부담 경감 (2) 외형표준과세제도의 재검토 (3) 대금업자의 리폼론 ¹¹⁾ 에 대한 세제 조치의 적용 확충 (4) 지방세 납세 등의 사무 간소화
2011년 11월	자유민주당	

Ⅷ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 등록 · 강습

1. 업무 개요

당 협회는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정시험기관으로 2009년 6월 18일에 내각총리대신의 지정을 받아 2011년도에 6회째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금융청장관으로부터 주임자 등록 사무를 위임 받아 주임자의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30일에 금융청장관으로부터 등록 강습 기관으로 등록을 받아 2010년도부터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의 실시

2011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은 2011년 11월 20일(일)에 전국 17개 지역(삿포로, 센다이, 지바, 도쿄, 사이타마, 요코하마, 다카사키, 나고야, 가나자와, 오사카, 교토, 고베,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 26개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

11) Reform loan, 주택 개조를 위한 대출을 말한다.

1) 2011년도 시험의 시험 과목 및 출제 범위

출제범위로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 법령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출제와 관련된 법령 등은 2011년 4월 1일 기준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으로 했다.

<법 및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분야·내용
① 대금업법 ② 동 시행령 ③ 동 시행규칙	전반적인 내용
④ 출자법	
⑤ 이자제한법	
⑥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지침	
⑦ 사무가이드라인(제3편:금융회사관계 13 지정신용정보기관 관계)(금융청)	
⑧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⑨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 ⑩ 동 세칙	
⑪ 대출자숙 대응에 관한 규칙(일본대금업협회)	

(주) 대금업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이자제한법,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지침(금융청) 등 상기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채권관리회수업무에 관한 특별조치법”(서비스법)과 “번호사법”,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e-문서법)을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대부 및 대부 관련 거래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관한 사항>

법 분야	관계법령		분야·내용
	중심법령	관련법령	
민사법 (민법·상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관련 법령)	① 민법		제1편 총칙~제3편을 중심으로 제4, 5편도 포함
	②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제1장 총칙
	③ 회사법		조직형태, 대표권, 법인격에 관한 사항
	④ 보험법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⑤ 어음법·수표법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⑥ 전자기록채권법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⑦ 동산 및 채권 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⑧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⑨ 부정경쟁방지법	

법 분야	관계법령		분야·내용
	중심법령	관련법령	
민사절차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민사보전 법을 중심으 로 하는 기 타 관련법 령)	①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민사집행법		
	③ 민사보전법		
		④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⑤ 민사조정법	
도산법(파산 법, 민사회 생법을 중심 으로 하는 기타 관련 법령)	① 파산법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민사회생법		
		③ 회사회생법	
		④ 특정채무 등의 조정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 에 관한 법률	
		⑤ 회사법	
형사법(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 는 기타 관 련 법령	① 폭력단원에 의 한 부당한 행위 방 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폭력적 요구 행위의 규제 등
	② 범죄에 따른 수 익 이전방지에 관 한 법률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형법	제1편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동제 8장 미수죄, 동제11장 공범, 제2편제17장 문서 위조죄, 동제18장 2 지불용 카드 전자적 기록 에 관한 죄, 동제20장 위증죄, 동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동제37장 사기 및 공갈죄, 동제38장 횡령죄

【중심법령과 관련법령의 정의】

“중심법령”이란 대금업과 관련된 법령 중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제 등이 포함된 법령으로 문제 출제 시 중심이 된다. “관계법령”은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중심법령과 관련되어 출제된다.

〈자금수요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법 분야	관계법령	분야·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관련 법령 등)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내용(단,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소비자보호법	① 소비자계약법	
경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관련 법령 등)	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② “소비자신용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운용기준(소비자청)	
대금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	① 대금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대금업자 대상 종합감독지침(금융청) ③ 사무가이드라인(제3편:금융회사 관계 13지정신용정보기관 관계) (금융청) ④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분쟁해결업무에 관한 규칙, 동 세칙, 대출자숙 대응에 관한 규칙(일본대금업협회) 중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에 관한 부분	전반적인 내용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분야·내용	
가계진단	① 가계수지 (수지항목·가처분소득·저축과 부채)
	② 개인의 소득과 관계서류 (신고소득·원천징수표 등 관계서류)
재무회계	③ 기업회계 (기업회계원칙)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현금흐름표·기타)

(주) 가계진단 및 재무회계에는 당 분야와 관련이 있는 법령 등(세법, 연금관계법, 기타)이 포함되어 있지만 출제는 대금업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2) 2011년도 시험과목별 설문형식별 출제 수

〈과목별 출제 수〉

설문형식	법 및 관계법령		대부 실무		자금수요자 보호		재무·회계		전체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계
4지선다형	5	10	8	6	0	2	1	1	14	19	33
개수	4	0	0	0	1	0	0	0	5	0	5
빈칸 채우기	0	0	0	0	0	0	0	0	0	0	0
조합	8	0	1	0	2	0	1	0	12	0	12
전체	17	10	9	6	3	2	2	1	31	19	50

(주) 각 과목 공통으로 “적절”을 선택하는 문제 다음에 “부적절”을 선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시험 문제 및 정답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3) 시험 실시 결과

〈시험실시 결과 (공표일 2012년 1월 12일)〉

시험신청자 수	12,300명
응시자 수	10,966명
응시율	89.2%
합격자 수	2,393명
합격율	21.8%
합격기준점	50문항 중 27문항 정답

〈시험 결과의 추이〉

	제1회 시험	제2회 시험	제3회 시험	제4회 시험	제5회 시험	제6회 시험
시험일	2009.8.30	2009.11.22	2009.12.20	2010.2.28	2010.11.21	2011.11.20
시험신청자수	46,306	17,780	16,254	9,908	13,547	12,300
(신규응시)	46,306	9,924	9,468	5,223	10,638	7,581
(재응시)	-	7,856	6,786	4,685	2,909	4,719
응시자수	44,708	16,597	12,101	8,867	12,081	10,966
응시율	96.6%	93.4%	74.5%	89.5%	89.2%	89.2%
합격자수	31,340	10,818	7,919	5,474	3,979	2,393
합격율	70.1%	65.2%	65.4%	61.7%	32.9%	21.8%
합격기준점	30	30	33	31	30	27

4) 합격자 개요

〈연령별 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구성비	17.7%	33.4%	29.5%	17.7%	1.7%
합격율	17.4%	22.4%	22.7%	25.3%	23.0%

〈성별 구성〉

	남성	여성
구성비	77.3%	22.7%
합격율	24.1%	16.6%

※ 평균연령 39.9세

〈시험지역별 구성〉

구성비	삿포로	센다이	지바	도쿄	사이타마	요코하마	다카사키	나고야	가나자와
	1.5%	3.4%	5.4%	41.0%	6.7%	9.1%	1.2%	5.3%	1.2%

구성비	오사카	교토	고베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
	10.4%	2.1%	2.1%	2.1%	1.5%	4.8%	1.2%	0.8%

(주)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는 사사오입을 한 관계로 구성비 합계가 100.0%가 안 될 수도 있다.

5) 시험 신청자 앙케트에 따른 직종분류별 응시자 수 추이

〈직종 분류별 응시자 수 추이〉

	제1회 시험		제2회 시험		제3회 시험		제4회 시험		제5회 시험		제6회 시험	
직종분류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대금업	26,192	58.6%	9,115	54.9%	4,772	39.4%	3,997	45.1%	4,625	38.3%	4,080	37.2%
금융기관	5,957	13.3%	2,543	15.3%	2,003	16.6%	1,476	16.6%	2,684	22.2%	2,718	24.8%
서비스업	1,122	2.5%	431	2.6%	479	4.0%	441	5.0%	624	5.2%	568	5.2%
기타 직종	7,308	16.3%	2,910	17.5%	3,564	29.5%	2,234	25.2%	2,967	24.6%	2,447	22.3%
학생 및 기타	875	2.0%	385	2.3%	680	5.6%	288	3.2%	390	3.2%	258	2.4%
무응답·모름	3,254	7.3%	1,213	7.3%	603	5.0%	431	4.9%	791	6.5%	895	8.2%
전체	44,708	-	16,597	-	12,101	-	8,867	-	12,081	-	10,966	-

(주) 상기 인수는 시험 신청서 앙케트란의 신청자 자신의 신고를 집계한 것임

6) 도도부현별 합격자수 추이와 등록 주임자 수 (거주지별)

도도부현	제1회 시험	제2회 시험	제3회 시험	제4회 시험	제5회 시험	제6회 시험	합계	3월말 주임자수
홋카이도	994	345	202	164	98	38	1,841	1,284
아오모리현	176	55	34	22	11	9	307	223
이와테현	165	43	27	25	17	9	286	209
아키타현	101	49	16	11	13	7	197	159
아마가타현	120	37	18	13	10	5	203	138
미야기현	479	221	139	106	49	40	1,034	742
후쿠시마현	152	54	53	36	15	14	324	223
니가타현	180	75	63	35	21	20	394	287
도치기현	214	85	50	31	19	12	411	222
군마현	176	69	47	31	12	13	348	240
이바라기현	253	82	89	55	29	19	527	344
지바현	2,622	846	635	430	331	210	5,074	3,344
사이타마현	2,850	926	652	506	389	208	5,531	3,783
도쿄도	6,863	2,245	1,862	1,303	1,102	706	14,081	8,580
가나가와현	3,216	1,063	766	498	496	275	6,314	4,164
나가노현	162	66	48	34	25	23	358	225
아마나시현	72	22	22	14	16	7	153	89
시즈오카현	420	146	84	80	54	37	821	526
도야마현	121	30	22	11	17	16	217	154
이시카와현	121	50	30	29	22	13	265	189
후쿠이현	96	33	27	11	8	1	176	116
기후현	173	62	52	29	31	15	362	258
아이치현	1,472	500	359	251	157	83	2,822	1,830
미에현	224	75	49	35	27	16	426	269
시가현	314	61	52	33	22	13	495	284
교토부	826	227	168	95	60	35	1,411	726
나라현	319	123	92	70	34	17	655	466
와카야마현	93	33	31	18	9	1	185	119
오사카부	2,736	1,062	741	481	324	197	5,541	3,335
효고현	1,256	453	312	216	163	77	2,477	1,553
오카야마현	307	109	81	48	35	18	598	450
돗토리현	81	47	31	6	3	1	169	102
히로시마현	505	178	122	99	64	35	1,003	678
시마네현	64	25	30	7	5	4	135	81
야마구치현	151	47	54	30	17	19	318	220
가가와현	162	55	34	19	12	11	293	191
도쿠시마현	77	30	15	7	9	7	145	86
고치현	105	38	15	12	5	4	179	128
에히메현	217	53	51	13	7	5	346	222
후쿠오카현	1,589	633	435	329	150	75	3,211	2,325
오이타현	128	52	38	13	9	11	251	184
미야자키현	126	37	27	10	13	7	220	159
사가현	87	17	12	22	5	6	149	119
나가사키현	136	46	48	26	13	9	278	207
구마모토현	222	103	57	42	17	14	455	331
가고시마현	161	85	42	44	20	12	364	278
오키나와현	256	125	85	74	14	19	573	377
전국계	31,340	10,818	7,919	5,474	3,979	2,393	61,923	40,219

3. 주임자 등록사무 처리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처리한 주임자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건수는 다음과 같다.

〈주임자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건수〉

신청서 접수 건수	2,082건
등록심사결과 접수건수	2,506건
등록완료통지 발송건수	2,113건
등록의 변경·취소·말소건수	4,509건

2012년 3월 31일 현재 등록 주임자 수 40,219명

4.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 실시

2011년도에 신규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등록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임자 강습을 도쿄와 오사카에서 2회 실시했다.

1)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 실시 현황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 실시 결과〉

강습회장	오사카	도쿄	연도 합계
강습일	2011년 9월 1일(목)	2011년 12월 1일(목)	-
수강신청자수	130명	315명	445명
수강자수	126명	306명	432명
수강율	96.9%	97.1%	97.1%
수료자수	125명	306명	431명

2) 강습과목과 시간표

주임자 강습은 금융청 사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대금업 관련 법령에 관한 과목” 3시간 20분과 “실무 관련 과목” 2시간 40분을 합하여 총 6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3교시와 5교시는 이해도 테스트와 질의응답 시간이며 수료 기준을 채운 수강자에게는 당일 수료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2011년도 주임자 강습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강습과목과 시간표〉

교시	시간	강습과목	주요 내용
	9:00~		접수 개시
【10분】	9:30~9:40		수강 설명
1교시 【70분】	9:40~10:50	대금업 관련 법령에 관한 과목 I	■ 대금업법, 이자제한법 및 출자법에 관한 최근 개정 내용의 해설 ○ 강습교재강의 ○ 사례연구 해설
【10분】	10:50~11:00		휴식
2교시 【50분】	11:00~11:50	대금업 관련 법령에 관한 과목 II	■ 대금업법, 이자제한법 및 출자법에 관한 최근 개정 내용의 해설 ○ 강습교재강의 ○ 사례연구 해설
【60분】	11:50~12:50		점심식사
3교시 【80분】	12:50~14:10	대금업 관련 법령에 관한 과목 III	■ 민법, 상법, 기타 관계 법률로 대부 및 대부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최근 개정 내용의 해설 ■ 자금수요자 등의 보호 관련 해설 ■ 재무 및 회계 관련 해설 ○ 강습교재강의 ○ 사례연구 해설 ○ 이해도 테스트의 실시와 해설 ○ 질의응답
【20분】	14:10~14:30		휴식
4교시 【80분】	14:30~15:50	실무 관련 과목 I	■ 대부에 관한 실무 동향의 해설 ○ 강습교재강의 ○ 사례연구 해설
【20분】	15:50~16:10		휴식
5교시 【80분】	16:10~17:30	실무 관련 과목 II	■ 채권관리에 관한 실무동향 해설 ■ 채권회수에 관한 실무동향 해설 ○ 강습교재강의 ○ 사례연구 해설 ○ 이해도 테스트의 실시와 해설 ○ 질의응답
【20분】	17:30~17:50		수료증명서 교부

3) 2012년도 주임자 강습 준비

2012년도 주임자 강습은 도입된 해인 2009년도(제1회 ~ 제4회)에 실시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주임자 등록을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주임자 등록의 갱신을 맞이하게 되는 해로 많은 수의 수강자(갱신 대상자 수 36,000명)가 예상된다. 그리고 주임자 등록 갱신 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어 대금업 및 등록 갱신 대상자인 본인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철저히 공지하는 등 2012년도에 실시할 주임자 강습을 위한 준비를 했다.

〈강습 준비를 위해 실시한 주요 시책〉

1	단체용 강습 수강 신청 시스템의 개발
2	전국 주요 도시의 강습회장 확보 및 강습 개최 계획의 사전공표
3	강사 선임 및 강습 교재 개정
4	대금업자 및 갱신 대상자 개인에게 등록갱신 사무절차 등의 고지 ① 협회 홍보지, 업계지에 관련 기사 게재 (2011년 11월 ~ 2012년 1월) ② 등록 주임자 수가 많은 대금업자 대상 설명회 (도쿄, 오사카) 개최 (2011년 12월) ③ 설명회 불참업체(2,117개사)에 통지문 발송 (2011년 12월) ④ 등록갱신 대상자 개인에게 안내문 발송 (2012년 1월 ~ 2월)
5	수강 신청 접수 및 추가 개최 공표 ① 강습 개최 시기에 따른 수강 신청의 접수 개시 (2012년 1월 ~ 3월) ② 수강 신청 현황을 감안한 추가 개최 결정 및 공표 (2012년 2월)

9 행정협력사무

대금업 등록 신청·갱신·변경 등의 신청서류 접수 사무를 재무국과 각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행정협력사무별 접수건수〉

대응하고 있는 주요 행정협력사무	접수건수(※)
신규등록신청, 등록 갱신 신청 접수사무	669건
등록변경, 소관변경신고의 접수사무	12건
변경신고의 접수사무	4,312건
폐업 등의 신고 접수사무	158건
대금업 개시 또는 휴업 시 필요한 신고 서류의 신고 접수사무	162건
사업보고서 접수사무	1,908건
업무보고서 접수사무	1,881건
잔존대부채권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 접수사무	170건
채권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사무	507건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등의 신고 접수사무	168건
협회 가입·탈회 신고 접수사무	76건
합계	10,023건

(※) 2011년도(2011년 4월 ~ 2012년 3월) 접수건수

10 동일본대지진 대응

1. 재해를 입은 회원사에 대한 대응

- ① 금융청과 연대하여 회원사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을 파악했다.
- ② 행정협력 사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에 대한 고지 등(제출기간의 연장 등)을 실시했다.
- ③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피해지역 대상 회원사 88개사를 대상으로 위로금을 전달하고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비를 면제했다.

2. 기타 회원사에 대한 대응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채무에 대해 지불 조건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친절하게 대응하도록 2011년 3월 24일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였다.

이재민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채무 지불조건 변경 등을 신청하거나 이재민에 대한 청구 등 추심 업무를 할 경우에는 세밀하면서 친절한 대응을 하도록 2011년 10월 18일에 회원사와 금융 ADR 기본계약을 체결한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동일본대지진”이 자금수요자 등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대금업법 규정의 적용을 재고하도록 요구한 요청서를 2011년 4월 14일에 금융청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공포·시행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과 관련하여 금융청과 제휴하여 회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동 내각부령의 시한 조치의 연장(2012년 3월 31일까지)을 내용으로 한 공지를 회원사와 대금업자에게 하였다.

3. 피해를 입은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응

채무 지불과 관련한 상담 창구 개설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2011년 3월 24일에 협회 홈페이지와 피해지역의 지방 신문 10곳에 게재하여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상담과 민원 창구 개설에 대해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실시했다.

4. 의연금 모집 대응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의연금을 모집했다.

1) 의연금 모집 결과

- ① 협회 임직원 140건 1,368,326엔, 회원사 211건 10,275,318엔
합계 351건 11,643,644엔
- ② 협회 기부 10,000,000엔

2) 의연금의 용도

- ① 재해를 입은 회원사에 위로금 4,400,000엔을 증정
- ②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의연금 17,243,644엔을 기부

Ⅳ 각종 의견 · 요청

1. 세제 개정 요청

금융청이 의견을 모집하자 2011년 7월에 다음 사항을 금융청에 요청했다.

1) 대금업계의 적절한 자금공급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대금업자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빌릴 수 있는 대금업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금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대금업계 고유의 기능인 소액, 무담보, 단기, 긴급자금을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는 세제면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금업계 특유의 과불이자 반환 청구에 대한 세제 조치는 대금업자의 자금공급능력과 과불이자 반환 여력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대손 관련 세제와 회계면에서도 실태를 감안하여 한층 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과불이자반환과 관련한 법인세 환급

대금업자는 1983년 시행된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영업을 해왔다. 이자와 관련하여서도 동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으로 각각 수취한 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각 연도의 결산에 따라 납세를 해왔다. 하지만 2006년 1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 과거에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에 대한 과불이자 반환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과불이자 반환과 관련된 손실분에 대해 민법상의 시효인 10년을 한도로 하여 과세된 과년도의 법인세액 환급을 요청한다.

이유

대금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1983년 시행된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3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를 받아왔는데 2006년 1월에 있었던 이자반환 청구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금리의 이자반환 청구(부당 이득 반환 청구사건)가 증가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리볼빙 방식에 따른 대부의 소멸 시효성립이 거래가 종료하고 나서 10년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10년이 지난 과불이자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반환한 손실분은 과거 각각 수취한 연도에 이익으로 처리하여 납세를 하였다. 따라서 반환에 따른 손실분(※원금손실액을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액에 대해서는 과년도의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환급액 계산 시에는 반환한 손실분에 대해서 반환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지 않고, 민법상의 시효인 10년을 한도로 수취한 과년도의 각 사업연도로 순서대로 되돌려 손금액에 대해 과세한 과년도 법인세액을 환급(결손 환급 제도의 변경)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 시 과불이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각 과불 금액에 대한 연 5%의 민법 704조의 소정의 이자를 교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이자는 반환 연도에 특별손실로 해당 연도에 손실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효과

대금업계는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는 할 수 없는 소액, 무담보, 단기, 긴급자금을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반환한 이자반환금과 원금손실액의 합계액은 1조 1천억엔이었으며, 이에 대해 세율 30%로 계산할 경우 환급액은 약 3,300억엔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0년 3월말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9조엔)의 3.6% 정도에 해당하여 대금업체의 자금 공급능력과 과불이자 반환 여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금손실액”이란 채무자가 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함에 따라 이자제한법상의 금리로 재계산을 하여 반환할 이자를 잔존 원금에 충당한 결과 감소한 원금을 말한다.

② 파산채권 취급 관련 재검토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했을 경우 실제로는 그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상 형식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채권 금액의 50%까지로 되어 있어 조기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곤란한 형편이다. 이러한 회계 실무와 세무 상의 차이를 해소하여 절차의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100%로 상향조정했으면 한다.

이유

대금업체의 개인 대상 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했을 경우, 파산채권이 된 해당 채무자의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상 이른바 형식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채권 금액의 50%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실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무상은 그 채권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상기 형식 기준에 따른 개별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채권 금액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으면 한다.

효과

파산 채권 처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채권 관리의 건전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파산 시의 사무 처리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

③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 관련 대금업체의 개인 대상 대출금에 대한 적용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한해서만 인정되지만 대금업자의 개인 대상 대출에 따른 금전채권은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채권 보전의 취약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형식 기준을 대금업체의 개인 대상 대출에 대해서도 인정했으면 한다.

이유

현재 대손을 세무 상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3종류이지만 이 중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출채권만 인정된다. 이는 외상매출금은 대부금에 비해 채권의 보전성이 취약한 점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대금업체는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소액, 무담보, 단기, 긴급자금을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대출금의 취약성은 외상매출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질병이나 실업 등 뜻하지 않은 사태로 자산 상황, 지불 능력 등이 돌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이 판명될 경우 대금업체는 이 이후의 거래를 정지하여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대금업체가 채무자에게 세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채권 보전의 수단을 취하는 것은 과도한 추심으로 오해 받을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금업체의 개인 대상 대출을 보면 채권 보전의 취약성 면에서 매출채권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대금업체의 개인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거래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의 형식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효과

개인 대상 대출금의 대손 인정을 형식 기준화함으로써 사실상 대손인 채권에 대해서 적절한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지불능력이 악화된 채무자의 채무 면제를 쉽게 할 수 있어 채무자인 소비자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결손금의 이월기간 및 환급기간의 연장

현행 제도의 이월공제기간에 대해서는 7년, 환급기간도 1년으로 단기여서 경영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업 경영의 장기적인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월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으면 한다.

이유

청색신고서¹²⁾를 제출하는 법인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이월 공제제도가 있으며, 이미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 청구 할 수 있는 환급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월공제기간이 7년으로 미국과 유럽 각 국의 실태, 일례를 들면 미국의 20년에 비해 짧고, 환급기간도 1년으로 짧아 경영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무 상의 결손금과 관련한 제도는 기업의 사업연도별로 과세 부담을 평준화하여 안정된 경영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11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따르면 결손금의 이월기간은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공제 한도액은 80%로 감액되었다. 본 요청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감액하지 않으면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효과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면 안정된 자금 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소액, 무담보, 단기, 긴급자금을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일본은 1950년 세제 개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었는데 신고용지가 청색이었던 관계로 청색신고라고 일컬어졌다.

2) 경제 활성화와 과세 적정화를 위한 사항

① 인지세 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부담 경감

인지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거래가 증가하는 등 경제사정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경제제도와 맞지 않은 제도가 되었다. 업계 특유의 사정으로 최근 전자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법령에 의해 문서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는 대금업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하며 과도한 부담감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제도와의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세 부담의 공평성을 기해줬으면 한다.

이유

인지세 제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세율이 높다는 점과 전자거래에 따른 불공평성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대금업계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즉 소비자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대금업계의 업무 관련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계약서의 과세에 대한 사항

일반적으로 소비자금융의 경우 채무자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의 차용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로서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는 서면 작성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대출금 이외의 영수증에 대한 과세

대금업자에게 있어 대출한 원금의 회수는 빼놓을 수 없는 일상적인 업무이지만 원금처럼 대출금 이외의 금전이더라도 그 영수증은 과세대상이 된다. 대출금의 경우 이익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출금 이외의 금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비록 소액이더라도 과도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 법률로 발행이 의무화된 서면에 대한 과세

대금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은행 이체로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변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은행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에 해당하는 예금계좌 이체 명세서(고객용)를 발행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금전 수취가 없더라도 발행한 대금업자에게 인지세 부담이 발생한다.

대금업법에서는 공조공과의 지불에 충당되는 부분은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은행 이체에 따른 입금 시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과세 부담 상당분을 채무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효과

인지세는 현재 20 종류의 문서로 분류되어 각각 과세되고 있어 제도를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계약서의 인지세액을 경감할 수 있고 경제 거래에 따른 사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어 기업 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로 계약서의 인지세액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소비자론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과세액을 협회가 실시하는 월차 통계조사에 의거하여 2010년도의 소비자금융업태의 무담보 대출(주택 관련 대출 제외)의 연간계약 건수로 시산해 보면 연간 2.2억엔 정도가 된다.

그리고 영수증의 인지세액은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태의 대형 회원사 3개사만으로도 2010년 3월기 과세액은 약 16.2억엔으로 나타났다.

② 외형 표준 과세 제도의 재검토

외형표준과세제도의 경우 적자 등이 원인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는 결손 법인도 과세가 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정세 하에서는 이러한 과세가 결손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세제도의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유

2004년 4월부터 도입된 외형표준과세제도는 법인 사업세의 과세표준이 그 연도의 소득에 따라 증감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해당 제도의 경우 적자 등이 원인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근 어려운 경제정세 하에서는 이 과세가 결손 법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대금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자산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래 증자가 필요 없는 법인도 순자산액을 유지하기 위해 증자를 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효과

담세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 가능하면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어 고용이 안정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3월기의 외형표준과세 실적은 대형 회원사 5개사(소비자금융업체 및 신용 판매·크레디트 업체, 이 5개사가 전 회원사의 대출 잔액의 약 1/3을 차지한다)의 합계가 약 15.9억엔으로 나타났다.

③ 대금업체의 리폼론에 대한 세제조치 적용 확충

주택을 리폼할 경우 주택론 감세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대금업체 대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금업체도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이유

현재 이른바 주택론감세제도¹³⁾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의 리폼자금을 차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물론 건설업자나 택지 건물 거래 업자로부터의 차입금도 감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비해 대금업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금업자도 리폼론을 취급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일정한 자금 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금업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효과

리폼론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를 확충함으로써 자금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한 층 더 경감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금업자의 리폼론 이용건수는 6만 2천건 정도이며, 잔액의 경우 약 100억엔에 이른다. (2008년 3월말 실적)

13) 주택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신축, 증·개축)한 경우 연말 대출 잔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④ 지방세 납세 등 사무의 간소화

복수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지방세를 신고·납세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무 부담이 큰 편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따라 신고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사무가 상당히 번잡하여 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이유

복수의 도도부현에 사무소·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지방세를 신고·납세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사무 부담이 된다.

신고서 양식도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업소세의 경우 각 지정도시에 따라 신고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납세도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다양하고, 납부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서는 신고·납세 각 절차를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세무 신고·납세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효과

지방세의 신고·납부를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무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공평·공정성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징수하는 측에서 보더라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회수기구의 경우 이 기구의 운영을 통해 도도부현을 단위로 한 세제 업무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납세자인 기업과 개인, 징수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쌍방에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의 징수능력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법개정 등에 관한 의견

안건 명칭	제출기관
“민법(채권관계) 개정에 관한 중간적인 논점 정리”에 관한 의견 모집 (2011년 6월 1일 ~ 8월 1일)	법무성 민사국 참서관실
“집단적 소비자 피해 회복에 관한 소송제도의 골자”에 관한 의견 모집 (2011년 12월 9일 ~ 12월 28일)	소비자청 소비자제도과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등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안(가칭)” 등에 대한 의견 모집 (2011년 12월 23일 ~ 2012년 1월 27일)	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 범죄수익이전방 지관리관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시안”에 관한 의견 모집 (2011년 12월 14일 ~ 2012년 1월 31일)	법무성 민사국 참서관실

※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대금업계와 자금수요자 현황 (개요)

대금업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공급기능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

일본대금업협회에서는 대금업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 공급 기능 등을 검증하기 위해 “대금업자”와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대금업자의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자금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앙케트 조사와 금융청이 발표한 “대금업 관련 자료집”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개요

■ 대금업자의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

- ① 조사기간 2011년 10월 7일 ~ 11월 11일
- ② 응답자수 대금업체 1,026개사(회원사: 731개사/비회원사: 295개사)
- ③ 조사방법 우편송부 조사 및 전자메일을 이용한 조사

■ 자금 수요자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 ① 조사기간 2011년 11월 18일 ~ 12월 14일
- ② 응답자수 자금수요자 6,552명(개인: 3,618명/전업주부(전업남편): 1,187명/사업자: 1,747명)
 - ※ 소비자금융사와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있는 개인 대출 이용자 3,618명을 추출
 - ※ 소비자금융사와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적이 있으며 파트타임 수입과 같은 수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전업남편) 대출 이용자 1,187명을 추출
 - ※ 대금업자에게 사업성 자금(운용자금·설비자금 등)을 대출 받고 잔액이 남아 있는 개인사업자인 대출 이용자 1,211명과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또는 소속된 회사에 대금업자로부터 사업성 자금을 대출 받은 적이 있는 기업경영자인 대출 이용자 536명을 추출
- ③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법

대금업 시장 현황

대금업자수와 대출 잔액 모두 감소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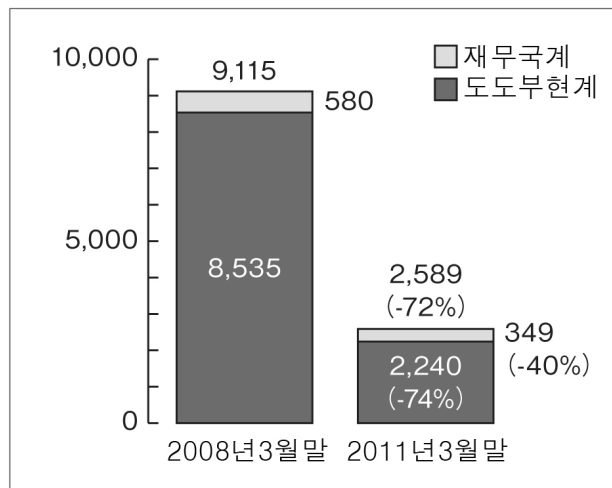
대금업자수 추이와 금융청의 “대금업 관련 자료집” (2011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간 등록 대금업체수는 9,115개사에서 2,589개사로 6,526개사(▲72%)가 감소했다.

지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감소가 심한 지구는 큐슈/오키나와지구와 홋카이도지구이다. 큐슈 재무국과 후쿠오카 재무지국,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으로 이루어진 큐슈/오키나와 지구에서는 2008년 3월의 1,600개사에서 2011년 3월에는 330개사까지(▲79%) 감소했고, 홋카이도 지구에서는 336개사에서 78개사로(▲77%)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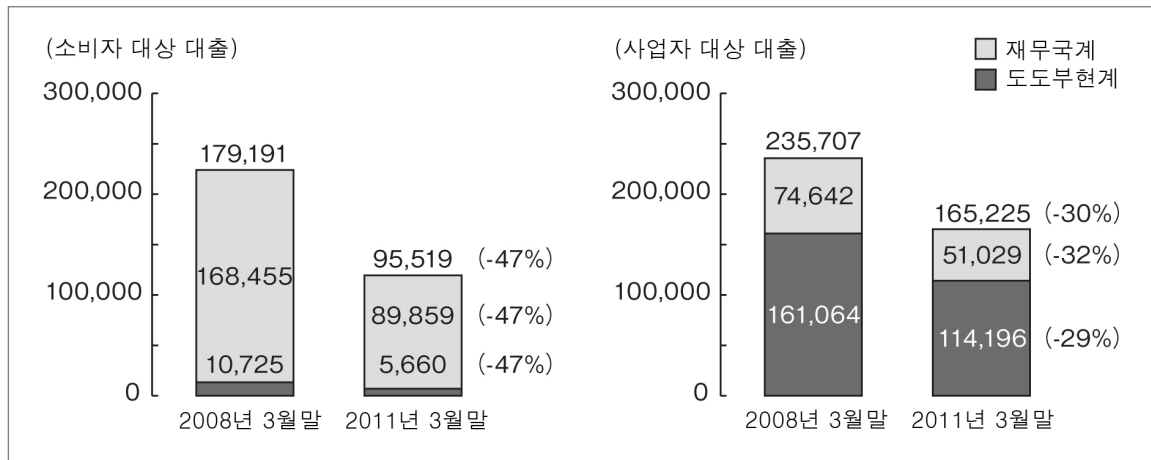
대출 잔액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2008년 3월의 17.9조엔에서 2011년 3월에는 9.6조엔으로 47% 감소했고, 사업자 대상 대출의 잔액은 23.6조엔에서 16.5조엔으로 30% 감소하여 두 부문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의 추이를 지구별로 보면 특히 감소폭이 큰 지구는 도호쿠 지구와 호쿠리쿠 지구, 큐슈/오키나와지구이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에 걸쳐 도호쿠 지구에서는 1,012억엔에서 349억엔으로 감소했고 호쿠리쿠지구에서는 306억엔에서 103억엔으로 감소했으며 큐슈/오키나와 지구에서는 7,554억엔에서 2,568억엔으로 각각 66%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대상 대출의 추이를 지구별로 보면 가장 감소폭이 가장 큰 지구는 시코쿠 지구로 1,411억엔에서 192억엔으로 86% 감소했다.

〈재무국 · 도도부현별 등록대금업체수〉



〈재무국·도도부현별 대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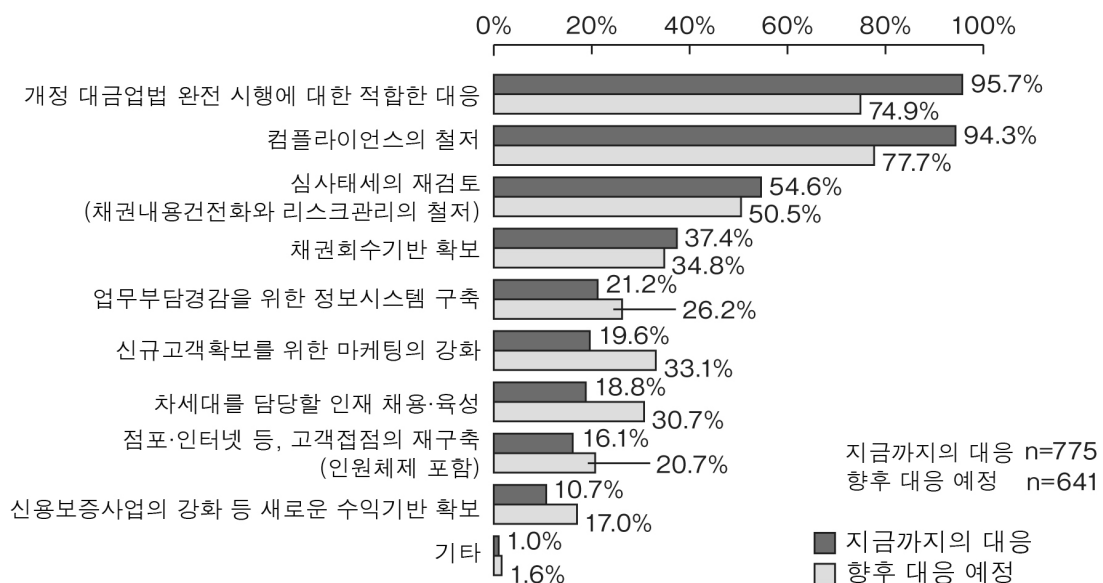


대금업체 현황

대금업체의 수익구조 변화

2010년 6월 완전 시행된 이후 경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현황에 대해 대금업체에게 질의한 결과 현재 96%가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4%가 “컴플라이언스의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78%가 “컴플라이언스의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75%가 “개정 대금업법 완전 시행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도표 1>

〈도표 1〉 대금업체의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현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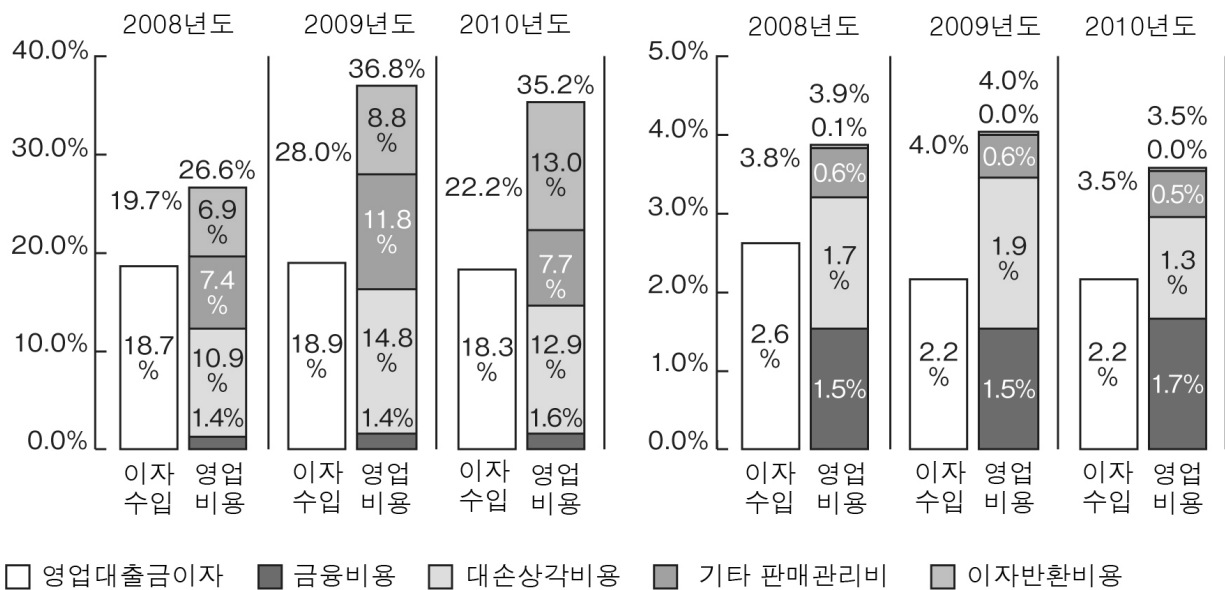


대금업체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기의 영업 대출금 잔액(평균잔액)과 영업 대출금 이자, 대금업체의 영업비용인 금융비용, 대손상각비용, 기타 판매관리비, 이자반환비용(이자반환금)을 조사하여 “영업 대출금 이자의 영업 대출금 잔액에 대한 비율”과 “영업 비용 총액(이자반환비용 포함)의 영업대출금 잔액에 대한 비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도표 2>이다. 소비자금융업체의 “영업대출금 이자의 영업대출금 잔액에 대한 비율”은 2008년도에 19%였는데 비해 2010년도에는 18%로 하락했다. 한편, 영업비용총액(이자반환비용 포함)의 비율은 2008년도에 27%였는데 비해 2010년도에는 35%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대금업체의 수익구조가 계속해서 적자 상태인 점을 알 수 있다.

〈도표 2〉 대금업체의 각 수지항목의 영업 대출 잔액 비율 추이
(소비자금융업체 · 사업자금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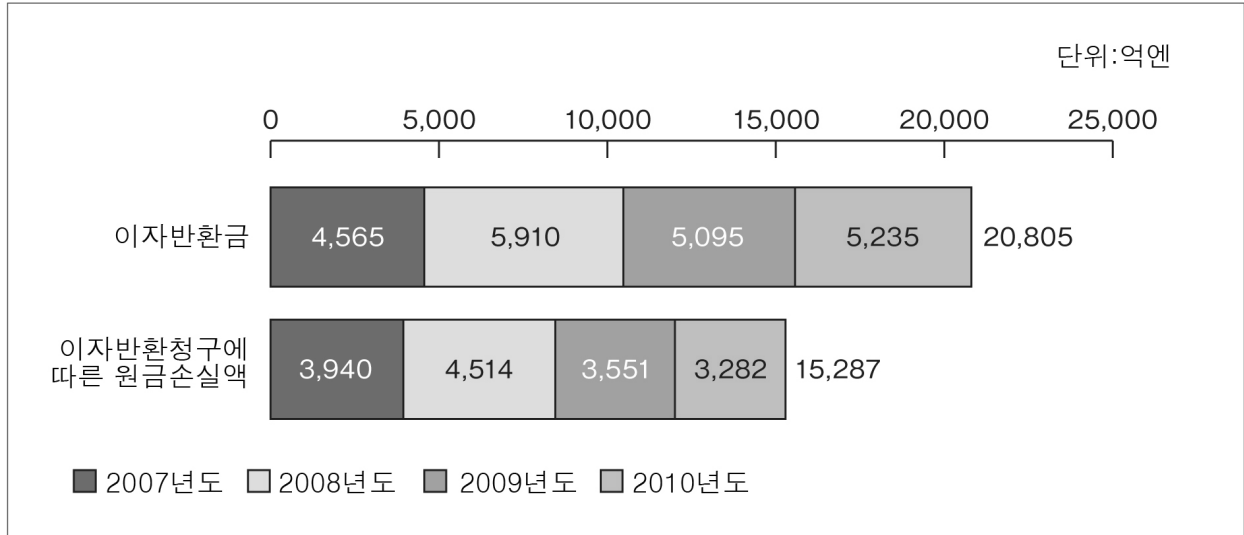
<소비자금융업체 n=76>

<사업자금융업체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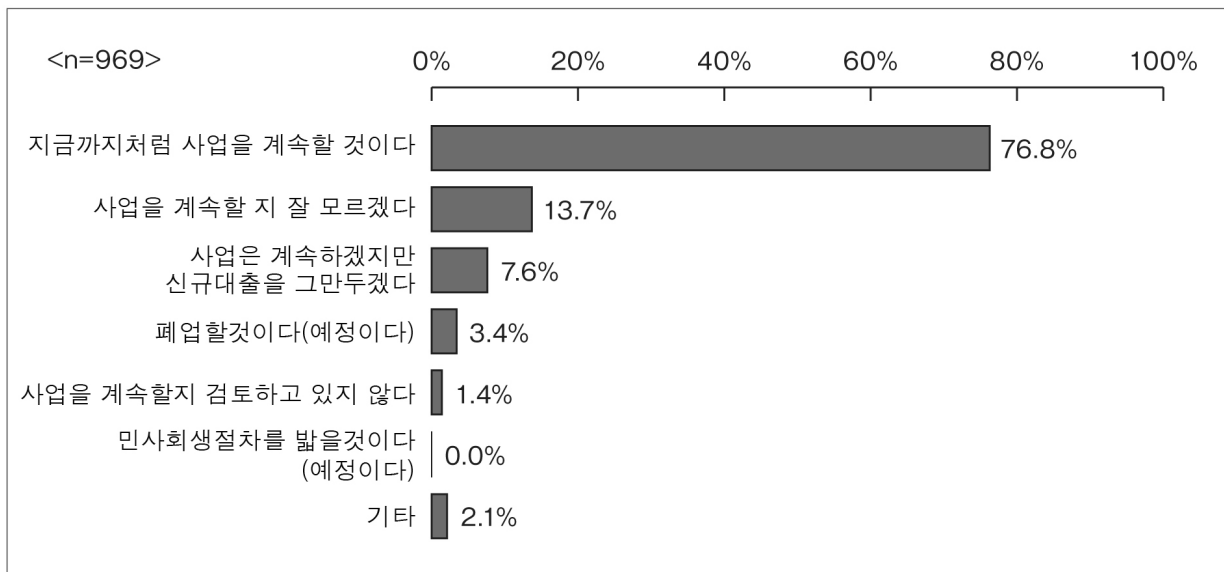
<도표 3>은 대금업체의 이자 반환 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과 이자반환금을 합산하여 2010년도에는 8,517억엔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이후 4기분 합계의 경우 약 3.6조엔에 이르고 있어 이자 반환 청구가 대금업체에게 상당한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 3〉 이자반환금,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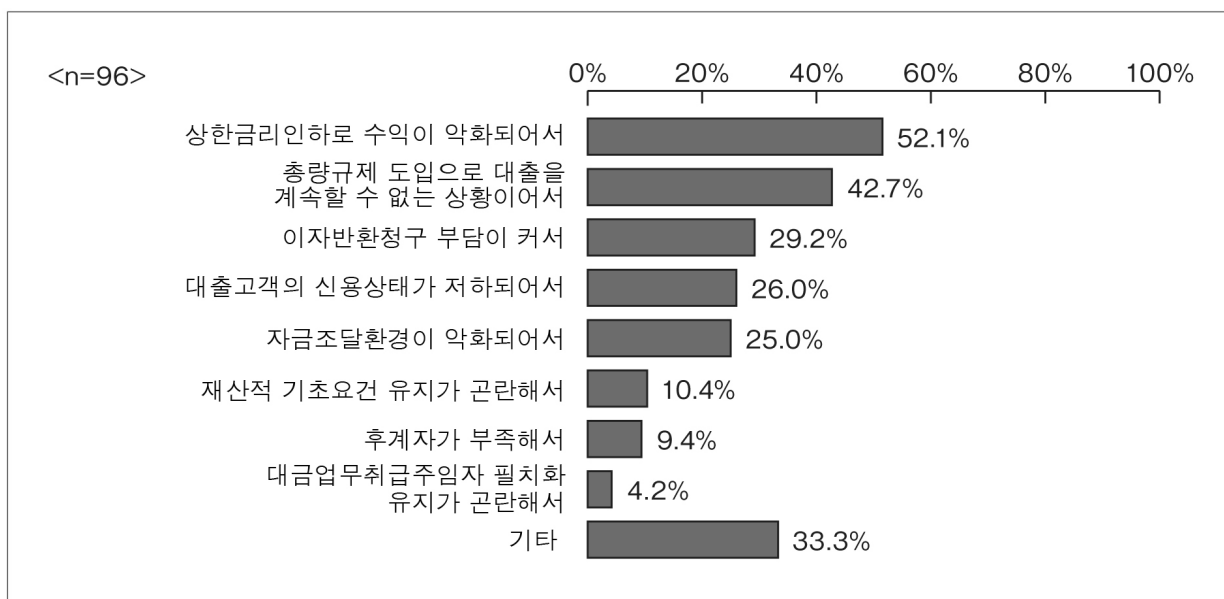
향후 대금업 사업을 계속할 지에 대해서는 대금업체의 77%가 “지금까지처럼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8%는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신규대출을 그만두겠다” 라고 응답했으며, 3%는 “폐업하겠다(예정이다)” 라고 응답했다. <도표 4>

〈도표 4〉 향후 사업 지속 전망 (복수응답)



신규대출을 그만두거나 폐업하겠다고 응답한 대금업체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52%가 “상한금리인하로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라고 응답했으며, 43%가 “총량규제 도입으로 대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9%가 “이자 반환 청구의 부담이 커서” 라고 응답하여<도표 5> 법 개정이나 이자 반환 청구가 대금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 5〉 사업지속이 곤란한 이유와 신규대출 금지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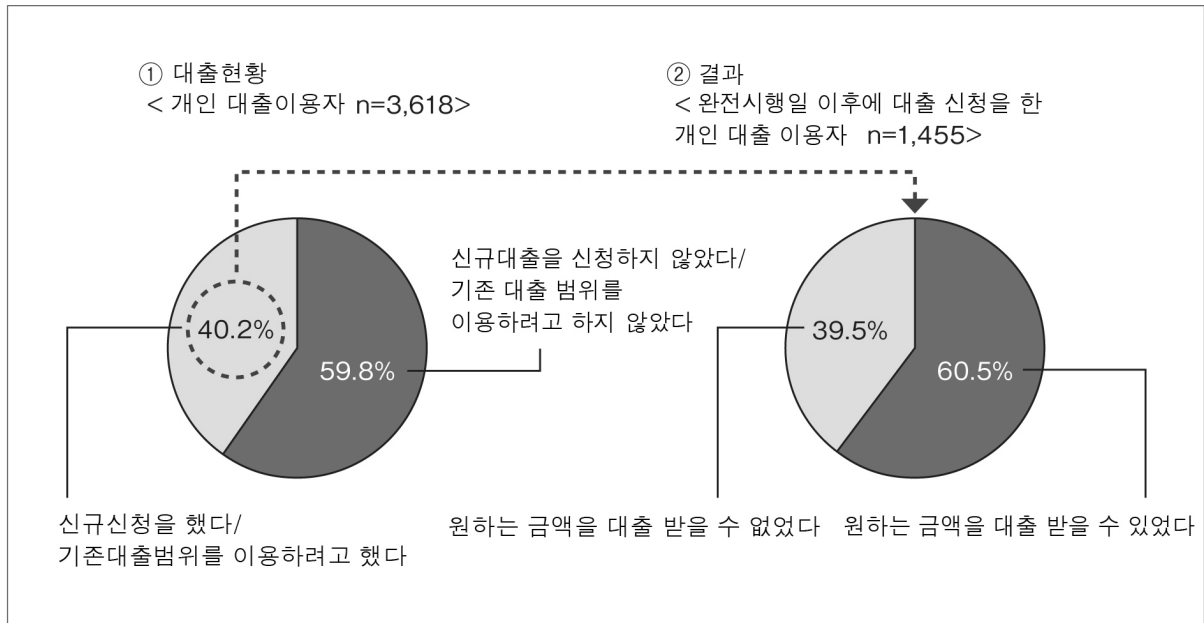


자금수요자 대출 현황

법제도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의견

개정 대금업법 완전 시행일 이후 개인 대출 이용자의 대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도표 6>이며, 개인 대출 이용자의 40%가 대출을 신청했고 이 중 61%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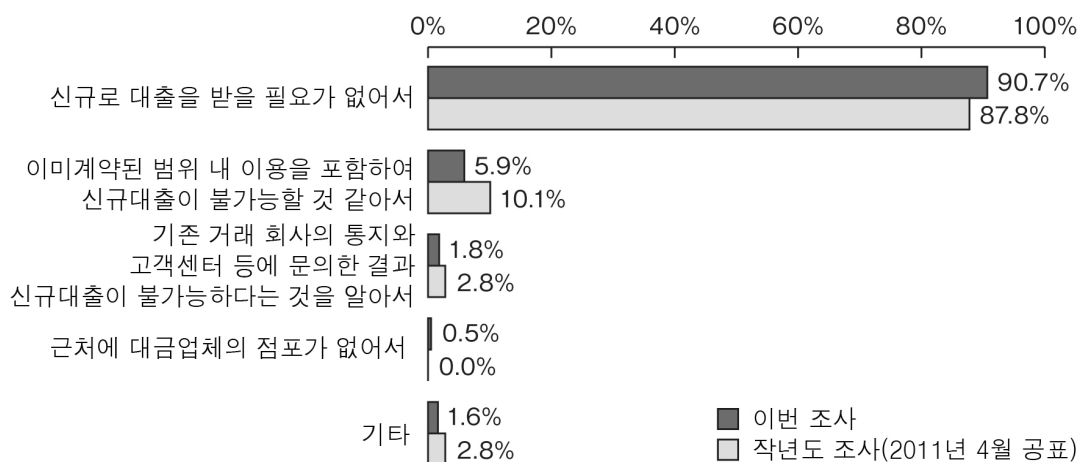
〈도표 6〉 개인 대출 이용자의 완전시행 이후의 신청 현황과 그 결과



한편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개인 대출 이용자(60%) 중 91%는 신규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도표 7〉

〈도표 7〉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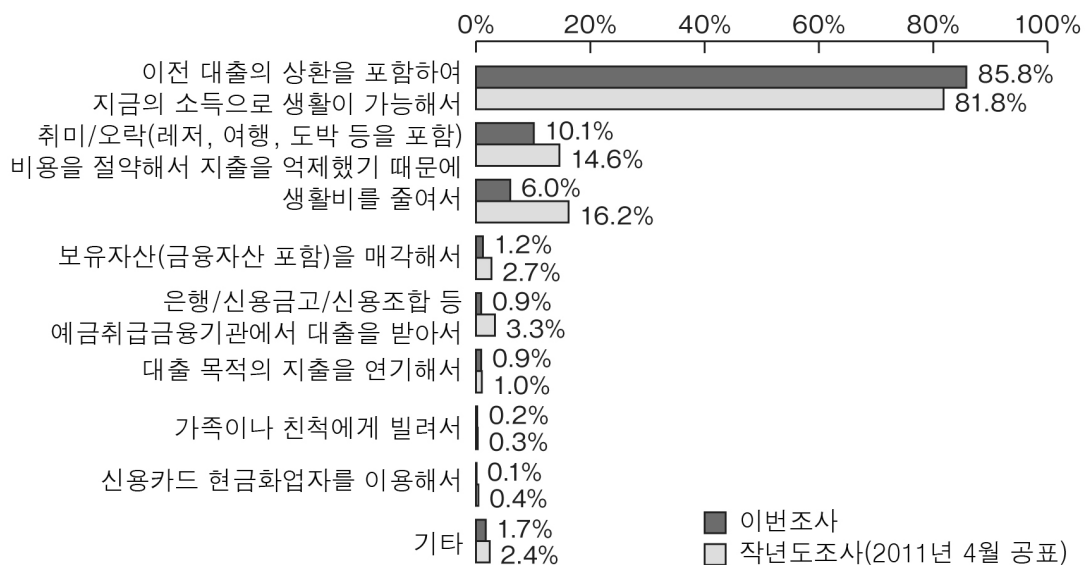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 n=2,163 중에서 응답하지 않은 조사자를 뺀 수치(n=1,532), 작년도 자금수요자 조사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 n=1,416〉



신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86%가 “이전 대출의 상환을 포함하여 지금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서” 라고 응답했다. <도표 8>

<도표 8>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 (복수응답)

<이번 조사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 n=1,389, 작년도 조사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응답한 대출 이용자 n=1,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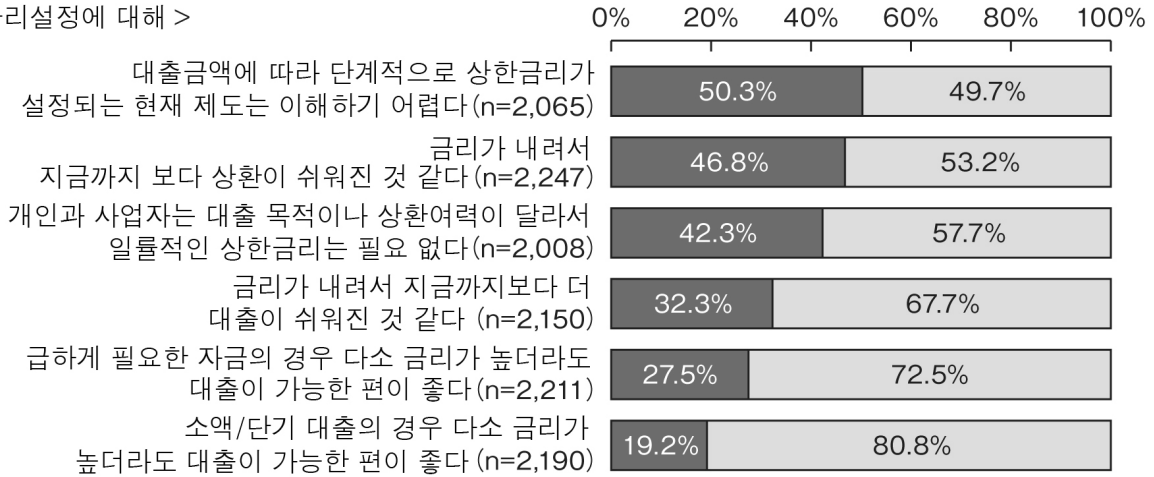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 대출 이용자가 현재의 법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며, 금리 설정에 대해서는 50%가 “대출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한금리가 설정되는 현재의 제도는 수궁하기 어렵다” 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68%가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이 필요할 때도 있다” 라고 응답했으며, 법제도에 대해 유연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도표 9>

〈도표 9〉 대출 시 금리 설정 및 총량규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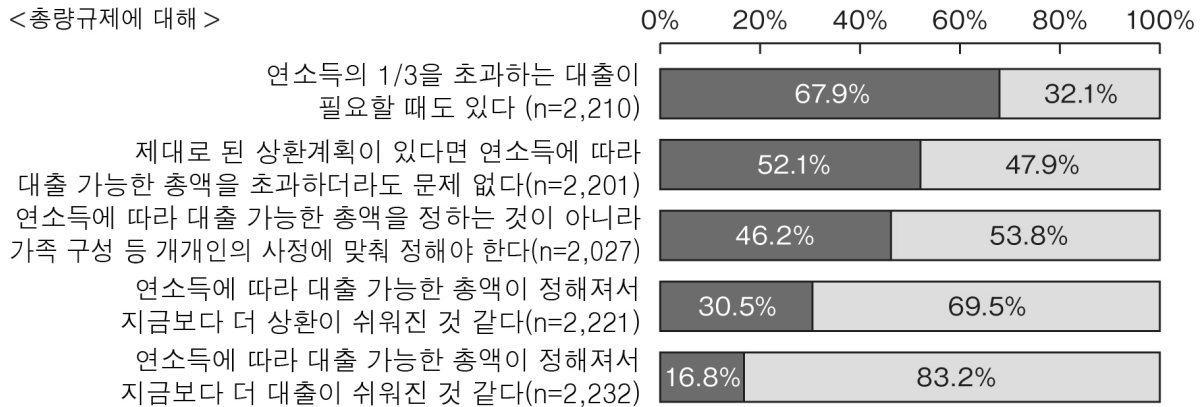
<대출 이용 고객 n=3,618(“모르겠다”를 제외)>

■ 그렇게 생각한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설정에 대해 >



<총량규제에 대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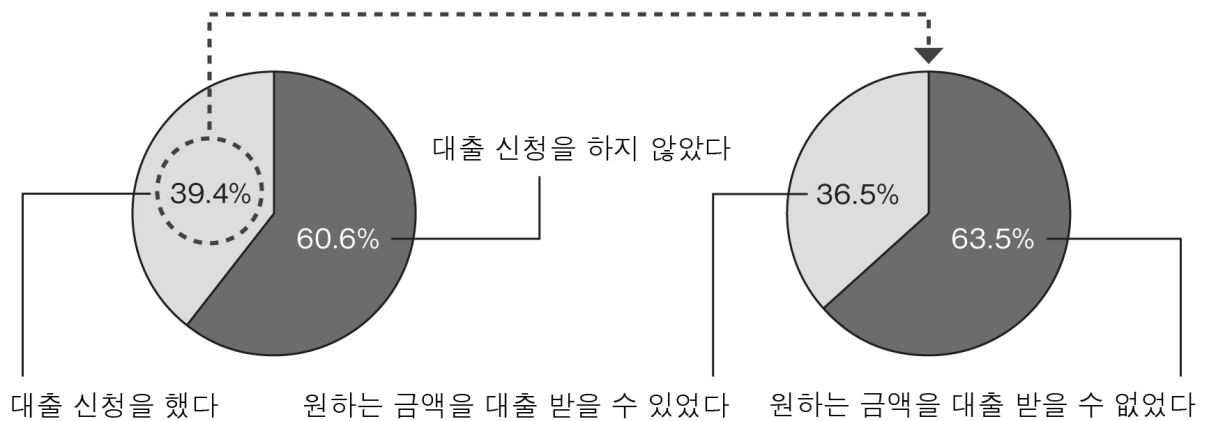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 대출 이용자의 39%가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37%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표 10〉

<도표 10> 사업자 대출 이용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대출 현황과 그 결과

<사업자 대출 이용자 n=1,704 (“모르겠다”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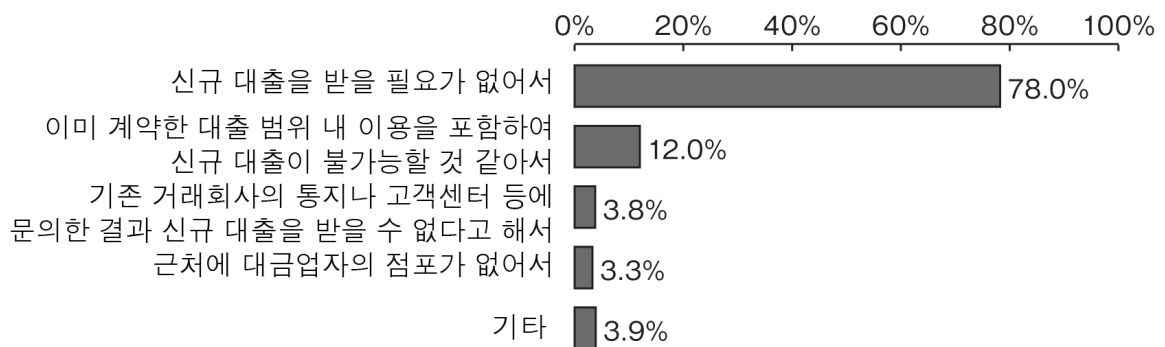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한
사업자 대출 이용 n=671>



한편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대출 이용자(61%) 중 78%는 신규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도표 11>

<도표 11>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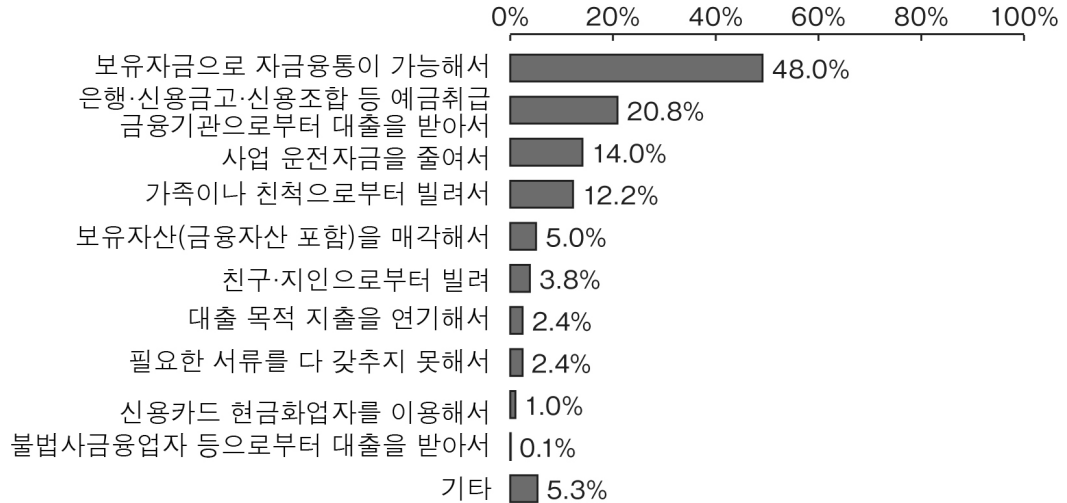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업자 대출 이용자 n=1,033>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48%가 “보유 자금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해서” 라고 응답했으며, 21%가 “은행·신용금고·신용조합 등과 같은 예금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라고 응답했다. <도표 12>

〈도표 12〉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완전시행일 이후에 신규 대출이 필요 없었다고 응답한 사업자 대출 이용자 n=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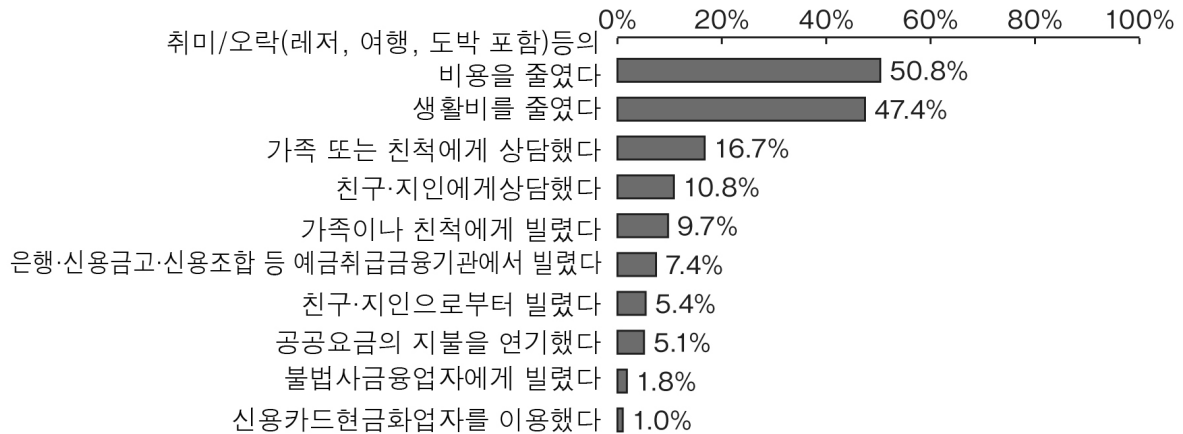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자금수요자 동향

지출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현저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여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후의 행동에 대해 질의한 결과 51%가 “취미/오락(레저, 여행, 도박 포함) 등의 비용을 줄였다” 라고 응답했으며, 48%가 “생활비를 줄였다” 라고 응답하여 〈도표 13〉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표 13〉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을 경우 취한 행동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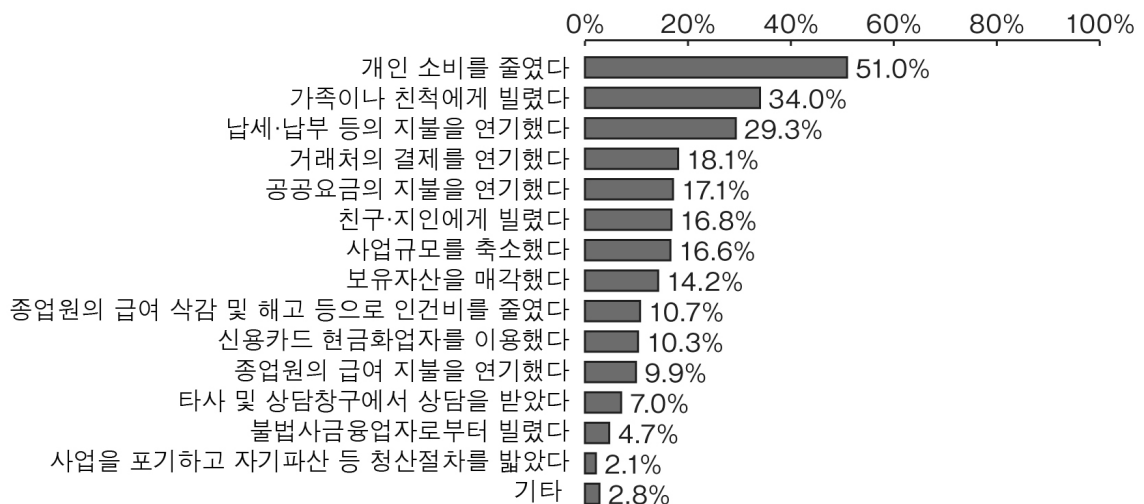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개인 중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란 응답을 제외한
개인 대출 이용자 n=390〉



마찬가지로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고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사업자 대출 이용자의 행동을 확인한 결과 51%가 “개인 소비를 줄였다”라고 응답했으며, 34%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빌렸다”라고 응답했으며, 29%가 “납세·납부 등의 지출을 연기했다”라고 응답하여 개인 대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표 14〉

〈도표 14〉 완전시행일 이후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행동 (복수응답)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사업자 대출 이용자 n=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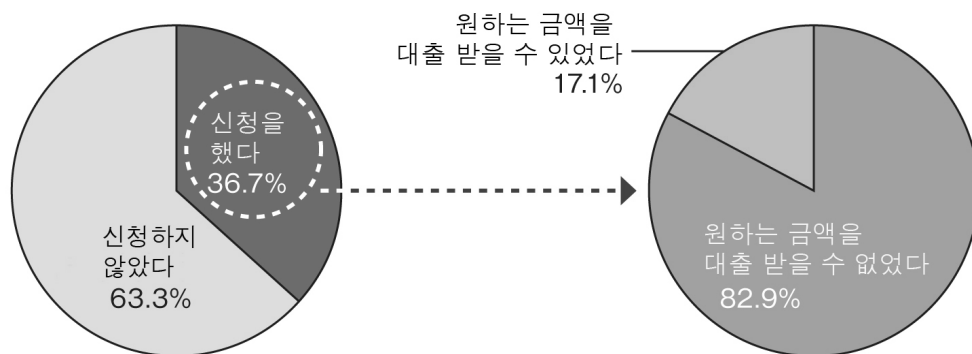
은행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현황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의 변화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개인 대출 이용자가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37%는 예금취급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중 17%는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83%는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도표 15>

<도표 15> 예금취급금융기관에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경험과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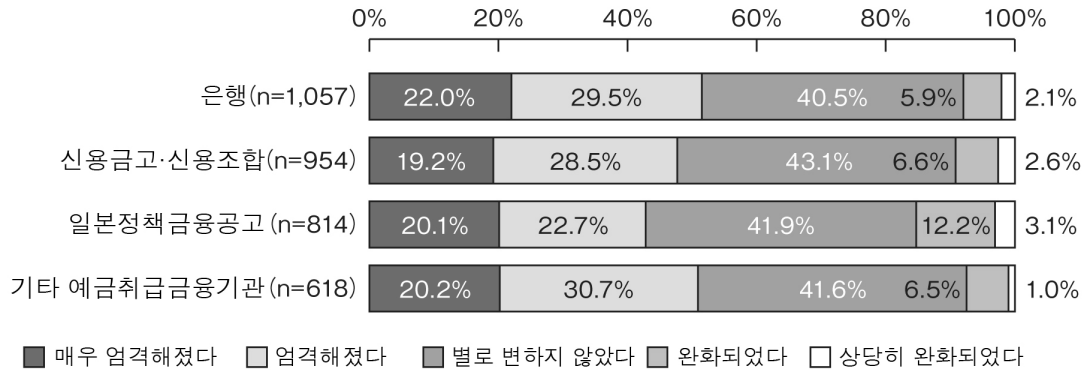
<대금업체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던 개인 대출 이용자 n=575, 중
예금취급금융기관에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개인 대출 이용자 n=211>



그리고 사업자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대출이 있는 예금취급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태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 대출 이용자의 52%가 은행의 대출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 와 “엄격해졌다” 로 응답했다. <도표 16>

〈도표 16〉 예금취급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태도

〈개인 대출 이용자 : 이번 조사 n=3,618, 작년도 조사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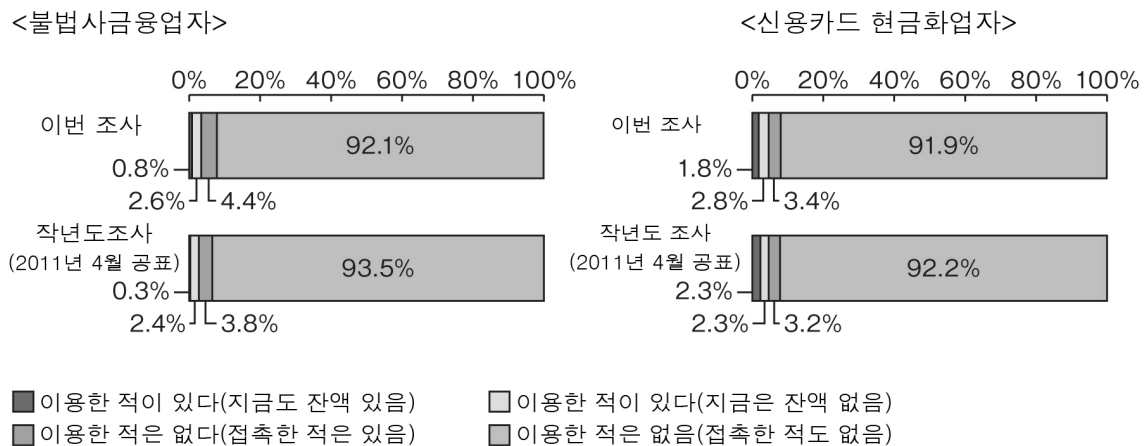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개인보다 사업자의 접촉 비율이 높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를 접촉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도표 17이다. 개인 대출 이용자 중 불법사금융업자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이고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8%로 나타나 2011년 4월에 공표한 자금수요자조사(이하 “2010년도 자금수요자 조사”로 표기)와 비교하면 각각 1.3p, 0.2p 상승했다.

〈도표 17〉 개인 대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업자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 유무

〈개인 대출 이용자 : 이번 조사 n=3,618, 작년도 조사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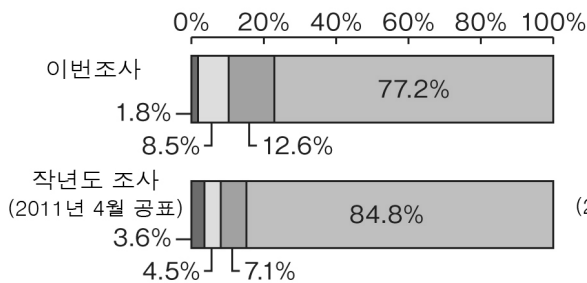


한편 사업자 대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로 나타나 2010년도 자금수요자 조사보다 각각 8p, 4p 상승했다. <도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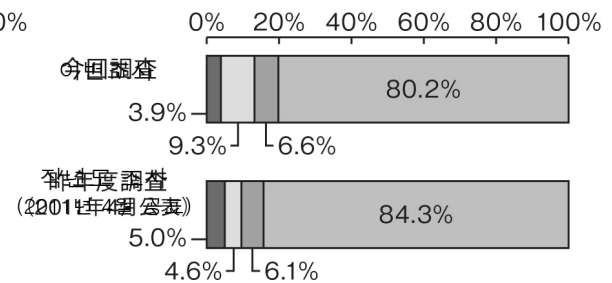
<도표 18> 사업자 대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 유무

<사업 대출 이용자 : 이번 조사 n=1,747, 작년도 조사 n=1,106>

<불법사금융업자>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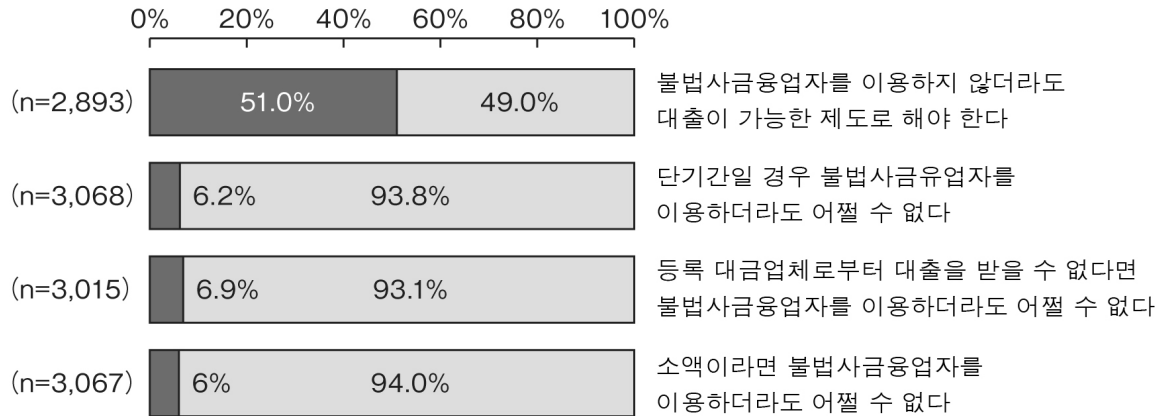


- 이용한 적이 있다(지금도 잔액 있음)
- 이용한 적이 있다(지금은 잔액 없음)
-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은 있음)
- 이용한 적은 없다(접촉한 적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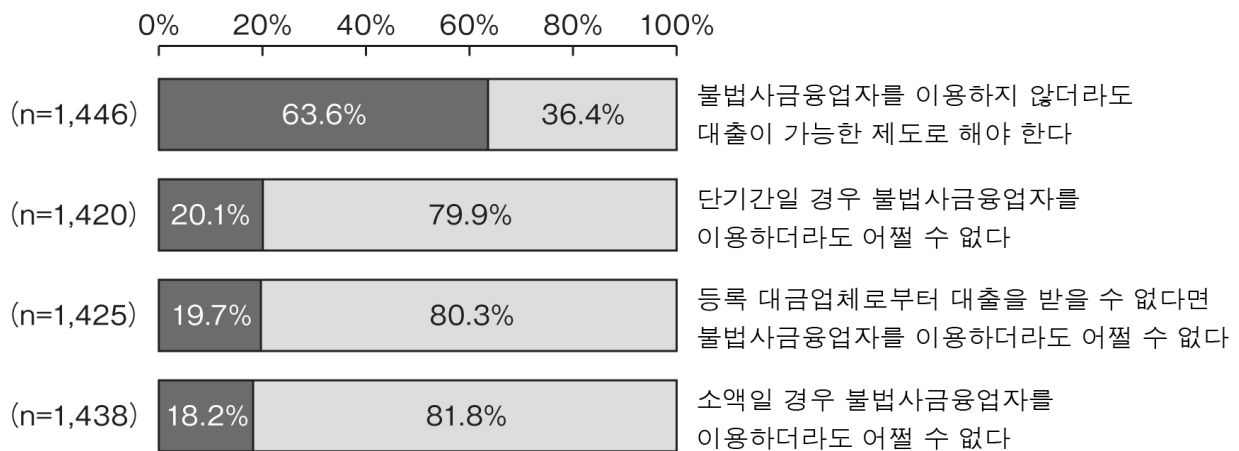
그리고 개인과 사업자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등록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응답한 개인 이용자는 7%인데 비해 사업자의 경우 20%라는 결과가 나타나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도표 19>

<도표 19> 불법사금융업자 이용 동향

<개인 대출 이용자 : n=3,618>



<사업자 대출 이용자 : n=1,747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자 제외>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세이프티넷 대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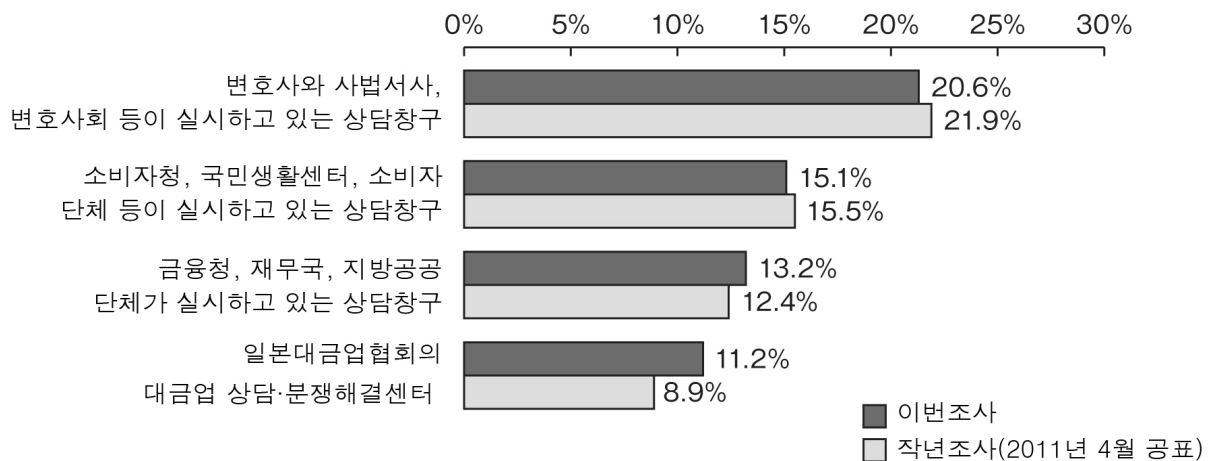
“각종 대출제도” 의 이용 확대가 필요

개인 대출 이용자의 세이프티넷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도표 20, 21>이다. “다중채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서비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곳은 “변호사나 사법서사, 변호사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창구”로 개인 대출 이용자의 21%가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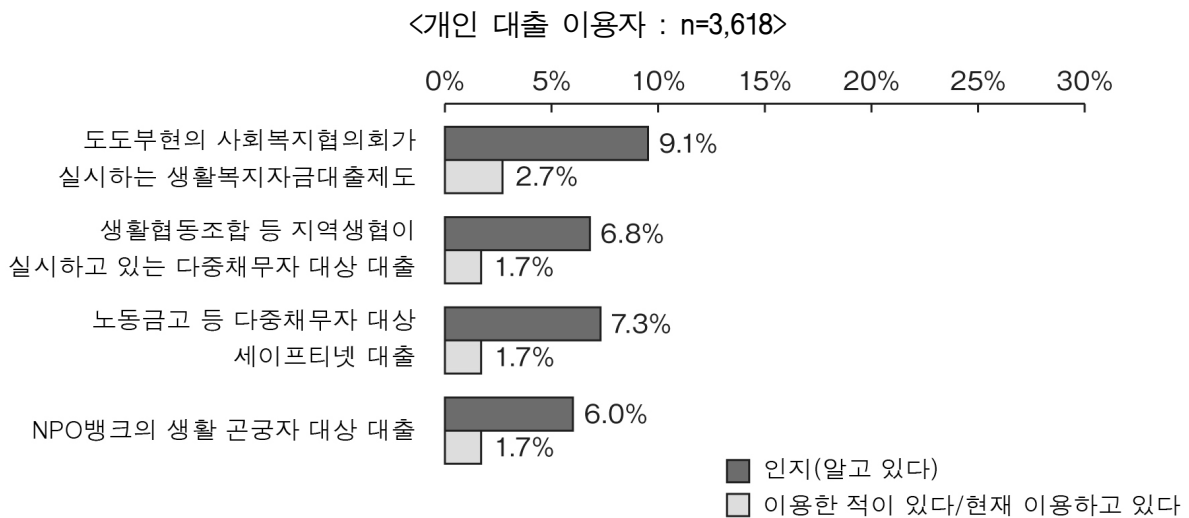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다중채무자 등의 자립·사업 회생을 위한 대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결과 “도도부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복지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 대출 이용자의 3%는 “도도부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복지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현재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향후 인지도와 이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 20>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개인 대출 이용자 : 이번 조사 n=3,618, 작년도 조사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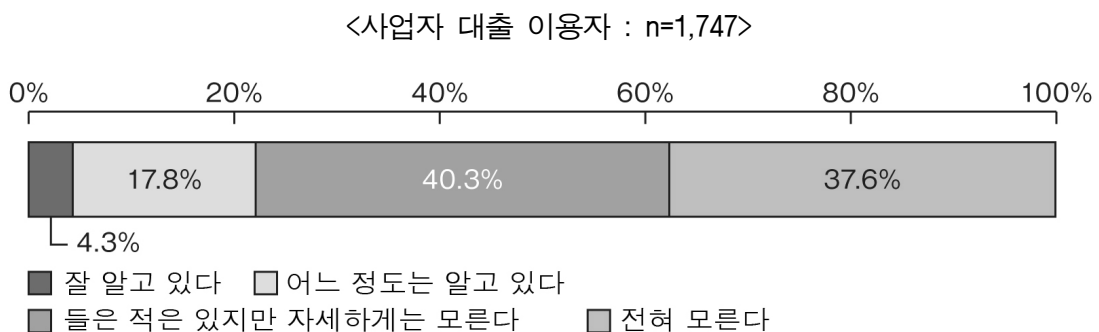


〈도표 21〉 다중채무자 등의 자립·사업 회생을 위한 대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사업자 대출 이용자의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에 대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도표 22〉이며, 사업자 대출 이용자의 22%가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금융원활화 대책”에 의거한 금융기관의 “대부조건의 변경”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의 21%가 알고 있었으며〈도표 23〉이 중 40%가 실제로 “대부조건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이용 확대가 기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도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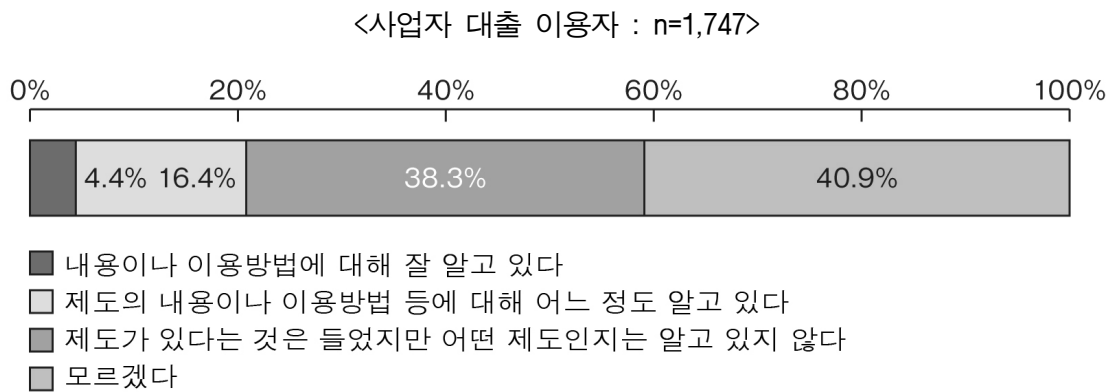
〈도표 22〉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에 대한 인지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2011년 4월 28일에 공포·시행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중 “총량규제의 예외인 개인사업자의 대출 절차의 탄력화”를 가리킨다. 개인사업주가 총량규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실시할 경우 이재민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례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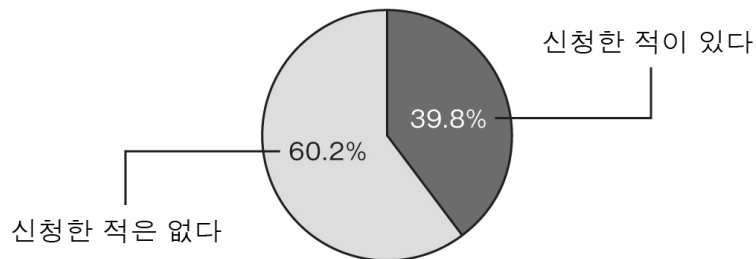
백만엔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사업 계획, 수지 계획 및 자금 계획”에 비추어 고객의 상환 능력을 판단해야 하지만 “계획”의 책정·제시가 곤란한 이주민을 고려하여 좀 더 간소한 정보(현황 등)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백만엔 이내의 대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도표 23〉 중소기업원활화법에 따른 “대부조건의 변경”에 대한 인지도



〈도표 24〉 중소기업원활화법에 따른 “대부조건의 변경” 신청 현황

〈“대부조건의 변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
대출 이용자 n=364(기타 명확하지 않은 답변 제외)〉



제 ③ 장 총회 · 이사회 · 위원회 · 협의회 · 임원 등

1. 총회

2011년 6월 14일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의안을 토의하고 모두 원안대로 승인 가결했다.

제1호 2010년도 사업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제2호 2010년도 수지계획서 및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2010년도 감사 보고]

제3호 2011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4호 2011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임원(이사) 선임에 관한 건

2. 이사회

금년도 중 이사회를 12회 개최하여 회원사의 입회와 탈회,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회원사의 회비 면제,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처분,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 본 협회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승인했다.

1) 제1회 이사회 (2011년 4월 26일)

① 심의사항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제3호 2010년도 사업보고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4호 2010년도 수지결산보고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취업규칙의 시행일 변경에 관한 건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기타

2) 제2회 이사회 (2011년 5월 17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임원 (이사) 선임 (보선)에 관한 건
- 제4호 제4회 정기총회에 부의해야 하는 의안에 관한 건

- ① 2010년도 사업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 ② 2010년도 수지계산서 및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 ③ 2011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에 관한 건
- ④ 2011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에 관한 건
- ⑤ 임원 (이사) 선임 (보선)에 관한 건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기타

3) 제3회 이사회 (2011년 6월 14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자율규제회의 의장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0조 제5항)
- 제2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3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기타

4) 제4회 이사회 (2011년 7월 21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대금전략회의 위원 선임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51조 제6항)
- 제4호 총무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52조 제5항)
- 제5호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회원사의 회비 면제에 관한 건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기타

5) 제5회 이사회 (2011년 8월 23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의 신용정보의 취급에 대해

6) 제6회 이사회 (2011년 9월 22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정관 시행에 관한 규칙” 의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제4호 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에 관한 건
- 제5호 지부 운영의 합리화 · 효율화 대상 지부에 관한 건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 · 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시험위원회 보고
- VI 기타

7) 제7회 이사회 (2011년 10월 18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8) 제8회 이사회 (2011년 11월 22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9) 제9회 이사회 (2011년 12월 20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에 관한 건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기타

10) 제10회 이사회 (2012년 1월 24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② 보고사항

i 자율규제회의 보고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11) 제11회 이사회 (2012년 2월 21일)

① 심의사항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제3호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회원사의 회비 면제에 관한 건
기타

② 보고사항

i 자율규제회의 보고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iii 총무위원회 보고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v 시험위원회 보고

vi 기타

12) 제12회 이사회 (2012년 3월 23일)

① 심의사항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처분 건
- 제4호 2012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
- 제5호 2012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제6호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에 관한 건
- 제7호 상무이사 선임 (재임)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37조 제1항, 39조 제4항)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기타

3. 자율규제회의, 대금전략회의, 총무위원회, 상담·분쟁해결위원회, 시험위원회

1) 자율규제회의

10회 (2011년 4월 20일(서면에 의한 회의), 5월 17일, 7월 21일, 8월 18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22일, 10월 12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16일(서면에 의한 회의), 12월 16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1월 24일(3월 23일) 개최

- ① 법령 등 위반 신고 사안에 대해 조치했다.
- ② 2010년도 서류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했다.

2) 대금전략회의

11회 (2011년 4월 20일, 5월 25일(서면에 의한 회의), 6월 17일, 8월 17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14일, 10월 12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16일, 12월 14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1월 18일(서면에 의한 회의), 2월 15일, 3월 13일) 개최

① 조사·연구 활동

대금업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공급기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금수요자”와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조사 등을 실시했다.

② 홍보·계몽 활동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업계 건전화를 위한 활동과 업계 동향 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등을 기관지와 협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동시에 일반소비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금업 관련 금융지식의 보급 계몽과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계몽 활동을 실시했다.

③ 연수 활동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연수회와 등록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동시에 연수 지원을 위한 법령집을 배포했다.

④ 기타

지구협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제4회 정기총회와 협회 운영 현황을 보고했으며 협회 운영 방침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지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완전 시행 후 현지 자금수요자에게 미친 영향 등 각 지구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3) 총무위원회

8회 (2011년 4월 22일, 5월 12일(서면에 의한 회의), 7월 14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15일, 10월 13일(서면에 의한 회의), 12월 15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2월 16일, 3월 15일) 개최

2012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안), 2012년도 예산 편성 방침,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회원사의 회비 면제,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의 모집,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 2011년도 예산의 상반기 집행 현황 등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했다.

4) 상담·분쟁해결위원회

5회 (2011년 5월 12일(서면에 의한 회의), 6월 27일, 9월 29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15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2월 20일(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 제76조 1항 4호의 신청인의 적격 요건,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인 대금업체가 절차를 밟는 중에 폐업한 경우의 취급과 관련하여 심의했으며, 분쟁해결 절차 수리 사안과 상담·민원·분쟁해결 접수 현황,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상담, 문의

등에 대한 대응, 민원 처리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로의 이행 순서,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민원 대응, 업무처리 기본 계약의 체결 현황 등을 보고했다.

5) 시험위원회

2회 (2011년 9월 15일, 12월 15일) 개최

2011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를 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2012년도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와 작문 방침 등을 결정했다.

4. 위원회 등

1) 자율규제위원회

14회 (2011년 4월 5일(서면에 의한 회의), 4월 27일(서면에 의한 회의), 5월 30일(서면에 의한 회의), 6월 28일(서면에 의한 회의), 7월 4일, 7월 28일, 8월 19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30일(서면에 의한 회의), 10월 26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22일(서면에 의한 회의), 12월 26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1월 25일(서면에 의한 회의), 2월 22일(서면에 의한 회의), 3월 28일(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① 광고심사소위원회

12회 (2011년 4월 20일, 5월 18일, 6월 22일, 7월 20일, 8월 17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28일, 10월 19일, 11월 16일, 12월 21일, 2012년 1월 18일(서면에 의한 회의), 2월 15일, 3월 21일) 개최

② 규율위원회

9회 (2011년 5월 11일, 6월 29일(서면에 의한 회의), 8월 12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12일, 10월 11일, 11월 15일, 12월 12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1월 17일, 3월 15일) 개최

2) 기획조사위원회

10회 (2011년 4월 13일, 5월 24일(서면에 의한 회의), 6월 8일, 8월 10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7일, 10월 5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9일, 2012년 1월 13일(서면에 의한 회의), 2월 8일, 3월 7일) 개최

① 조사연구소위원회

1회 (2011년 5월 12일) 개최

② 조사연구 · 정책기획 합동 소위원회

5회 (2011년 4월 6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2일, 11월 1일, 2012년 1월 11일, 2월 1일) 개최

③ 세제연구 소위원회

5회 (2011년 4월 19일, 5월 20일, 6월 3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2월 28일, 3월 29일) 개최

3) 연수위원회

3회 (2011년 6월 2일(서면에 의한 회의), 10월 6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2년 3월 13일) 개최

① 연수소위원회

2회 (2011년 6월 1일(서면에 의한 회의), 10월 5일(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5) 인사 추천 합동 위원회

2회 (2011년 5월 16일, 7월 8일) 개최

6) 재무부회

1회(2011년 4월 22일) 개최

5. 협의회

10개 지구 각 1회 (총 10회) (2011년 6월 21일(오키나와현), 6월 28일(홋카이도 지구), 7월 5일(시코쿠 지구), 7월 6일(쥬고쿠 지구), 7월 7일(큐슈 지구), 7월 12일(도카이 지구), 7월 13일(긴키 지구), 7월 14일(호쿠리쿠 지구), 7월 19일(간토 지구), 9월 8일(도후쿠 지구) 개최
지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1회 (2011년 12월 16일) 개최

6. 행정기관과의 의견 교환

1) 금융청 (총무기획국, 감독국, 검사국 3국 합동)

2회 (2011년 4월 26일, 10월 18일) 개최

2) 금융청 (검사국)

1회 (2011년 11월 16일) 개최

3) 간토 재무국

1회 (2012년 2월 8일) 개최

7. 임원 등의 이동

1) 부회장의 취임 및 퇴임

- | | |
|--------------------|---------------|
| ① 2011년 6월 14일자 퇴임 | 부회장 : 요시노 나오키 |
| ② 2011년 6월 14일자 선임 | 부회장 : 우치다 고조 |

2) 회원 이사의 취임 및 퇴임

- | | |
|--------------------|------------------|
| ① 2011년 6월 14일자 퇴임 | 회원 이사 : 쓰네미네 히토시 |
| ② 2011년 6월 14일자 선임 | 회원 이사 : 노구치 사토시 |

3) 상무이사의 취임

- | | |
|-------------------|--------------------|
| ① 2011년 4월 1일자 재임 | 기쿠이치 마모루, 고이데 마사히로 |
|-------------------|--------------------|

제2편

법령 개정 동향

제 1 장 대금업법 관련 법 개정 동향

1.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대금업법 관련 법령 등 개정

1) 2010년도의 대금업법 관련 법령 등의 개정 현황

〈2010년도의 법령개정 일람〉

No.	시행·제정일	개정된 법령 등	발령·공표 등
①	2010년 4월 1일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 대상) · 대금업법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8호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금융청 관련 내각부령의 정비 등에 관한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09년 12월 28일 내각부령 제78호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령	2009년 12월 28일 정령 제303호
②	2010년 6월 4일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 지침 (일부 개정)	2010년 6월 4일 금융청
③	2010년 6월 18일	대금업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10년 6월 11일 내각부령 제32호
④	2010년 8월 3일	금융청 고시 제89호 (대금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63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시간 등을 정하는 건)	2010년 8월 3일 관보
⑤		사무가이드라인 (제3편: 금융회사 관계 15 등록강습기관 관계)	2010년 8월 3일 금융청
⑥	2011년 1월 1일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금융청 관련 내각부령의 정비 등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10년 9월 21일 내각부령 제42호
⑦		상품거래소법 및 상품 투자에 관한 사업 규칙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령	2010년 9월 10일 정령 제196호
⑧	2011년 3월 29일	사무가이드라인 (제3편: 금융회사 관계 13 지정신용정보 기관 관계) (일부 개정)	2011년 3월 29일 금융청

①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0년 4월 1일 시행)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금융 ADR제도)의 핵심이 되는 지정 분쟁해결기관제도가 대금업법을 포함한 16개의 법률에 창설되어 경리적 기초와 기술적 기초 등 분쟁해결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정 요건과 지정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의 상황, 분쟁해결 등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양식 등이 규정되었다.

②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 지침 (일부 개정) (2010년 6월 4일 시행)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금융 관련업법의 개정에 따라 금융ADR제도 관련 감독지침 등이 개정되어 민원 등 대처에 관한 내부 관리 체제의 확립과 금융ADR제도에 대한 대응 등 감독상 유의 사항 등이 개정되었다.

③ 대금업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0년 6월 18일 시행)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입장에 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 대금업법 시행규칙 등의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④ 금융청 고시 제89호 (2010년 8월 3일 시행)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관련 등록 강습 사무 처리 기준에서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시간 등에 대해서 등록강습 과목별 강의 시간과 등록 강습 교재의 내용 등이 정해졌다.

⑤ 사무가이드라인 (제3편 : 금융회사 관계 15 등록 강습 기관 관계)의 시행
(2010년 8월 3일 시행)

대금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63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과 관련하여 등록 강습을 실시하려는 자가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의 심사 포인트와 등록 강습 기관의 감독상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다.

⑥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금융청 관련 내각부령의 정비 등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1년 1월 1일 시행)

무등록업자의 신용순위(무등록 순위)를 제공할 경우의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설명 의무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실무 원활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⑦ 상품거래소법 및 상품 투자 관련 사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 등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 (2011년 1월 1일 시행)

상품거래소법 및 상품 투자 관련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는 권유가 금지되는 상품 거래 계약, 상품 선물거래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의 해설 규정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⑧ 사무가이드라인 (제3편 : 금융회사 관계 13 지정 신용정보기관 관계) (일부 개정) (2011년 3월 29일 시행)

신용정보 등의 관리 체제와 신용정보 등에 관한 업무의 외부 위탁과 관련한 사무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2) 2011년도 대금업법 관련 법령 등의 개정

<2011년도의 법령 개정 일람>

No.	시행·제정일	개정된 법령 등	발령·공표 등
①	2011년 4월 28일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11년 4월 28일 내각부령 제21호
②	2011년 7월 14일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 대상) · 대금업법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③	2011년 7월 26일	대금업법 시행규칙 및 자금이동업자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11년 7월 26일 내각부령 35호
		대금업자 대상 종합감독지침 (별지양식 24, 24-2)	2011년 7월 26일 금융청
④	2011년 10월 28일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11년 10월 28일 내각부령 57호
⑤	2012년 3월 28일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령	2012년 3월 28일 정령 제71호
⑥	2012년 4월 1일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 대상) · 대금업법	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대금업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개정 대상) · 대금업법 시행규칙	2012년 3월 30일 내각부령 제17호
		대금업자 대상 종합감독지침 (일부 개정)	2012년 3월 30일 금융청

①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1년 4월 28일 시행)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자가 대금업체로부터 상환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예를 들면 특정 서면을 준비할 수 없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등이 문제가 되어 원래대로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는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예외 대출에 대한 절차의 탄력화를 도모하는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을 2011년 4월 28일에 공포·시행했다. (다음 ④와 관련된 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1일부터 한다)

부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총량규제의 예외로 되어 있는 “사회 통념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대출 절차 등의 탄력화
- (2) 총량규제의 예외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주의 대출 절차의 탄력화
- (3) 총량규제의 예외로 되어 있는 배우자의 연소득과 합산하여 연소득을 산출하는 경우의 대출 절차의 탄력화
- (4) 한도방식에 의한 대출(총량규제의 범위 내 대출) 절차의 탄력화

②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1년 7월 14일 시행)

사이버범죄 및 기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따른 범죄 및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따른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③ 대금업법 시행규칙 및 자금이동업자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1년 7월 26일 시행)

대금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보고서 양식과 대금업자 대상 종합감독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 양식, 사무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업무 또는 경리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 등이 개정되었다.

④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2011년 10월 28일 시행)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자가 상환 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의 절차와 관련한 특례를 정한 시한 조치의 기한이 2011년 10월말부터 2012년 3월말로 연장되었다.

⑤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2012년 3월 28일 시행)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과 관련하여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⑥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2년 4월 1일 시행)

등록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첨부 서류 등의 규정과 등록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등이 개정되었다.

2. 대금업법 개정의 경위

1) 대금업 규제법의 공포·시행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대금업규제법)”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 대금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의 적정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여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5월 13일에 공포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1983년 법률 제32호)

2) 2003년 개정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단속을 목적으로 2003년 8월 1일 규제를 강화한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3년 법률 제136호, 통칭 “불법사금융 대책법”)이 통과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2006년 개정

2006년 개정에서는

- (1) 상기 2)의 2003년 개정 부칙에서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한다”라고 되고 있었다.
- (2)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간주 변제 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 (3) 특히 다중채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져 이른바 그레이존 금리의 폐지 등의 법률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5년 3월 이후, 금융청에서 “대금업 제도 등에 관한 간담회”(좌장·요시노 나오키 게이오 기쥬쿠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여러 안이 제출되어 특례 금리의 도입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6년 4월에 중간 정리가 제시되었다. 과잉대부의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대금업규제법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부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넘는 대부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채무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중채무자의 발생이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채권자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한 기반 형성과 사회 보장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금융 경제 교육이나 카운슬링의 보급, 대금업과 관련된 범죄 행위의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와 관련하여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위원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간 정리”를 토대로 한 논의를 거친 후 내각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레이존 금리의 폐지 등이 담긴 내각제안법안(“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6년 10월 31일에 제165회 임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13일에 가결·통과되어 12월 20일에 공포되었다. (2006년 법률 제115호)

또, 개정 대금업법이 통과되고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2007년 11월 7일에 공포되었다.

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동 법률안 요강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다중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대금업이 일본 경제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하여 대금업 등록 요건의 강화와 대금업협회 및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와 관련된 제도의 확충 및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의 창설, 대금업자에 의한 과잉 대부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간주 변제 제도의 폐지, 업으로서 금전 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의 상한금리 인하, 업으로서 실시하는 현저한 고금리 위반 처벌의 창설, 이자로 간주되는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절차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 대금업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크게 4단계로 시행되었다.

① 1조 개정 (2007년 1월 20일 시행)

“무등록업자”와 “초고금리의 대출”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② 2조 개정 (2007년 12월 19일 시행)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금업법”으로 개정하고 “대금업자의 등록 요건의 강화”와 “행위 규제의 강화”,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 등이 실시되었다.

③ 3조 개정 (2009년 6월 18일 시행)

“재산적 기초 요건의 인상”과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의 창설”,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제도의 창설” 등이 실시되었다.

④ 완전 시행 (2010년 6월 18일 시행)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와 “재산적 기초 요건의 인상”, “출자법상의 상한금리 인하”, “행위 규제의 강화”, “간주 변제 제도의 폐지”, “상한금리의 인하”,

“과잉 대부의 금지(총량규제의 도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200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대금업법의 개정이 완전 시행되었다.

〈개정 대금업법의 시행 절차〉



5)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의 설치와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의 설치

①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의 설치

설치 경위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시행으로부터 2년 반 이내에 “개정 후의 실시 상황과 대금업자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강구할 시책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물론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거한 금리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은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가 정하는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9년 11월 13일에 금융청의 정무 삼역¹⁴⁾이 발표)

주된 검토 내용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PT)”에서는 주된 검토 내용으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 ㉠ 대금업 이용자의 실태 (이용자의 전체상, 다중채무자 현황 등)
- ㉡ 대금업체의 실태 (경영 현황, 과불금 반환 청구의 실정 등)
- ㉢ 각국의 대금업 실태
- ㉣ 개정 대금업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강구할 시책의 필요성 유무
- ㉤ 기타

검토 결과

프로젝트팀 산하에 설치된 3명의 정무관으로 구성된 “사무국 회의”를 통하여 폭 넓은 층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다음 2가지가 도출되었다.

- ㉠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대금업법은 법에 규정된 기한인 2010년 6월 18일까지 완전 시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
- ㉡ 개정 대금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방안을 중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의 설치

설치 경위

2010년 6월 18일 완전 시행된 개정 대금업법을 계기로 개정 대금업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14) 내각이 임명하는 각 성의 대신(장관)과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을 말한다.

(PT)”을 대신하여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이 설치되었다.

주된 검토 내용

- ㉠ 개정 대금업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공지 철저
 - ㉡ 개정 대금업법의 시행 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 파악
 - ㉢ 개정 대금업법과 관련된 제도의 폴로업·점검
- ②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이 실시한 관계자 공청회 실시 현황
- 2012년 3월말 현재, 개정 대금업법 폴로업팀 관계자 공청회는 제1회(2010년 9월 9일)부터 제5회(2011년 6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제 ② 장 개정 대금업법의 구체적인 내용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시행 순서대로 설명하겠다.

1. 1조 개정 (2007년 1월 20일 시행)

1)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다.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제49조, 제51조 관련)

2)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벌칙 강화

금전 대출을 실시하는 자가 업으로써 금전 대출을 실시할 경우 연이율 109.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로 처벌하며, 초과이자를 수령하거나 초과이자를 요구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출자법 제5조 제3항 관련)

2. 2조 개정 (2007년 12월 19일 시행)

1)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개정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금업법”으로 개정하고 목적 규정의 서두에 “대금업이 일본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감안하여”를 추가했다. (대금업법 제1조 관련)

2) 대금업체 등록요건의 강화

대금업 등록 시 등록 거부요건에 “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 “대금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자” 등이 추가되었다. (대금업법 제6조 관련)

3) 행위 규제의 강화

대금업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 야간은 물론 주간에 실시되는 집요한 추심행위 등 추심규제를 강화 (대금업법 제21조 제1항)
- 대금업체가 채무자 등의 자살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대금업법 제12조 7)
-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의 취득을 금지. 이자제한법상의 금리를 초과한 대출계약 시 공정증서의 작성 위탁을 금지 (대금업법 제20조)
- 연대보증인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게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대금업법 제16조의 2 제1항, 제17조 제3항)

4) 대금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의 강화

대금업협회를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으로 하고 대금업체의 가입을 독려하고 각 도도부현별 지부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대금업협회가 설립되었다. (대금업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일본대금업협회는 광고의 빈도나 과잉대부 방지 등에 대해 자율규제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당국이 인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3. 3조 개정 (2009년 6월 18일 시행)

1)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대금업체가 대금업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적합한 최저순자산액을 지금까지의 ‘개인 300만엔, 법인 500만엔’에서, ‘2,000만엔을 하한으로 하는 정령(개정 정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대금업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4항).

그리고 NPO뱅크(지역사회의 복지·환경보전활동 등을 실시하는 NPO나 시민단체, 개인 등에게 용자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비영리뱅크)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규정되었다. (개정부령 제2조)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을 정한 경우 포함)이어야 한다.
- ② 순자산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특정비영리활동과 관련된 사업(NPO법 17개 분야)에 대한 대출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취지가 정관이나 기부행위 규정에 있어야 한다.
- ④ 잉여금의 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정관 또는 기부행위 규정에 있어야 한다.
- ⑤ 사업보고서 등을 비치해 두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2)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창설

기존에도 대금업체는 임의로 개인신용정보기관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할 경우 참고하였다. 하지만 미가입업체도 많을뿐더러 잔액 등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기관 간에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업체가 채무자의 총 대출 잔액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개인신용정보기관의 지정제도가 창설됨과 동시에 지정요건과 임원의 겸직 인가제,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기타 필요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대금업법 제41조의 13 및 14. 임원의 겸직 인가제에 대해서는 대금업법 제41조의 15,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는 대금업법 제41조의 16).

그리고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업무와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가입 대금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 ① 겸업의 제한 (승인제) (대금업법 제41조의 18)
- ② 업무규정의 인가를 받을 의무 (대금업법 제41조의 20)
- ③ 가입대금업체가 신용정보 목적 이외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무 (대금업법 제41조의 23)
- ④ 타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대금업법 제41조의 24)

등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금업법 제41조의 17부터 제41조의 26까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 ① 보고징수 및 입회검사 (대금업법 제41조의 30)
- ② 업무개선명령 (대금업법 제41조의 31) 및 지정의 취소 (대금업법 제41조의 33)

등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금업법 제41조의 27부터 제41조의 34까지)
가입 대금업체와 관련하여서는

- ① 대금업체가 가입된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대금업법 제41조의 35)
 - ② 정보제공 시 자금수요자 등의 동의를 구할 의무 (대금업법 제41조의 36)
 - ③ 제공 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대금업법 제41조의 38)
-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금업법 제41조의 35부터 제41조의 38까지)

3)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제도의 창설

기존에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란 제도가 있었는데 일본대금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라고 불렀다. 3조 개정에 따라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제도가 창설되었으며, 국가자격시험이 되었다.

우선 3조 개정의 내용은

- ① 내각총리대신은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이 시험 실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등록을 신청하고 내각총리대신이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완전시행(4조 시행) 시에는 개정 대금업법에 의거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금업법 제24조의 7부터 제24조의 50 관계)

4. 4조 개정 (2010년 6월 18일 시행)

단계적으로 시행될 대금업법은 4조 개정의 시행으로 완전 시행되었다.

1)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필치화 (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

대금업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등록거부요건으로 한다. (대금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13호, 제12조의 3 관련)

그리고 영업소 등에서 대금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수의 비율은 1/50 이상으로 되어있다. (개정부령 제3조)

2)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대금업체가 대금업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한 최저순자산액을 “5,000만 원을 하한으로 하는 정령(개정 정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대금업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제3항, 제4항)

3) 행위규제의 강화 등

① 이자제한을 초과하는 계약의 금지 등

대금업체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령하거나 그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금업법 제12조의 8 관련)

② 서면교부 의무의 강화

대금업체는 대출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서면교부의무가 강화되었다. (대금업법 제16조의 2 관련)

4) 과잉대부 관련 규제의 강화

① 상환능력의 조사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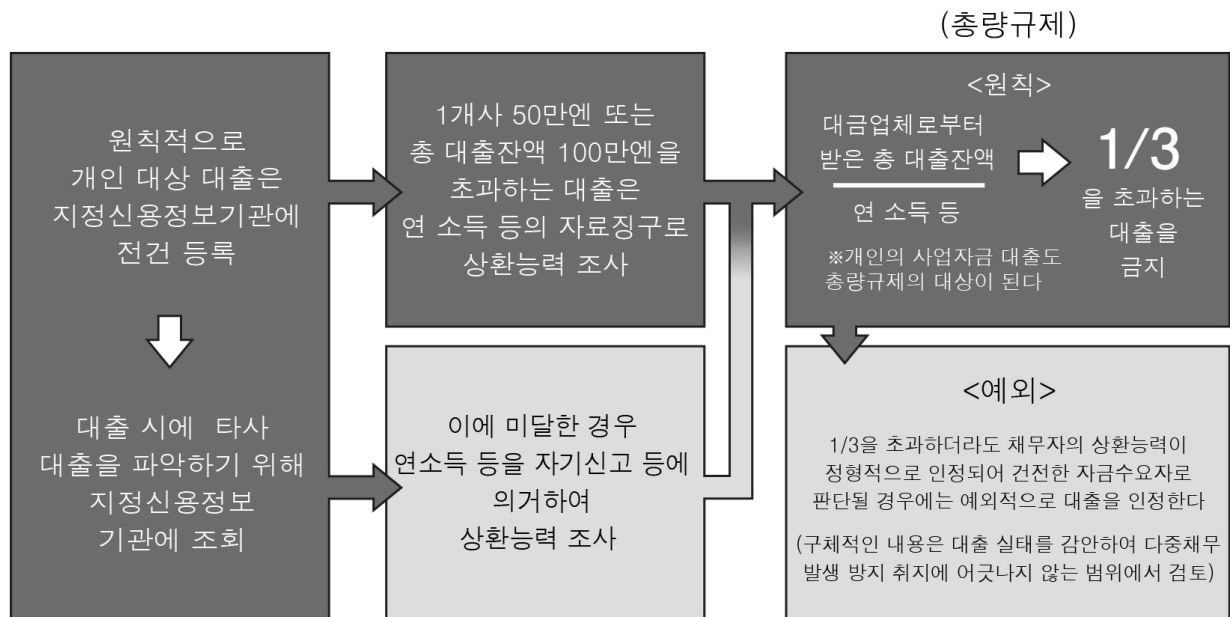
- ㉠ 대금업체가 대출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고객 등의 상환능력(재정상태 또는 신용, 대출 현황, 상환계획 등)에 관한 조사가 의무화되었다.
- ㉡ 대금업체가 개인인 고객 등과 대출계약 체결 시 지정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이용한 조사가 의무화되었다.

- ㉔ 대금업체가 자사 고객에게 대출한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또는 자사가 대출한 금액과 타 대금업체가 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대금업법 제13조 관련)

② 과잉대부의 금지 (총량규제의 도입)

- ㉕ 대금업체가 고객 등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 ㉖ 대금업체가 자사 고객에게 대출한 대출 잔액의 합계가 연 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㉗ 한도계약(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방식 대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상환능력을 조사하고, 자사 대출금액과 타사 대출금액의 잔액 합계가 연 소득 등의 1/3을 초과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대금업법 제13조의 2부터 제13조의 4 관련)

<총량규제의 도입>



※ 주택론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신용정보기관의 타 대출 등록정보를 포함한 개별 판단으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을 일반적으로 금지)

5) 간주상환제도의 폐지

대금업체가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자의 상한액과 출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자의 상한액 사이의 금리(이른바

그레이존 금리)를 임의로 지불하고 대금업체로부터 계약서면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해당 지불은 유효한 채무의 상환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대금업법 제43조 관련)

6) 제5조 : 이자제한법의 일부 개정 (시행은 제4조와 동일)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일에 개정 이자제한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후에도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원금이 1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 100만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는 이자제한)의 구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영업적 금전소비대차(채권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특칙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된다.

① 원금 구분의 적용 특례

이자 제한규율에 대해 채권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금전소비대차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복수인 경우 원금 구분의 적용 특칙이 설정되었다. (이자제한법 제5조 관련)

- ㉠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해당 대출을 받은 원금과의 합계액에 따라 정해진다.
-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각의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원금의 합계액에 따라 결정된다.

② 영업적 금전소비대차상의 간주이자

채권자가 업으로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상의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특칙을 마련하고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다음 사항에 한한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 ㉠ 계약의 체결 또는 채무의 상환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에 열거한 비용
 - 공조공과 지불에 충당되는 비용
 - 강제집행 비용,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비용, 기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수속절차와 관련되어 그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채무자가 금전의 수령 또는 상환을 위하여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 등의 수수료 (상한은 정령에 위임)
- ㉡ 카드재발급수수료 및 기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가 처리하는 사무비용으로 정령에 규정된 비용 (이자제한법 제6조 관련)

③ 배상액의 예정 특칙

채권자가 업으로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액의 예정 상한을 연 20%로 하고,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했다. (이자제한법 제7조 관련)

④ 보증료의 제한 등

채권자가 업으로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보증에서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료를 주된 채무의 이자와 합산하여 상한금리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한편 근보증 시의 보증료 특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 제8조 관련)

7) 제7조 :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시행은 제4조와 동일)

출자법의 다음 조항은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일에 맞춰 개정되었다.

① 금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 제한

㉠ 금전대차의 중개수수료 제한과 관련하여 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대차금액에 그 기간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수수료의 계약을 하거나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출자법 제4조 제1항 관련)

㉡ 금전대차의 보증에 대한 중개와 관련하여서도 금전대차의 중개와 동일한 규제를 마련한다. (출자법 제4조 제2항 관련)

② 업으로 실시하는 고금리위반의 처벌

업으로 실시하는 고금리위반의 처벌대상 금리를 연 29.2%(윤년의 경우 연 29.28%)를 초과하는 금리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인하한다. (출자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개정으로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 후의 대출 상한금리는 도표 <상한금리의 인하>와 같이 된다.

③ 금전대차의 보증료 제한

채권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보증에서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료를 주된 채무의 이자와 합산하여 상한금리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증료가 있는 경우의 고금리 규제 특칙을 마련했다. (출자법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 관련)

④ 간주이자

금전 대출을 실시하는 자가 그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간주한다.

㉠ 계약 체결 또는 채무의 상환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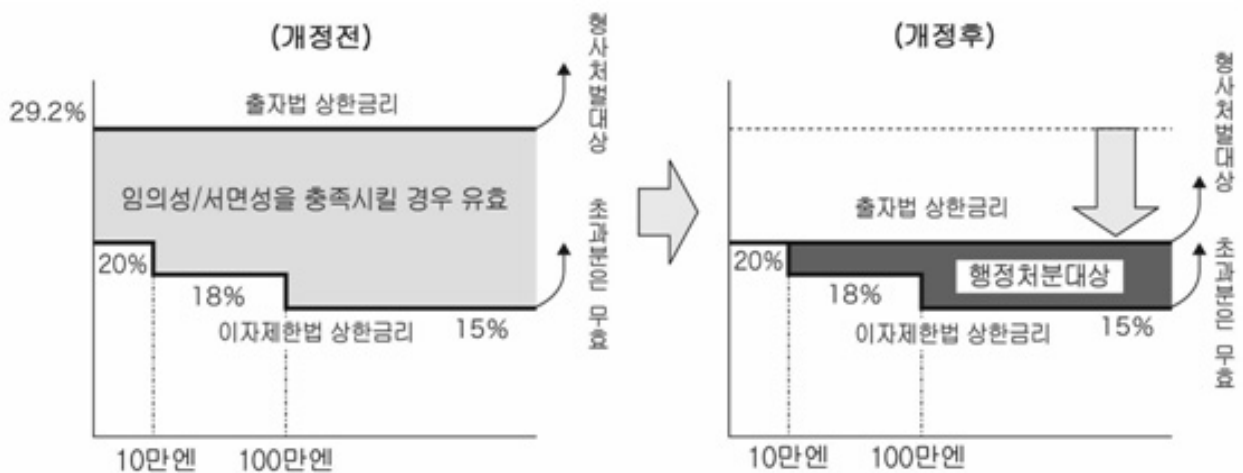
- 공조공과 지불에 충당되는 비용
- 강제집행 비용,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비용, 기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수속절차와 관련되어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채무자가 금전의 수령 또는 상환을 위하여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 등의 수수료

㉡ 대출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금전 대여를 하는 자가 처리하는 사무비용으로 정령에 규정된 비용 (출자법 제5조의 4 제4항 관련)

8) 제8조 :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시행은 제4조와 동일)

일수업자 및 전화담보금융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했다. (출자법 일부 개정법 부칙 제8항부터 제16항 관련)

〈상한금리의 인하〉



대략 3년을 목표로 대금업법 43조의 이른바 그레이존 금리를 철폐함은 물론 출자법상의 상한금리(29.2%)를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 수준(20%)으로 인하

제3편

통계자료

제 1 장 금융청 대금업 관련 자료

【출처 : 금융청 대금업 관련 자료집】

1. 대금업자 수 추이 등

1) 각 연도 말의 추이

〈대금업체의 장기적 추이〉

(단위 : 개사)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도도부현등록	34,841	35,879	35,034	32,900	32,526	31,521	30,400	30,186	29,095	28,543	27,896
재무국등록	1,305	1,338	1,306	1,276	1,273	1,281	1,268	1,228	1,195	1,168	1,090
합계	36,146	37,217	36,340	34,176	33,799	32,802	31,668	31,414	30,290	29,711	28,98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도부현등록	26,551	25,352	22,869	17,243	13,534	11,168	8,535	5,705	3,648	2,240	2,020
재무국등록	1,000	929	839	762	702	664	580	473	409	349	330
합계	27,551	26,281	23,708	18,005	14,236	11,832	9,115	6,178	4,057	2,589	2,350

2) 재무국, 도도부현별

〈재무국, 도도부현별 대금업체 추이 (2011년 3월말, 2012년 3월말)〉

(단위 : 개사)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간토재무국	166	163	도후쿠재무국	28	27	시코쿠재무국	16	13
도쿄도	733	691	미야기현	41	39	가가와현	11	7
가나가와현	61	54	이와테현	12	10	도쿠시마현	13	8
사이타마현	42	36	후쿠시마현	4	4	에히메현	31	26
지바현	36	34	아키타현	15	15	고치현	19	19
야마나시현	12	10	아오모리현	19	16	소계	74	60
도치기현	12	9	야마가타현	5	5	시코쿠관내합계	90	73
이바라기현	15	12	소계	96	89	규슈재무국	13	11
군마현	18	16	도후쿠관내합계	124	116	구마모토현	25	24
니가타현	13	10	도카이재무국	26	25	오이타현	10	8
나가노현	9	8	아이치현	94	83	미야자키현	16	15
소계	951	880	시즈오카현	44	42	가고시마현	18	17
간토관내합계	1,117	1,043	미에현	23	19	소계	69	64
긴키재무국	46	41	기후현	13	12	규슈관내합계	82	75
오사카부	230	203	소계	174	156	후쿠오카재무국	18	16
교토부	62	57	도카이관내합계	200	181	후쿠오카현	120	112
효고현	97	73	호쿠리쿠재무국	7	7	사가현	11	9
나라현	10	10	도야마현	15	13	나가사키현	28	25
와카야마현	14	13	이사카와현	15	13	소계	159	146
시가현	12	7	후쿠이현	11	10	후쿠오카관내합계	177	162
소계	425	363	소계	41	36	오кина와종합사무국	4	3
긴키관내합계	471	404	오쿠리쿠관내합계	48	43	오кина와현	67	59
홋카이도재무국	7	6	주고쿠재무국	18	18	소계	67	59
홋카이도	71	61	히로시마현	44	42	오кина와관내합계	71	62
소계	71	61	아마구치현	27	24			
홋카이도관내합계	78	67	오카야마현	37	35	재무국 합계	349	330
			돗토리현	3	3	도도부현 합계	2,240	2,020
			시마네현	2	2	총합계	2,589	2,350
			소계	113	106			
			주고쿠관내합계	131	124			

(주) 계수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2. 대출 잔액 추이

1) 소비자 대상과 사업자 대상별 대출 잔액 (각 연도 말)

<대출 잔액 추이 (2002년 ~ 2011년)>

(단위 : 억엔)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201,196	200,470	196,550	198,574	209,005	203,053	179,191	157,281	126,477	95,519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236,958	267,466	271,489	234,932	204,853	233,674	235,707	221,186	172,880	165,225
합계	438,154	467,937	468,040	433,506	413,858	436,727	414,898	378,467	299,357	260,745

(주)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 업태별 대출 잔액

<대출 잔액 추이 (2002년 ~ 2011년)>

(단위 : 억엔 / %)

	대출 잔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119,341 (12.3)	120,074 (0.6)	117,169 (▲2.4)	116,720 (▲0.4)	117,403 (0.6)	108,601 (▲7.5)	89,659 (▲17.4)	72,853 (▲18.7)	53,497 (▲26.6)	36,600 (▲31.6)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2,877 (4.4)	2,187 (▲24.0)	2,288 (4.6)	1,824 (▲20.3)	1,285 (▲29.6)	2,408 (87.4)	1,653 (▲31.4)	1,933 (16.9)	1,351 (▲30.1)	1,861 (37.7)
소비자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12,427 (▲17.5)	8,067 (▲35.1)	7,226 (▲10.4)	5,751 (▲20.4)	9,183 (59.7)	7,154 (▲22.1)	6,992 (▲2.3)	6,158 (▲11.9)	5,719 (▲7.1)	6,282 (9.8)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178,909 (▲0.6)	222,336 (24.3)	228,062 (2.6)	193,333 (▲15.2)	160,580 (▲16.9)	177,810 (10.7)	178,547 (0.4)	168,546 (▲5.6)	121,551 (▲27.9)	115,275 (▲5.2)
어음할인업체	3,697 (▲13.5)	2,702 (▲26.9)	2,679 (▲0.9)	2,385 (▲11.0)	2,206 (▲7.5)	2,348 (6.4)	1,597 (▲32.0)	961 (▲39.8)	770 (▲19.9)	615 (▲20.1)
신용카드회사	16,233 (26.0)	16,828 (3.7)	16,202 (▲3.7)	14,706 (▲9.2)	23,345 (58.7)	25,413 (8.9)	26,334 (3.6)	24,635 (▲6.5)	22,381 (▲9.1)	18,817 (▲15.9)
신용판매회사	51,917 (▲16.3)	47,702 (▲8.1)	50,870 (6.6)	53,093 (4.4)	53,504 (0.8)	57,293 (7.1)	55,509 (▲3.1)	54,434 (▲1.9)	46,746 (▲14.1)	38,532 (▲17.6)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5,632 (▲18.2)	5,412 (▲3.9)	6,765 (25.0)	6,903 (2.0)	6,552 (▲5.1)	6,631 (1.2)	4,044 (▲39.0)	4,317 (6.8)	8,463 (96.0)	7,559 (▲10.7)
건설· 부동산업자	12,085 (▲32.3)	9,248 (▲23.5)	7,313 (▲20.9)	5,507 (▲24.7)	5,432 (▲1.4)	6,010 (10.6)	5,731 (▲4.6)	4,962 (▲13.4)	3,800 (▲23.4)	2,368 (▲37.7)
전당포	988 (▲26.3)	425 (▲57.0)	437 (2.8)	240 (▲45.1)	198 (▲17.5)	251 (26.8)	141 (▲43.8)	132 (▲6.4)	113 (▲14.4)	90 (▲20.4)
리스회사	33,350 (▲4.8)	32,375 (▲2.9)	28,416 (▲12.2)	32,379 (13.9)	33,495 (3.4)	42,496 (26.9)	44,543 (4.8)	39,435 (▲11.5)	34,891 (▲11.5)	32,730 (▲6.2)
일수대금업체	694 (▲8.0)	576 (▲17.0)	607 (5.4)	660 (8.7)	672 (1.8)	307 (▲54.3)	142 (▲53.7)	95 (▲33.1)	69 (▲27.4)	2 (▲97.1)
비영리특례 대상법인	- (-)	- (-)	- (-)	- (-)	- (-)	- (-)	- (-)	- (-)	- (-)	7 (-)
합계	438,154 (▲1.6)	467,937 (6.8)	468,040 (0.0)	433,506 (▲7.4)	413,858 (▲4.5)	436,727 (5.5)	414,898 (▲5.0)	378,467 (▲8.8)	299,357 (▲27.8)	260,745 (▲12.9)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

(참고) 대금업체의 업태분류

업태	정의
①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무담보(주택담보 제외)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유담보(주택담보 제외)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비자대상 주택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⑤~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⑤ 어음할인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어음할인잔액이 50%이상(일본사업자금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5%이상)이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신용카드회사	일본신용카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⑦~⑫와 중복될 경우 ⑥을 우선한다)
⑦ 신용판매회사	포괄신용구입 ¹⁵⁾ 알선업체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⑫와 중복될 경우에는 ⑦을 우선한다)
⑧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전기기계기구 관련 비영리법인과 자동차 관계의 비영리법인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또는 일본백화점협회, 일본체인점협회, 일본상점연맹, 일본전문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⑨, ⑪과 중복될 경우는 ⑧을 우선한다)
⑨ 건설 부동산업자	건설·부동산 관계의 비영리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⑪과 중복될 경우에는 ⑨를 우선한다)
⑩ 전당포	전당포 허가를 받은 업체 (⑧, ⑨, ⑪과 중복될 경우 ⑩을 우선한다)
⑪ 리스회사	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⑫ 일수대금업체	일수대금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⑪과 중복될 경우 ⑫를 우선한다)
⑬ 비영리특례대상 법인	상기의 사항에 관계없이 비영리특례 대상 법인으로 대금업 등록을 한 업체

15) 할부판매법에서 규정된 신용구입 알선의 일종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판매

3) 재무국 · 도도부현별 대출 잔액 (2011년 3월말)

<재무국 · 도도부현별 대출 잔액>

(단위 : 억엔)

	업체수	소비자대상 대출잔액	사업자대상 대출잔액	대출잔액 합계
간토재무국	154	69,095	48,753	117,848
도쿄도	555	2,008	81,596	83,604
가나가와현	52	1,220	5,555	6,775
사이타마현	35	123	132	255
지바현	28	7	66	73
야마나시현	11	6	12	18
도치기현	11	33	16	49
이바라기현	14	5	23	28
군마현	16	4	679	683
니가타현	12	4	7	11
나가노현	9	9	145	154
소계	743	3,424	88,235	91,659
간토관내합계	897	72,520	136,988	209,508
긴키재무국	45	9,930	770	10,700
오사카부	203	453	16,438	16,891
교토부	56	59	928	987
효고현	77	60	636	696
나라현	9	13	23	36
와카야마현	13	16	6	22
시가현	10	3	9	12
소계	368	606	18,042	18,648
긴키관내합계	413	10,537	18,812	29,349
홋카이도재무국	7	2,144	177	2,321
홋카이도	65	548	636	1,184
소계	65	548	636	1,184
홋카이도관내합계	72	2,693	814	3,507
도후쿠재무국	27	308	46	354
미야기현	38	11	437	448
이와테현	10	12	2	14
후쿠시마현	4	0	1	1
아키타현	15	8	76	84
아오모리현	16	5	14	19
야마가타현	5	1	0	1
소계	88	40	533	573
도후쿠관내합계	115	349	580	929
도카이재무국	24	5,260	52	5,312
아이치현	88	467	3,818	4,285
시즈오카현	43	83	236	319
미에현	21	21	1	22
기후현	13	5	56	61
소계	165	577	4,113	4,690
도카이관내합계	189	5,837	4,165	10,002

	업체수	소비자대상 대출잔액	사업자대상 대출잔액	대출잔액 합계
호쿠리쿠재무국	7	71	18	89
도야마현	14	7	148	155
이사카와현	15	17	17	34
후쿠이현	10	7	5	12
소계	39	32	172	204
호쿠리쿠관내합계	46	103	191	294
주고쿠재무국	18	500	448	948
히로시마현	41	30	546	576
아마구치현	24	21	9	30
오카야마현	37	30	16	46
돗토리현	3	1	2	3
시마네현	2	0	4	4
소계	107	84	580	664
주고쿠관내합계	125	584	1,029	1,613
시코쿠재무국	15	256	15	271
가가와현	8	7	77	84
도쿠시마현	13	5	7	12
에히메현	26	16	27	43
고치현	19	39	63	102
소계	66	68	176	244
시코쿠관내합계	81	324	192	516
규슈재무국	13	252	14	266
구마모토현	25	12	30	42
오이타현	9	7	8	15
미야자키현	16	43	40	83
가고시마현	17	43	58	101
소계	67	106	137	243
규슈관내합계	80	359	152	511
후쿠오카재무국	17	1,878	727	2,605
후쿠오카현	107	113	1,338	1,451
사가현	10	6	43	49
나가사키현	26	19	49	68
소계	143	140	1,431	1,571
후쿠오카관내합계	160	2,019	2,158	4,177
오кина와종합사무국	4	159	3	162
오кина와현	52	30	137	167
소계	52	30	137	167
오кина와관내합계	56	190	141	331
재무국 합계	331	89,859	51,029	140,888
도도부현 합계	1,903	5,660	114,196	119,856
총합계	2,234	95,519	165,225	260,744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2,501개사)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267개사)를 제외한 수이다.

3. 업태별 대출금리 (2011년 3월말)

〈업태별 대출금리〉

업태	업체수	소비자 대상 대출					사업자 대상 대출			합계		
		잔액 (억엔)	구성비	금리 (%)	무담보 잔액 (억엔)	금리 (%)	잔액 (억엔)	구성비	금리 (%)	잔액 (억엔)	구성비	금리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639	35,739	37.4%	17.97	32,642	18.29	861	0.5%	10.62	36,600	14.0%	17.80
대형사	9	32,032	33.5%	18.20	29,042	18.55	682	0.4%	11.03	32,714	12.5%	18.05
대형사 이외	630	3,707	3.9%	15.96	3,600	16.17	179	0.1%	9.07	3,886	1.5%	15.64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40	1,617	1.7%	5.06	51	16.67	243	0.1%	5.47	1,861	0.7%	5.12
소비자 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46	5,811	6.1%	3.56	22	2.75	471	0.3%	6.50	6,282	2.4%	3.78
사업자대상 대금업체	794	2,664	2.8%	5.58	682	12.52	112,610	68.2%	1.64	115,275	44.2%	1.73
어음할인업체	120	6	0.0%	10.53	4	10.68	608	0.4%	9.11	615	0.2%	9.13
신용카드회사	138	13,959	14.6%	15.59	13,553	15.97	4,857	2.9%	2.04	18,817	7.2%	12.09
신용판매회사	109	31,181	32.6%	14.93	29,928	15.41	7,351	4.4%	2.45	38,532	14.8%	12.55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29	412	0.4%	4.55	98	12.75	7,147	4.3%	1.06	7,559	2.9%	1.25
건설·부동산업자	90	261	0.3%	8.79	9	6.93	2,107	1.3%	4.12	2,368	0.9%	4.64
전당포	36	14	0.0%	16.13	8	16.95	75	0.0%	8.70	90	0.0%	9.91
리스회사	70	3,848	4.0%	2.39	51	4.24	28,882	17.5%	3.37	32,730	12.6%	3.25
일수대금업체	10	0	0.0%	0.00	0	0.00	2	0.0%	18.90	2	0.0%	18.90
비영리특례 대상 법인	13	1	0.0%	2.99	1	2.99	6	0.0%	2.17	7	0.0%	2.33
합계	2,234	95,519	100.0%	15.50	77,055	16.02	165,225	100.0%	3.96	260,745	100.0%	6.63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금리”는 “평균약정금리”

(주2)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형사”란 대출 잔액 500억엔 초과 업체를 말한다.

(주3) 소비자대상 대출 중 무담보잔액이란 전체 소비자대상 대출 중 무담보대출 잔액을 말한다.

(주4)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2,501개사)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267개사)를 제외한 수이다.

4. 업태별 대출건수,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2011년 3월말)

〈업태별 대출건수,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업태	업체수	소비자 대상 대출						사업자 대상 대출			합계	
		건수 (건)	잔액 (억엔)	1건당 평균대출 잔액 (천엔)	무담보 건수 (건)	무담보 잔액 (억엔)	1건당 평균대출 잔액 (천엔)	건수 (건)	잔액 (억엔)	1건당 평균대출 잔액 (천엔)	건수 (건)	잔액 (억엔)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639	7,380,827	35,739	484	7,284,169	32,642	448	47,805	861	1,801	7,428,632	36,600
대형사	9	6,103,085	32,032	525	6,012,466	29,042	483	37,139	682	1,836	6,140,224	32,714
대형사 이외	630	1,277,742	3,707	290	1,271,703	3,600	283	10,666	179	1,678	1,288,408	3,886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40	59,231	1,617	2,730	19,459	51	262	1,868	243	13,009	61,099	1,861
소비자 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46	61,764	5,811	9,408	3,825	22	575	1,170	471	40,256	62,934	6,282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794	313,717	2,664	849	294,184	682	232	157,433	112,610	71,529	471,150	115,275
어음할인업체	120	950	6	632	902	4	443	38,373	608	1,584	39,323	615
신용카드회사	138	13,661,115	13,959	102	13,656,027	13,553	99	51,348	4,857	9,459	13,712,463	18,817
신용판매회사	109	23,899,870	31,181	130	23,886,773	29,928	125	43,203	7,351	17,015	28,943,073	38,532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29	53,138	412	775	50,195	98	195	2,627	7,147	272,059	55,765	7,559
건설·부동산업자	90	4,935	261	5,289	1,159	9	777	8,105	2,107	25,996	13,040	2,368
전당포	36	3,172	14	441	2,821	8	284	1,063	75	7,056	4,235	90
리스회사	70	50,641	3,848	7,599	21,195	51	241	13,028	28,882	221,692	63,669	32,730
일수대금업체	10	1	0	0	1	0	0	1,003	2	199	1,004	2
비영리특례 대상 법인	13	294	1	340	294	1	340	261	6	2,299	555	7
합계	2,234	45,489,655	95,519	210	45,221,004	77,055	170	367,287	165,225	44,985	45,856,942	260,745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2,501개사)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267개사)를 제외한 수이다.

(주3)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형사”란 대출 잔액이 500억엔을 초과하는 업체를 말한다.

(주4) “건수”는 각 업체의 건수를 단순 합계한 수치이다. 건수 계산 방법은 각 업체의 계약형태 및 채권관리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등을 업태 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2011년 3월말)

1) 대출 금리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금리별)〉

금리	해당업체 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천엔)
28% 초과	22	3.4	10	0.0	5,408	0.1	185
26% 초과 ~ 28% 이하	38	5.9	226	0.7	93,965	1.3	241
24% 초과 ~ 26% 이하	39	6.1	2,059	6.3	501,561	6.9	411
22% 초과 ~ 24% 이하	54	8.5	333	1.0	138,741	1.9	240
20% 초과 ~ 22% 이하	58	9.1	3,831	11.7	995,278	13.7	385
18% 초과 ~ 20% 이하	105	16.4	16,583	50.8	3,454,524	47.4	480
16% 초과 ~ 18% 이하	178	27.9	1,933	5.9	594,519	8.2	325
14% 초과 ~ 16% 이하	44	6.9	6,285	19.3	1,219,870	16.7	515
12% 초과 ~ 14% 이하	16	2.5	10	0.0	4,010	0.1	249
10% 초과 ~ 12% 이하	18	2.8	620	1.9	201,078	2.8	308
8% 초과 ~ 10% 이하	9	1.4	7	0.0	1,203	0.0	582
6% 초과 ~ 8% 이하	15	2.3	17	0.1	5,276	0.1	322
4% 초과 ~ 6% 이하	11	1.7	111	0.3	3,704	0.1	2,997
2% 초과 ~ 4% 이하	22	3.4	235	0.7	14,223	0.2	1,652
2% 이하	10	1.6	375	1.1	50,809	0.7	738
합계	639	100.0	32,642	100.0	7,284,169	100.0	448

(주)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 대출 잔액 규모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잔액 규모별	해당업체 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천엔)
5,000억엔 초과	2	0.3	16,221	49.7	3,306,796	45.4	491
1,0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4	0.6	10,827	33.2	2,272,948	31.2	476
500억엔 초과~1,000억엔 이하	3	0.5	1,993	6.1	432,722	5.9	461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11	1.7	2,005	6.1	532,323	7.3	377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6	0.9	428	1.3	181,804	2.5	235
10억엔 초과~50억엔 이하	28	4.4	526	1.6	199,966	2.7	263
5억엔 초과~10억엔 이하	26	4.1	193	0.6	155,115	2.1	124
1억엔 초과~5억엔 이하	135	21.1	302	0.9	132,020	1.8	229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104	16.3	73	0.2	34,442	0.5	212
1,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219	34.3	65	0.2	31,368	0.4	207
1,000만엔 이하	101	15.8	4	0.0	4,665	0.1	86
합계	639	100.0	32,642	100.0	7,284,169	100.0	448

(주)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6.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2011년 3월말)

1) 대출 금리별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금리별)〉

금리	해당업체 수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백만엔)
28% 초과	8	1.0	4	0.0	686	0.5	0.6
26% 초과 ~ 28% 이하	3	0.4	4	0.0	376	0.3	1.1
24% 초과 ~ 26% 이하	4	0.5	16	0.0	82	0.1	19.5
22% 초과 ~ 24% 이하	11	1.4	102	0.1	888	0.6	11.5
20% 초과 ~ 22% 이하	12	1.5	13	0.0	795	0.6	1.6
18% 초과 ~ 20% 이하	25	3.1	30	0.0	1,744	1.2	1.7
16% 초과 ~ 18% 이하	52	6.5	57	0.1	5,521	3.8	1.0
14% 초과 ~ 16% 이하	124	15.6	1,104	1.0	39,259	27.4	2.8
12% 초과 ~ 14% 이하	59	7.4	741	0.7	15,033	10.5	4.9
10% 초과 ~ 12% 이하	55	6.9	446	0.4	12,900	9.0	3.5
8% 초과 ~ 10% 이하	32	4.0	221	0.2	2,039	1.4	10.8
6% 초과 ~ 8% 이하	50	6.3	1,847	1.6	2,676	1.9	69.0
4% 초과 ~ 6% 이하	61	7.7	2,194	2.0	2,507	1.7	87.5
2% 초과 ~ 4% 이하	125	15.7	9,294	8.3	41,709	29.1	22.3
2% 이하	173	21.8	95,951	85.6	17,251	12.0	556.2
합계	794	100.0	112,030	100.0	143,466	100.0	78.1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중 어음할인업체의 약 580억엔을 제외했다.

2) 대출 잔액 규모별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잔액 규모별)〉

대출 잔액 규모별	해당업체 수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백만엔)
5,000억엔 초과	3	0.4	31,538	28.2	12,893	9.0	244.6
1,0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19	2.4	41,691	37.2	2,595	1.8	1606.6
500억엔 초과~1,000억엔 이하	27	3.4	18,499	16.5	68,263	47.6	27.1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57	7.2	13,685	12.2	25,425	17.7	53.8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41	5.2	2,833	2.5	3,630	2.5	78.0
10억엔 초과~50억엔 이하	122	15.4	2,806	2.5	12,167	8.5	23.1
5억엔 초과~10억엔 이하	61	7.7	431	0.4	2,588	1.8	16.7
1억엔 초과~5억엔 이하	169	21.3	426	0.4	9,602	6.7	4.4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97	12.2	70	0.1	3,480	2.4	2.0
1,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147	18.5	45	0.0	2,458	1.7	1.8
1,000만엔 이하	51	6.4	2	0.0	365	0.3	0.5
합계	794	100.0	112,030	100.0	143,466	100.0	78.1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중 어음할인업체의 약 580억엔을 제외했다.

7. 대금업체의 행정처분건수 추이

〈대금업체의 행정처분건수 추이〉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년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재무부 내 대금결제 업업체	업무개선 (법제24조의 6의 3)	-	-	-	0	7	1	0	1	0	0	0	1
	영업정지 (구, 규제법 제36조, 법제24 조의 6의 4)	5	5	14	1	3	1	0	0	0	0	0	0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7조, 법 제24 조의 6의 5)	3	0	2	1	2	0	1	0	0	0	0	0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8조, 법 제24 조의 6의 6)	0	0	0	0	0	0	0	0	0	0	0	0
	처분건수 합계	8	5	16	2	12	2	1	1	0	0	0	1
내무부 내 대금결제 업업체	업무개선 (법제24조의 6의 3)	-	-	-	0	19	18	9	2	0	2	0	4
	영업정지 (구, 규제법 제36조, 법 제24 조의 6의 4, 법 제24조의 6 의 5)	449	604	169	81	83	45	27	8	2	5	1	16
	등록취소 (구, 규제법제37조, 법제24조 의 6의 5)	504	514	322	280	194	131	56	4	7	4	4	19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8조, 법 제24 조의 6의 6)	651	473	154	144	151	47	6	1	0	0	1	2
	처분건수 합계	1,604	1,591	645	505	447	241	98	15	9	11	6	41
합계	업무개선 (법제24조의 6의 3)	-	-	-	0	26	19	9	3	0	2	0	5
	영업정지 (구, 규제법제36조, 법제24조 의 6의 4, 법제24조의 6의 5)	454	609	183	82	86	46	27	8	2	5	1	16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7조, 법 제24 조의 6의 5)	507	514	324	281	196	131	57	4	7	4	4	19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취소 (구, 규제법제38조, 법제24조 의 6의 6)	651	473	154	144	151	47	6	1	0	0	1	2
	처분건수 합계	1,612	1,596	661	507	459	243	99	16	9	11	6	42

(주) 표 중에 “구, 규제법”은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법”은 대금업법을 말한다.

8. 금융청·재무국·도도부현에 접수된 대금업체 관련 민원 (민원 상담·조회) 건수

1) 내용별

<대금업체 관련 민원 건수 (내용별)>

(단위 : 건)

구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	계	계	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민원 접수 건수		49,482	49,635	44,928	35,461	8,738	7,847	6,760	6,498	29,843	5,611	5,609	4,755	5,520	21,495
	무등록업자와 관련된 사항	13,126	14,942	14,243	8,267	1,859	1,871	1,748	1,661	7,139	1,731	1,778	1,564	1,933	7,006
민원 내용	추심행위	2,223	2,060	1,850	716	145	114	106	89	454	101	107	80	97	385
	계약내용	882	723	622	269	57	57	35	34	183	40	67	31	40	178
	금리	1,570	1,353	636	392	71	64	29	26	190	33	39	32	27	131
	연금담보	93	60	41	29	3	1	1	1	6	0	5	1	3	9
	장부 공개	3,080	4,004	2,393	1,684	264	280	205	156	905	146	107	83	85	421
	과잉대부	91	53	24	31	2	5	3	2	12	5	1	4	5	15
	행정당국사칭, 등록업체사칭	298	404	501	188	13	16	19	27	75	15	13	7	23	58
	보증계약	272	127	120	77	9	23	4	2	38	7	12	5	7	31
	광고·권유(사칭 이외)	445	471	254	115	16	20	13	17	66	11	8	10	4	33
	기타	4,846	3,867	2,270	1,558	262	386	210	201	1,059	184	199	180	196	759
민원 계		13,800	13,122	8,711	5,059	842	966	625	555	2,988	542	558	433	487	2,020
상담·조회 내용	채무조정 등	9,552	7,635	6,139	2,781	619	602	473	544	2,238	452	463	420	444	1,779
	금리	837	592	714	439	223	204	112	135	674	75	68	61	74	278
	상담기관	1,475	1,100	950	790	208	150	118	117	593	79	78	89	87	333
	등록확인(무등록 의심)	5,445	9,507	11,972	9,467	2,541	2,512	2,391	2,055	9,499	2,005	2,081	1,790	2,162	8,038
	제도개정요청	596	148	87	146	29	39	34	13	115	8	7	13	30	58
	법령 등 해석	1,249	1,738	1,387	4,449	564	522	427	400	1,913	393	344	320	354	1,411
	기타	16,528	15,793	14,968	12,330	3,712	2,852	2,580	2,679	11,823	2,057	2,010	1,629	1,882	7,578
상담·조회 계		35,682	36,513	36,217	30,402	7,896	6,881	6,135	5,943	26,855	5,069	5,051	4,322	5,033	19,475

(주1) 2006년도의 경우 2006년 7월~2007년 3월의 건수(2006년 7월부터 법령 위반·부적절한 행위 등을 “민원”으로 그 밖의 사항을 “상담·조회”로 분류)

(주2) 건수의 경우 그 내용이 복수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요 내용으로 해서 1건으로 계산

2) 접수기관별

<대금업체 관련 민원 건수 (접수기관별)>

(단위 : 건)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금융 청	재무 국	도도 부현	계	금융 청	재무 국	도도 부현	계	금융 청	재무 국	도도 부현	계	금융 청	재무 국	도도 부현	계
민원 접수 건수		3,449	15,000	26,479	44,928	3,704	14,292	17,465	35,461	4,465	10,548	14,830	29,843	1,637	7,390	12,468	21,495
	무등록업자와 관련된 사항	572	4,669	9,002	14,243	362	2,299	5,606	8,267	363	1,571	5,205	7,139	334	1,234	5,438	7,006
민원 구분	추심행위	22	413	1,415	1,850	22	198	496	716	13	130	311	454	5	144	236	385
	계약내용	14	105	503	622	19	54	196	269	2	30	151	183	0	48	130	178
	금리	7	41	588	636	5	28	359	392	16	35	139	190	0	13	118	131
	연금담보	0	13	28	41	0	0	29	29	0	0	6	6	0	0	9	9
	장부 공개	4	1,388	1,001	2,393	15	1,182	487	1,684	7	548	350	905	3	207	211	421
	과잉대부	1	18	5	24	4	5	22	31	0	4	8	12	0	9	6	15
	행정당국사칭, 등록업체사칭	64	64	373	501	20	9	159	188	0	52	23	75	0	14	44	58
	보증계약	11	25	84	120	4	16	57	77	0	6	32	38	0	6	25	31
	광고·권유(사칭 이외)	86	28	140	254	6	11	98	115	0	4	62	66	0	6	27	33
	기타	107	521	1,642	2,270	32	457	1,069	1,558	268	318	473	1,059	32	306	421	759
민원 계		316	2,616	5,779	8,711	127	1,960	2,972	5,059	306	1,127	1,555	2,988	40	753	1,227	2,020
상 담 · 조 회 구 분	채무조정 등	429	955	4,755	6,139	84	395	2,302	2,781	38	176	2,024	2,238	27	34	1,718	1,779
	금리	176	88	450	714	101	73	265	439	270	142	262	674	90	44	144	278
	상담기관	81	179	690	950	327	90	373	790	186	98	309	593	29	116	188	333
	등록확인(무등록 의심)	492	4,677	6,803	11,972	308	3,474	5,685	9,467	211	4,031	5,257	9,499	165	2,860	5,013	8,038
	제도개정요청	74	7	6	87	122	13	11	146	52	20	43	115	19	36	3	58
	법령 등 해석	631	257	499	1,387	407	3,546	496	4,449	391	711	811	1,913	334	463	614	1,411
	기타	1,250	6,221	7,497	14,968	2,228	4,741	5,361	12,330	3,011	4,243	4,569	11,823	933	3,084	3,561	7,578
상담·조회 계		3,133	12,384	20,700	36,217	3,577	12,332	14,493	30,402	4,159	9,421	13,275	26,855	1,597	6,637	11,241	19,475

제 2 장 일본대금업협회 월차통계자료

【출처 : 일본대금업협회 월차통계자료】

1. 개요

1) 월차통계자료

월차통계자료로 다음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통계명칭	갱신기간	개요
회원사 현황	(지지난달말 실적)매월 15일~20일경	가입 회원사 수 추이 등
상담·민원·분쟁 현황	(지지난달말 실적)매월 15일~20일경	일본대금업협회에 설치된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에서 응대한 상담·민원·분쟁건수 및 그 내용
월차실태조사	(지지난달말 실적)매월 15일~20일경	특정 회원사의 협조 하에 작성하고 있는 대금업 시장 동향 조사

2) 월차실태조사

월차실태조사란 특정 회원사의 협조를 받아 동향을 월별로 조사·분석한 통계자료로 전체 회원사 대출 잔액의 80% 이상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업태	협조 회사	커버리지	대상사업자
소비자금융업태	17개사	90.5%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 소비자 대상 주택담보 대금업체 등
사업자금융업태	16개사	42.3%	·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 어음할인업체 등
크레딧업태 등	29개사	91.3%	· 신용카드회사 ·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전체	62개사	83.0%	-

(주1) 커버리지는란 2011년 4월 기준 각 대금업체의 직전 결산연도말 대출 잔액 대비 조사에 협력한 회원사의 대출 잔액 비율을 나타낸다.

(주2) 협조한 회원사 수는 2012년 3월말 기준 수치

2. 회원사 수

1) 회원사 수와 가입율

〈회원사 수와 가입율 추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2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월말 회원사 수	4,063	3,776	3,561	2,990	2,525	2,100	1,670	1,560	1,486	1,410
등록대금업체 수	10,108	9,115	7,564	6,178	4,909	4,057	2,828	2,589	2,455	2,350
협회 가입율	40.2%	41.4%	47.1%	48.4%	51.4%	51.8%	59.1%	60.3%	60.5%	60.0%

2) 재무국 · 도도부현별 회원사 수

〈재무국 · 도도부현별 회원사 수와 가입율 (2012년 3월)〉

	회원사수	등록업체수	비율
간토재무국	132	163	81.0%
도쿄도	267	691	38.6%
가나가와현	30	54	55.6%
사이타마현	22	36	61.1%
지바현	23	34	67.6%
아마나시현	10	10	100.0%
도치기현	8	9	88.9%
이바라기현	11	12	91.7%
군마현	10	16	62.5%
니가타현	5	10	50.0%
나가노현	3	8	37.5%
소계	389	880	44.2%
간토관내합계	521	1,043	50.0%
긴키재무국	40	41	97.6%
오사카부	110	203	54.2%
교토부	43	57	75.4%
효고현	37	73	50.7%
나라현	7	10	70.0%
와카야마현	7	13	53.8%
시가현	6	7	85.7%
소계	210	363	57.9%
긴기관내합계	250	404	61.9%
홋카이도재무국	5	6	83.3%
홋카이도	46	61	75.4%
소계	46	61	75.4%
홋카이도관내합계	51	67	76.1%
도후쿠재무국	25	27	92.6%
미야기현	33	39	84.6%
이와테현	8	10	80.0%
후쿠시마현	3	4	75.0%
아키타현	12	15	80.0%
아오모리현	7	16	43.8%
야마가타현	3	5	60.0%
소계	66	89	74.2%
도후쿠관내합계	91	116	78.4%
도카이재무국	24	25	96.0%
아이치현	43	83	51.8%
시즈오카현	34	42	81.0%
미에현	11	19	57.9%
기후현	8	12	66.7%
소계	96	156	61.5%
도카이관내합계	120	181	66.3%

	회원사수	등록업체수	비율
호쿠리쿠재무국	7	7	100.0%
도야마현	10	13	76.9%
이시카와현	6	13	46.2%
후쿠이현	7	10	70.0%
소계	23	36	63.9%
호쿠리쿠관내합계	30	43	69.8%
주오재무국	18	18	100.0%
히로시마현	32	42	76.2%
야마구치현	22	24	91.7%
오카야마현	20	35	57.1%
돗토리현	3	3	100.0%
시마네현	2	2	100.0%
소계	79	106	74.5%
주오관내합계	97	124	78.2%
시코쿠재무국	13	13	100.0%
가가와현	6	7	85.7%
도쿠시마현	6	8	75.0%
에히메현	12	26	46.2%
고치현	14	19	73.7%
소계	38	60	63.3%
시코쿠관내합계	51	73	69.9%
규슈재무국	11	11	100.0%
구마모토현	21	24	87.5%
오이타현	7	8	87.5%
미야자키현	5	15	33.3%
가고시마현	11	17	64.7%
소계	44	64	68.8%
규슈관내합계	55	75	73.3%
후쿠오카재무국	14	16	87.5%
후쿠오카현	57	112	50.9%
사가현	3	9	33.3%
나가사키현	22	25	88.0%
소계	82	146	56.2%
후쿠오카관내합계	96	162	59.3%
오키나와종합사무국	3	3	100.0%
오키나와현	45	59	76.3%
소계	45	59	76.3%
오키나와관내합계	48	62	77.4%
재무국 합계	292	330	88.5%
도도부현 합계	1,118	2,020	55.3%
총합계	1,410	2,350	60.0%

(주1) 계수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주2) “등록업체 수”는 금융청에서 공표한 수치이다.

<재무국 · 도도부현별 회원사 수 추이 (2010년 ~ 2012년, 매년 3월말 기준)>

	2010년	2011년	2012년
간토재무국	148	135	132
도쿄도	368	293	267
가나가와현	53	35	30
사이타마현	42	26	22
지바현	33	21	23
아마나시현	15	12	10
도치기현	8	10	8
이바라기현	17	14	11
군마현	13	12	10
니가타현	10	9	5
나가노현	8	4	3
소계	567	436	389
간토관내합계	715	571	521
긴키재무국	55	45	40
오사카부	161	123	110
교토부	59	44	43
효고현	73	45	37
나라현	8	7	7
와카야마현	11	8	7
시가현	19	11	6
소계	331	238	210
긴키관내합계	386	283	250
홋카이도재무국	7	6	5
홋카이도	77	54	46
소계	77	54	46
홋카이도관내합계	84	60	51
도후쿠재무국	29	26	25
미야기현	47	36	33
이와테현	13	9	8
후쿠시마현	7	3	3
아키타현	14	12	12
아오모리현	11	8	7
아마가타현	8	3	3
소계	100	71	66
도후쿠관내합계	129	97	91
도카이재무국	26	25	24
아이치현	67	48	43
시즈오카현	54	36	34
미에현	22	14	11
기후현	13	8	8
소계	156	106	96
도카이관내합계	182	131	120

	2010년	2011년	2012년
호쿠리쿠재무국	7	7	7
도야마현	21	13	10
이사카와현	9	7	6
후쿠이현	18	9	7
소계	48	29	23
호쿠리쿠관내합계	55	36	30
주오재무국	20	18	18
히로시마현	47	34	32
야마구치현	33	24	22
오카야마현	36	22	20
돗토리현	4	3	3
시마네현	3	2	2
소계	123	85	79
주오관내합계	143	103	97
시코쿠재무국	18	16	13
가가와현	14	6	6
도쿠시마현	14	9	6
에히메현	22	14	12
고치현	26	14	14
소계	76	43	38
시코쿠관내합계	94	59	51
규슈재무국	17	13	11
구마모토현	34	22	21
오이타현	19	9	7
미야자키현	6	5	5
가고시마현	24	12	11
소계	83	48	44
규슈관내합계	100	61	55
후쿠오카재무국	24	16	14
후쿠오카현	87	65	57
사가현	7	6	3
나가사키현	36	23	22
소계	130	94	82
후쿠오카관내합계	154	110	96
오кина와종합사무국	4	4	3
오кина와현	54	45	45
소계	54	45	45
오кина와관내합계	58	49	48
재무국 합계	355	311	292
도도부현 합계	1,745	1,249	1,118
총합계	2,100	1,560	1,410

3. 대출 잔액 · 대출건수

1) 업태별 대출 잔액 · 대출건수 추이

〈업태별 대출 잔액과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 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 비 자 금 융 업 태	2010년도	4,782,108	4,718,729	4,625,118	4,516,809	4,417,855	4,321,117	4,103,876	4,021,709	3,904,115	3,824,365	3,745,372	3,654,836
	2011년도	3,570,614	3,522,666	3,460,782	3,538,360	3,429,109	3,379,116	3,334,934	3,294,277	3,235,007	3,197,589	3,176,033	3,134,467
	전년동월대비	-25.3%	-25.3%	-25.2%	-21.7%	-22.4%	-21.8%	-18.7%	-18.1%	-17.1%	-16.4%	-15.2%	-14.2%
사 업 자 금 융 업 태	2010년도	983,274	982,225	967,207	946,221	937,447	912,463	911,578	918,382	941,303	935,214	923,627	896,667
	2011년도	794,786	791,032	795,335	785,666	780,483	761,644	767,572	766,120	768,078	764,229	757,121	753,216
	전년동월대비	-19.2%	-19.5%	-17.8%	-17.0%	-16.7%	-16.5%	-15.8%	-16.6%	-18.4%	-18.3%	-18.0%	-16.0%
기 타 금 융 업 태	2010년도	6,850,600	6,881,366	6,747,145	6,652,301	6,555,037	6,423,775	6,372,610	6,203,266	6,105,880	5,990,556	5,916,123	5,804,654
	2011년도	5,651,166	5,590,034	5,517,457	5,322,939	5,272,748	5,248,080	5,144,026	5,044,100	5,010,786	4,893,866	4,784,391	4,774,792
	전년동월대비	-17.5%	-18.8%	-18.2%	-20.0%	-19.6%	-18.3%	-19.3%	-18.7%	-17.9%	-18.3%	-19.1%	-17.7%
전 체	2010년도	12,615,982	12,582,320	12,339,470	12,115,331	11,910,339	11,657,355	11,388,064	11,143,357	10,951,298	10,750,135	10,585,122	10,356,157
	2011년도	10,016,566	9,903,731	9,773,574	9,646,965	9,482,340	9,388,840	9,246,532	9,104,496	9,013,870	8,855,684	8,717,546	8,662,475
	전년동월대비	-20.6%	-21.3%	-20.8%	-20.4%	-20.4%	-19.5%	-18.8%	-18.3%	-17.7%	-17.6%	-17.6%	-16.4%
업 태 별 점 유 율	2010년	소비자금융업태	37.9%	37.5%	37.5%	37.3%	37.1%	37.1%	36.0%	36.1%	35.6%	35.6%	35.3%
		사업자금융업태	7.8%	7.8%	7.8%	7.8%	7.9%	7.8%	8.0%	8.2%	8.6%	8.7%	8.7%
		크레딧업태 등	54.3%	54.7%	54.7%	54.9%	55.0%	55.1%	56.0%	55.7%	55.8%	55.7%	56.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년	소비자금융업태	35.6%	35.6%	35.4%	36.7%	36.2%	36.0%	36.1%	36.2%	35.9%	36.1%	36.2%
		사업자금융업태	7.9%	8.0%	8.1%	8.1%	8.2%	8.1%	8.3%	8.4%	8.5%	8.6%	8.7%
		크레딧업태 등	56.5%	56.4%	56.5%	55.2%	55.6%	55.9%	55.6%	55.4%	55.6%	55.3%	5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업태별 대출 건수 추이〉

(단위 : 건)

조사 대상 회원사 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 비 자 금 융 업 태	2010년도	7,736,793	7,657,283	7,541,133	7,414,025	7,303,104	7,181,752	7,027,699	6,929,482	6,766,034	6,647,395	6,550,308	6,417,201
	2011년도	6,278,713	6,213,307	6,113,609	6,259,761	6,174,907	6,119,460	6,024,898	5,956,120	5,845,797	5,770,582	5,730,408	5,655,519
	전년동월대비	-18.8%	-18.9%	-18.9%	-15.6%	-15.4%	-14.8%	-14.3%	-14.0%	-13.6%	-13.2%	-12.5%	-11.9%
사 업 자 금 융 업 태	2010년도	170,889	166,389	161,976	158,559	153,899	151,049	150,849	147,654	151,363	148,372	143,228	137,985
	2011년도	157,490	154,947	162,138	159,443	155,224	153,011	151,046	142,801	140,627	139,017	135,763	132,267
	전년동월대비	-7.8%	-6.9%	0.1%	0.6%	0.9%	1.3%	0.1%	-3.3%	-7.1%	-6.3%	-5.2%	-4.1%
기 타 금 융 업 태	2010년도	104,122,016	104,018,994	103,938,579	103,084,914	102,931,310	98,920,485	96,586,217	96,433,871	94,998,912	95,867,025	96,204,912	96,179,841
	2011년도	102,808,485	102,521,615	102,411,795	102,073,222	102,011,315	101,561,525	101,322,474	100,883,753	100,206,540	99,981,579	99,603,622	99,440,909
	전년동월대비	-1.3%	-1.4%	-1.5%	-1.0%	-0.9%	2.7%	4.9%	4.6%	5.5%	4.3%	3.5%	3.4%
전 체	2010년도	112,029,699	111,842,666	111,641,688	110,657,498	110,388,313	106,253,286	103,764,765	103,511,008	101,916,309	102,662,792	102,898,448	102,735,027
	2011년도	109,244,688	108,889,869	108,687,542	108,492,426	108,341,446	107,833,996	107,498,418	106,982,674	106,192,964	105,891,178	105,469,793	105,228,695
	전년동월대비	-2.5%	-2.6%	-2.6%	-2.0%	-1.9%	1.5%	3.6%	3.4%	4.2%	3.1%	2.5%	2.4%

(주) 크레딧업태 등의 대출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소비자 대상 대출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매자영업 업태	2010년도	4,632,261	4,570,654	4,479,234	4,372,299	4,272,895	4,184,135	4,006,899	3,925,123	3,808,128	3,726,931	3,646,401	3,554,377
	2011년도	3,471,039	3,421,514	3,359,164	3,370,988	3,318,186	3,270,443	3,226,348	3,187,550	3,130,576	3,092,805	3,071,216	3,030,740
	전년동월대비	-25.1%	-25.1%	-25.0%	-22.9%	-22.3%	-21.8%	-19.5%	-18.8%	-17.8%	-17.0%	-15.8%	-14.7%
상업자영업 업태	2010년도	174,639	175,533	174,878	173,803	167,580	170,087	169,711	168,900	168,240	167,754	166,957	166,111
	2011년도	164,731	164,013	162,874	162,225	161,444	161,535	161,228	160,758	160,100	160,127	159,789	160,187
	전년동월대비	-5.7%	-6.6%	-6.9%	-6.7%	-3.7%	-5.0%	-5.0%	-4.8%	-4.8%	-4.5%	-4.3%	-3.6%
크레딧비 업태	2010년도	5,294,642	5,290,914	5,205,941	5,098,117	5,008,087	4,884,750	4,726,046	4,669,337	4,553,011	4,456,719	4,372,343	4,245,974
	2011년도	4,110,899	4,066,083	3,987,552	3,813,414	3,765,328	3,704,832	3,652,474	3,574,189	3,484,427	3,410,072	3,350,258	3,275,644
	전년동월대비	-22.4%	-23.1%	-23.4%	-25.2%	-24.8%	-24.2%	-22.7%	-23.5%	-23.5%	-23.5%	-23.4%	-22.9%
전체	2010년도	10,101,542	10,037,101	9,860,054	9,644,219	9,448,562	9,238,973	8,902,656	8,763,360	8,529,378	8,351,403	8,185,700	7,966,462
	2011년도	7,746,669	7,651,609	7,509,590	7,346,628	7,244,958	7,136,810	7,040,050	6,922,498	6,775,103	6,663,004	6,581,263	6,466,572
	전년동월대비	-23.3%	-23.8%	-23.8%	-23.8%	-23.3%	-22.8%	-20.9%	-21.0%	-20.6%	-20.2%	-19.6%	-18.8%

<업태별 대출 건수 추이>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매자영업 업태	2010년도	7,706,468	7,627,091	7,511,143	7,384,473	7,273,752	7,152,821	6,999,584	6,901,603	6,738,324	6,619,526	6,522,673	6,389,786
	2011년도	6,251,523	6,186,263	6,085,770	6,224,975	6,140,240	6,084,960	5,991,461	5,922,741	5,813,445	5,738,143	5,697,944	5,626,088
	전년동월대비	-18.9%	-18.9%	-19.0%	-15.7%	-15.6%	-14.9%	-14.4%	-14.2%	-13.7%	-13.3%	-12.6%	-12.0%
상업자영업 업태	2010년도	111,550	110,016	106,849	103,854	98,964	96,275	96,495	93,528	90,451	87,698	83,369	81,097
	2011년도	77,697	75,200	72,386	69,699	65,426	63,176	60,977	52,756	50,560	49,047	46,557	45,332
	전년동월대비	-30.3%	-31.6%	-32.3%	-32.9%	-33.9%	-34.4%	-36.8%	-43.6%	-44.1%	-44.1%	-44.2%	-44.1%
크레딧비 업태	2010년도	103,894,687	103,830,973	103,753,690	102,905,497	102,763,181	98,748,415	96,422,407	96,274,100	94,826,022	95,694,279	96,044,001	96,020,462
	2011년도	102,621,348	102,335,097	102,227,701	101,898,066	101,828,909	101,381,371	101,150,891	100,714,721	100,037,619	99,813,990	99,464,813	99,302,515
	전년동월대비	-1.2%	-1.4%	-1.5%	-1.0%	-0.9%	2.7%	4.9%	4.6%	5.5%	4.3%	3.6%	3.4%
전체	2010년도	111,712,705	111,568,080	111,371,682	110,393,824	110,135,897	105,997,512	103,518,486	103,269,231	101,654,797	102,401,503	102,650,043	102,491,344
	2011년도	108,950,568	108,596,560	108,385,857	108,192,740	108,034,575	107,529,507	107,203,329	106,690,218	105,901,624	105,601,180	105,209,314	104,973,935
	전년동월대비	-2.5%	-2.7%	-2.7%	-2.0%	-1.9%	1.4%	3.6%	3.3%	4.2%	3.1%	2.5%	2.4%

(주) 크레딧업태 등의 대출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대출종류별 대출 잔액, 대출건수, 1건당 대출 잔액 추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주택대출(일반주택)	마인파인주택 (K-포인트주택)	2010년도	8,746,712	8,689,094	8,516,432	8,311,207	8,130,207	7,924,552	7,633,662	7,499,956	7,276,563	7,108,818	6,957,309	6,756,502
		2011년도	6,551,023	6,461,505	6,329,043	6,168,159	6,072,889	5,974,266	5,884,340	5,771,474	5,627,952	5,528,387	5,450,748	5,352,200
		전년동월대비	-25.1%	-25.6%	-25.7%	-25.8%	-25.3%	-24.6%	-22.9%	-23.0%	-22.7%	-22.2%	-21.7%	-20.8%
	아인파인주택 (K-포인트주택)	2010년도	468,662	463,384	456,422	449,166	440,369	432,679	388,272	382,186	371,703	370,252	364,200	350,687
		2011년도	344,786	339,688	332,177	333,129	327,900	323,178	316,297	311,984	307,543	302,071	298,554	291,193
		전년동월대비	-26.4%	-26.7%	-27.2%	-25.8%	-25.5%	-25.3%	-18.5%	-18.4%	-17.3%	-18.4%	-18.0%	-17.0%
	서포인트주택	2010년도	886,169	884,624	887,201	883,846	877,986	881,742	880,722	881,219	881,112	872,333	864,191	859,273
		2011년도	850,860	850,416	848,370	845,339	844,170	839,366	839,413	839,039	839,609	832,547	831,961	823,179
		전년동월대비	-4.0%	-3.9%	-4.4%	-4.4%	-3.9%	-4.8%	-4.7%	-4.8%	-4.7%	-4.6%	-3.7%	-4.2%
주택대출(신주)	마인파인주택 (K-포인트주택)	2010년도	111,528,498	111,384,662	111,189,281	110,212,520	109,956,067	105,818,832	103,355,378	103,107,638	101,493,927	102,242,136	102,492,156	102,336,244
		2011년도	108,797,756	108,444,290	108,235,248	108,042,698	107,844,917	107,381,870	107,056,355	106,544,575	105,756,589	105,487,619	105,066,451	104,836,215
		전년동월대비	-2.4%	-2.6%	-2.7%	-2.0%	-1.9%	1.5%	3.6%	3.3%	4.2%	3.2%	2.5%	2.4%
	아인파인주택 (K-포인트주택)	2010년도	112,006	111,143	109,879	108,657	107,204	105,899	90,422	88,831	88,198	86,747	86,145	83,594
		2011년도	82,022	81,475	79,887	79,210	78,619	77,071	76,508	75,057	74,508	73,008	72,680	69,180
		전년동월대비	-26.8%	-26.7%	-27.3%	-27.1%	-26.7%	-27.2%	-15.4%	-15.5%	-15.5%	-15.8%	-15.6%	-17.2%
	서포인트주택	2010년도	72,201	72,275	72,522	72,647	72,626	72,781	72,687	72,762	72,671	72,620	71,742	71,506
		2011년도	70,791	70,795	70,722	70,832	71,039	70,566	70,466	70,585	70,526	70,236	70,183	68,540
		전년동월대비	-2.0%	-2.0%	-2.5%	-2.5%	-2.2%	-3.0%	-3.1%	-3.0%	-3.0%	-3.3%	-2.2%	-4.1%
1건당 주택대출(신주)	마인파인주택 (K-포인트주택)	2010년도	78	78	77	75	74	75	74	73	72	70	68	66
		2011년도	60	60	58	57	56	56	55	54	53	52	52	51
		전년동월대비	-23.1%	-23.1%	-24.7%	-24.0%	-24.3%	-25.3%	-25.7%	-26.0%	-26.4%	-24.6%	-23.6%	-22.7%
	아인파인주택 (K-포인트주택)	2010년도	4,184	4,169	4,154	4,134	4,108	4,086	4,294	4,302	4,214	4,268	4,228	4,195
		2011년도	4,204	4,169	4,158	4,206	4,171	4,193	4,134	4,157	4,128	4,137	4,108	4,209
		전년동월대비	0.5%	0.0%	0.1%	1.7%	1.5%	2.6%	-3.7%	-3.4%	-2.0%	-3.1%	-2.8%	0.3%
	서포인트주택	2010년도	12,274	12,240	12,233	12,166	12,089	12,115	12,117	12,111	12,125	12,012	12,046	12,017
		2011년도	12,019	12,012	11,996	11,934	11,883	11,895	11,912	11,887	11,905	11,854	11,854	12,010
		전년동월대비	-2.1%	-1.9%	-1.9%	-1.9%	-1.7%	-1.8%	-1.7%	-1.8%	-1.8%	-1.3%	-1.6%	-0.1%

(주) 크레디트업태 등의 대출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 대상 대출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상공인 업태	2010년도	149,847	148,075	145,884	144,510	144,960	136,981	96,977	96,586	95,987	97,434	98,971	100,459
	2011년도	99,575	101,152	101,618	167,372	110,922	108,673	108,586	106,726	104,430	104,784	104,817	103,727
	전년동월대비	-33.5%	-31.7%	-30.3%	15.8%	-23.5%	-20.7%	12.0%	10.5%	8.8%	7.5%	5.9%	3.3%
상업 업태	2010년도	808,635	806,692	792,328	772,417	769,867	742,376	741,866	749,482	773,063	767,460	756,670	730,556
	2011년도	630,055	627,019	632,461	623,441	619,040	600,109	606,345	605,362	607,978	604,102	597,333	593,029
	전년동월대비	-22.1%	-22.3%	-20.2%	-19.3%	-19.6%	-19.2%	-18.3%	-19.2%	-21.4%	-21.3%	-21.1%	-18.8%
크레딧 업태	2010년도	1,555,958	1,590,452	1,541,204	1,554,184	1,546,949	1,539,025	1,646,565	1,533,928	1,552,870	1,533,837	1,543,780	1,558,680
	2011년도	1,540,267	1,523,951	1,529,905	1,509,525	1,507,419	1,543,248	1,491,552	1,469,910	1,526,359	1,483,795	1,434,134	1,499,148
	전년동월대비	-1.0%	-4.2%	-0.7%	-2.9%	-2.6%	0.3%	-9.4%	-4.2%	-1.7%	-3.3%	-7.1%	-3.8%
전체	2010년도	2,514,440	2,545,219	2,479,416	2,471,112	2,461,777	2,418,382	2,485,408	2,379,997	2,421,919	2,398,732	2,399,422	2,389,695
	2011년도	2,269,897	2,252,122	2,263,984	2,300,338	2,237,381	2,252,031	2,206,482	2,181,998	2,238,767	2,192,680	2,136,283	2,195,903
	전년동월대비	-9.7%	-11.5%	-8.7%	-6.9%	-9.1%	-6.9%	-11.2%	-8.3%	-7.6%	-8.6%	-11.0%	-8.1%

<업태별 대출 건수 추이>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상공인 업태	2010년도	30,325	30,192	29,990	29,552	29,352	28,931	28,115	27,879	27,710	27,869	27,635	27,415
	2011년도	27,190	27,044	27,839	34,786	34,667	34,500	33,437	33,379	32,352	32,439	32,464	29,431
	전년동월대비	-10.3%	-10.4%	-7.2%	17.7%	18.1%	19.2%	18.9%	19.7%	16.8%	16.4%	17.5%	7.4%
상업 업태	2010년도	59,340	56,373	55,126	54,705	54,935	54,774	54,354	54,126	60,912	60,674	59,859	56,888
	2011년도	79,793	79,747	89,752	89,744	89,798	89,835	90,069	90,045	90,067	89,970	89,206	86,935
	전년동월대비	34.5%	41.5%	62.8%	64.1%	63.5%	64.0%	65.7%	66.4%	47.9%	48.3%	49.0%	52.8%
크레딧 업태	2010년도	227,329	188,020	184,889	179,417	168,129	172,070	163,810	159,772	172,890	172,746	160,910	159,379
	2011년도	187,137	186,518	184,095	175,156	182,406	180,154	171,583	169,033	168,921	167,589	138,809	138,395
	전년동월대비	-17.7%	-0.8%	-0.4%	-2.4%	8.5%	4.7%	4.7%	5.8%	-2.3%	-3.0%	-13.7%	-13.2%
전체	2010년도	316,994	274,585	270,005	263,674	252,416	255,774	246,279	241,777	261,513	261,289	248,405	243,683
	2011년도	294,120	293,309	301,686	299,686	306,871	304,489	295,089	292,457	291,340	289,998	260,479	254,761
	전년동월대비	-7.2%	6.8%	11.7%	13.7%	21.6%	19.0%	19.8%	21.0%	11.4%	11.0%	4.9%	4.5%

(주) 크레딧업태 등의 대출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대출종류별 대출 잔액, 대출건수, 1건당 대출 잔액 추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주택대출(주택)	마인파인(주) (K-핀테크)	2010년도	373,138	366,088	383,042	392,673	390,205	396,405	390,166	388,878	416,352	416,017	411,314	392,312
		2011년도	281,928	278,754	304,519	363,935	300,719	290,487	297,595	300,449	292,466	290,653	266,282	249,300
		전년동월대비	-24.4%	-23.9%	-20.5%	-7.3%	-22.9%	-26.7%	-23.7%	-22.7%	-29.8%	-30.1%	-35.3%	-36.4%
	아인파인(주) (K-핀테크)	2010년도	836,766	833,585	805,090	770,219	766,105	725,205	685,954	689,656	691,686	684,580	673,613	666,345
		2011년도	674,336	672,446	653,645	646,435	649,947	636,211	628,933	616,078	625,312	622,803	604,783	617,670
		전년동월대비	-19.4%	-19.3%	-18.8%	-16.1%	-15.2%	-12.3%	-8.3%	-10.7%	-9.6%	-9.0%	-10.2%	-7.3%
	기타 금융기관	2010년도	1,304,536	1,345,547	1,291,284	1,308,219	1,305,468	1,296,772	1,409,288	1,301,462	1,313,882	1,298,134	1,314,494	1,331,039
		2011년도	1,313,633	1,300,922	1,305,821	1,289,968	1,286,716	1,325,332	1,279,954	1,265,471	1,320,989	1,279,223	1,265,218	1,328,904
		전년동월대비	0.7%	-3.3%	1.1%	-1.4%	-1.4%	2.2%	-9.2%	-2.8%	0.5%	-1.5%	-3.7%	-0.2%
주택대출(기타)	마인파인(주) (K-핀테크)	2010년도	285,057	243,331	239,011	232,818	222,093	226,174	218,059	213,927	234,091	239,407	221,933	218,182
		2011년도	269,176	268,755	277,676	276,113	283,725	281,825	272,670	270,249	269,810	270,080	239,460	234,263
		전년동월대비	-5.6%	10.4%	16.2%	18.6%	27.8%	24.6%	25.0%	26.3%	15.3%	12.8%	7.9%	7.4%
	아인파인(주) (K-핀테크)	2010년도	11,127	10,997	11,369	11,833	11,938	11,765	10,954	11,072	11,186	11,301	11,282	10,896
		2011년도	10,994	11,190	11,161	11,189	11,167	11,054	11,236	11,407	11,091	11,209	11,310	11,226
		전년동월대비	-1.2%	1.8%	-1.8%	-5.4%	-6.5%	-6.0%	2.6%	3.0%	-0.8%	-0.8%	0.2%	3.0%
	기타 금융기관	2010년도	20,809	20,257	19,625	19,023	18,386	17,835	17,267	16,777	16,235	15,784	15,190	14,604
		2011년도	13,950	13,364	12,849	12,384	11,979	11,610	11,183	10,801	10,439	10,053	9,709	9,272
		전년동월대비	-33.0%	-34.0%	-34.5%	-34.9%	-34.8%	-34.9%	-35.2%	-35.6%	-35.7%	-36.3%	-36.1%	-36.5%
1건당 주택대출(주택)	마인파인(주) (K-핀테크)	2010년도	1,309	1,504	1,603	1,687	1,757	1,753	1,789	1,818	1,779	1,776	1,853	1,798
		2011년도	1,047	1,037	1,097	1,318	1,060	1,031	1,091	1,112	1,084	1,082	1,112	1,064
		전년동월대비	-20.0%	-31.1%	-31.6%	-21.9%	-39.7%	-41.2%	-39.0%	-38.8%	-39.1%	-39.1%	-40.0%	-40.8%
	아인파인(주) (K-핀테크)	2010년도	75,202	75,803	70,812	65,091	64,176	61,639	62,623	62,286	61,834	60,579	59,707	61,154
		2011년도	61,337	60,093	58,565	57,774	58,202	57,555	55,975	54,009	56,380	55,563	53,473	55,026
		전년동월대비	-18.4%	-20.7%	-17.3%	-11.2%	-9.3%	-6.6%	-10.6%	-13.3%	-8.8%	-8.3%	-10.4%	-10.0%
	기타 금융기관	2010년도	62,690	66,424	65,797	68,770	71,004	72,710	81,619	77,572	80,928	82,243	86,537	91,143
		2011년도	94,168	97,348	101,632	104,164	107,414	114,154	114,455	117,162	126,544	127,248	130,314	143,324
		전년동월대비	50.2%	46.6%	54.5%	51.5%	51.3%	57.0%	40.2%	51.0%	56.4%	54.7%	50.6%	57.3%

(주1) “기타 영업대출”이란 대금업법상 “대출” 중 관계회사간 대출과 같이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주2) “대출건수”에는 크레디트업태의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4. 월간대출금액 · 계약건수

1) 소비자 대상 대출

<업태별 월간대출금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매상업 업태	2010년도	127,605	127,523	98,255	86,619	90,021	95,592	85,485	94,295	101,228	85,142	89,137	113,526
	2011년도	89,807	97,489	97,629	97,095	103,524	117,620	111,624	107,140	107,264	93,427	107,971	148,921
	전년동월대비	-29.6%	-23.6%	-0.6%	12.1%	15.0%	23.0%	30.6%	13.6%	6.0%	9.7%	21.1%	31.2%
상업상업 업태	2010년도	2,639	2,238	3,546	2,311	1,889	2,278	1,932	1,940	2,551	2,083	2,348	2,038
	2011년도	1,404	1,489	1,807	1,709	1,996	2,390	2,132	2,211	2,388	1,880	2,199	2,261
	전년동월대비	-46.8%	-33.5%	-49.0%	-26.0%	5.7%	4.9%	10.4%	14.0%	-6.4%	-9.7%	-6.4%	11.0%
기타 업태	2010년도	306,954	325,617	274,647	219,243	203,455	209,412	177,058	178,949	150,090	148,203	145,436	167,249
	2011년도	153,836	169,763	153,235	142,764	156,741	169,187	160,952	167,135	138,650	142,487	147,299	164,577
	전년동월대비	-49.9%	-47.9%	-44.2%	-34.9%	-23.0%	-19.2%	-9.1%	-6.6%	-7.6%	-3.9%	0.6%	-1.6%
전체	2010년도	437,199	455,378	376,448	308,173	295,365	307,283	264,476	275,184	253,868	235,428	237,920	282,813
	2011년도	245,047	268,741	252,671	241,568	262,261	289,197	274,708	276,486	248,302	237,793	257,469	315,759
	전년동월대비	-44.0%	-41.0%	-32.9%	-21.6%	-11.2%	-5.9%	3.9%	0.5%	-2.2%	1.0%	8.2%	11.6%

<업태별 월간 계약건수 추이>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매상업 업태	2010년도	50,398	54,019	35,689	31,716	37,906	42,880	40,165	41,017	32,588	36,751	40,997	47,016
	2011년도	47,977	55,641	46,424	43,962	49,364	53,095	41,333	41,798	34,475	39,701	43,180	51,173
	전년동월대비	-4.8%	3.0%	30.1%	38.6%	30.2%	23.8%	2.9%	1.9%	5.8%	8.0%	5.3%	8.8%
상업상업 업태	2010년도	310	683	370	194	200	257	228	181	212	164	207	192
	2011년도	163	146	162	143	229	200	199	175	192	157	221	197
	전년동월대비	-47.4%	-78.6%	-56.2%	-26.3%	14.5%	-22.2%	-12.7%	-3.3%	-9.4%	-4.1%	6.8%	2.5%
기타 업태	2010년도	1,030,340	927,136	812,750	778,775	731,113	712,078	735,462	729,948	741,215	711,871	654,989	735,106
	2011년도	709,250	751,494	723,447	709,726	689,706	687,248	705,601	736,919	740,442	727,744	715,253	835,605
	전년동월대비	-31.2%	-18.9%	-11.0%	-8.9%	-5.7%	-3.5%	-4.1%	1.0%	-0.1%	2.2%	9.2%	13.7%
전체	2010년도	1,081,048	981,838	848,808	810,685	769,219	755,216	775,855	771,147	774,015	748,786	696,193	782,314
	2011년도	757,390	807,281	770,033	753,831	739,299	740,543	747,133	778,892	775,109	767,602	758,654	886,975
	전년동월대비	-29.9%	-17.8%	-9.3%	-7.0%	-3.9%	-1.9%	-3.7%	1.0%	0.1%	2.5%	9.0%	13.4%

(주) 크레디트업태 등의 계약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승인율 추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2010년도		28.1%	27.6%	24.9%	25.5%	27.5%	28.6%	29.1%	29.4%	29.0%	29.6%	32.2%	30.5%
2011년도		32.1%	32.3%	33.1%	32.2%	32.4%	32.2%	32.8%	33.1%	32.5%	32.5%	33.4%	33.5%
전년동월대비		4.0%	4.8%	8.2%	6.8%	4.9%	3.6%	3.7%	3.7%	3.5%	3.0%	1.1%	3.0%

2) 사업자 대상 대출

〈업태별 월간대출금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비 자금 융 업태	2010년도	5,145	4,558	4,771	4,600	4,782	7,035	5,615	6,106	7,463	6,223	6,169	9,498
	2011년도	4,694	6,938	7,370	7,162	4,157	7,249	6,519	5,172	8,284	6,062	6,586	11,277
	전년동월대비	-8.8%	52.2%	54.5%	55.7%	-13.1%	3.0%	16.1%	-15.3%	11.0%	-2.6%	6.7%	18.7%
사업 자금 융 업태	2010년도	21,936	25,753	22,225	29,782	25,480	22,997	23,182	29,450	40,142	30,503	28,802	42,643
	2011년도	31,514	27,241	25,544	22,562	23,634	19,335	16,462	20,060	31,357	22,330	23,800	47,994
	전년동월대비	43.7%	5.8%	14.9%	-24.2%	-7.2%	-15.9%	-29.0%	-31.9%	-21.9%	-26.8%	-17.4%	12.5%
크레 디트 업태 등	2010년도	122,399	145,666	157,962	143,465	161,477	141,687	309,103	113,179	218,642	144,556	248,117	254,958
	2011년도	174,139	189,437	260,335	196,813	159,741	259,768	198,130	178,714	275,901	191,275	178,892	314,328
	전년동월대비	42.3%	30.0%	64.8%	37.2%	-1.1%	83.3%	-35.9%	57.9%	26.2%	32.3%	-27.9%	23.3%
전체	2010년도	149,480	175,977	184,959	177,848	191,739	171,718	337,900	148,736	266,248	181,283	283,089	307,100
	2011년도	210,346	223,616	293,249	226,537	187,532	286,352	221,112	203,946	315,542	219,667	209,278	373,599
	전년동월대비	40.7%	27.1%	58.5%	27.4%	-2.2%	66.8%	-34.6%	37.1%	18.5%	21.2%	-26.1%	21.7%

〈업태별 월간 계약건수 추이〉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비 자금 융 업태	2010년도	127	152	178	164	159	199	175	198	210	186	171	245
	2011년도	185	226	239	259	219	253	281	246	292	241	284	291
	전년동월대비	45.7%	48.7%	34.3%	57.9%	37.7%	27.1%	60.6%	24.2%	39.0%	29.6%	66.1%	18.8%
사업 자금 융 업태	2010년도	1,071	910	1,135	1,292	1,126	1,092	1,014	1,186	1,328	948	1,185	1,329
	2011년도	1,172	1,137	1,320	1,216	1,210	1,177	1,097	1,119	1,376	920	1,114	1,102
	전년동월대비	9.4%	24.9%	16.3%	-5.9%	7.5%	7.8%	8.2%	-5.6%	3.6%	-3.0%	-6.0%	-17.1%
크레 디트 업태 등	2010년도	323	365	817	1,104	950	1,016	766	898	1,098	619	867	1,135
	2011년도	747	865	947	1,057	845	1,025	940	871	1,137	653	1,034	1,090
	전년동월대비	131.3%	137.0%	15.9%	-4.3%	-11.1%	0.9%	22.7%	-3.0%	3.6%	5.5%	19.3%	-3.9%
전체	2010년도	1,521	1,427	2,131	2,560	2,235	2,307	1,955	2,282	2,636	1,753	2,223	2,709
	2011년도	2,104	2,228	2,506	2,532	2,274	2,455	2,318	2,236	2,805	1,814	2,432	2,483
	전년동월대비	38.3%	56.1%	17.6%	-1.1%	1.7%	6.4%	18.6%	-2.0%	6.4%	3.5%	9.4%	-8.3%

(주) 크레디트업태 등의 계약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5. 평균약정금리

<대출종류별 평균 약정 금리의 장기적 추이>

2000년대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9개사	68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무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9.29%	19.20%	18.96%	18.85%	18.79%	18.68%	18.64%	18.56%	18.47%	18.35%	18.34%	18.18%
	유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2.29%	12.21%	12.17%	12.14%	12.10%	12.06%	12.05%	11.98%	11.96%	11.91%	11.85%	11.74%
	주택담보대출	3.14%	3.17%	3.01%	3.01%	3.01%	3.00%	3.00%	2.99%	2.95%	2.98%	2.95%	2.90%
	전체	18.16%	18.08%	17.83%	17.72%	17.65%	17.53%	17.49%	17.39%	17.29%	17.17%	17.14%	17.04%

2010년대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9개사	68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무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8.14%	18.05%	17.70%	17.63%	17.59%	17.31%	17.00%	16.93%	16.86%	16.78%	16.73%	16.66%
	유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1.68%	11.62%	12.42%	12.39%	12.38%	12.38%	9.58%	9.56%	9.53%	9.51%	9.49%	9.48%
	주택담보대출	2.90%	2.90%	2.89%	2.88%	2.89%	2.88%	2.89%	2.88%	2.85%	2.85%	2.84%	2.85%
	전체	16.98%	16.88%	16.62%	16.52%	16.47%	16.13%	15.73%	15.64%	15.54%	15.46%	15.40%	15.31%

2011년대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9개사	68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67개사
	무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6.53%	16.47%	16.43%	16.33%	16.25%	16.21%	16.15%	16.09%	16.07%	16.00%	15.97%	15.90%
	유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9.44%	9.45%	9.44%	9.36%	9.45%	9.45%	9.35%	9.30%	9.28%	9.29%	9.25%	9.14%
	주택담보대출	2.86%	2.87%	2.89%	2.89%	2.89%	2.89%	2.89%	2.89%	2.88%	2.88%	2.87%	2.86%
	전체	15.19%	15.12%	15.07%	14.93%	14.85%	14.80%	14.72%	14.64%	14.59%	14.51%	14.46%	14.38%

6. 점포수

〈업태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소방안전관리업	유이점포수	2010년도	292	291	288	233	234	216	165	165	165	163	160	160
		2011년도	164	165	165	165	164	163	163	163	163	163	163	161
		전년동월대비	-43.8%	-43.3%	-42.7%	-29.2%	-29.9%	-24.5%	-1.2%	-1.2%	-1.2%	0.0%	1.9%	0.6%
	무이점포수	2010년도	6,022	5,938	4,901	4,988	4,966	4,811	4,768	4,732	4,677	4,571	4,446	4,413
		2011년도	4,378	4,332	4,283	4,177	4,133	4,100	4,098	4,105	4,079	4,072	4,030	4,024
		전년동월대비	-27.3%	-27.0%	-12.6%	-16.3%	-16.8%	-14.8%	-14.1%	-13.3%	-12.8%	-10.9%	-9.4%	-8.8%
	합계	2010년도	6,314	6,229	5,189	5,221	5,200	5,027	4,933	4,897	4,842	4,734	4,606	4,573
		2011년도	4,542	4,497	4,448	4,342	4,297	4,263	4,261	4,268	4,242	4,235	4,193	4,185
		전년동월대비	-28.1%	-27.8%	-14.3%	-16.8%	-17.4%	-15.2%	-13.6%	-12.8%	-12.4%	-10.5%	-9.0%	-8.5%
사설화장품판매업	유이점포수	2010년도	130	135	134	134	130	130	131	128	128	1,165	1,161	1,104
		2011년도	126	126	126	130	130	130	128	128	128	1,034	1,031	1,029
		전년동월대비	-3.1%	-6.7%	-6.0%	-3.0%	0.0%	0.0%	-2.3%	0.0%	0.0%	-11.2%	-11.2%	-6.8%
	무이점포수	201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2011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전년동월대비	-	-	-	-	-	-	-	-	-	-	-	-
	합계	2010년도	130	135	134	134	130	130	131	128	128	128	127	127
		2011년도	126	126	126	130	130	130	128	128	128	128	127	130
		전년동월대비	-3.1%	-6.7%	-6.0%	-3.0%	0.0%	0.0%	-2.3%	0.0%	0.0%	0.0%	0.0%	2.4%
그린디베인업 및	유이점포수	2010년도	945	941	922	921	915	912	901	876	874	874	1,241	1,190
		2011년도	814	763	766	769	767	755	744	747	747	1,123	1,123	1,136
		전년동월대비	-13.9%	-18.9%	-16.9%	-16.5%	-16.2%	-17.2%	-17.4%	-14.7%	-14.5%	-9.1%	-9.5%	-4.5%
	무이점포수	2010년도	374	362	361	362	361	364	364	365	367	362	367	373
		2011년도	376	380	380	380	379	376	377	378	378	380	382	398
		전년동월대비	0.5%	5.0%	5.3%	5.0%	5.0%	3.3%	3.6%	3.6%	3.0%	5.0%	4.1%	6.7%
	합계	2010년도	1,319	1,303	1,283	1,283	1,276	1,276	1,265	1,241	1,241	1,236	1,241	1,190
		2011년도	1,190	1,143	1,146	1,149	1,146	1,131	1,121	1,125	1,125	1,123	1,123	1,136
		전년동월대비	-9.8%	-12.3%	-10.7%	-10.4%	-10.2%	-11.4%	-11.4%	-9.3%	-9.3%	-9.1%	-9.5%	-4.5%
전체	유이점포수	2010년도	1,367	1,367	1,344	1,288	1,279	1,258	1,197	1,169	1,167	1,165	1,161	1,104
		2011년도	1,104	1,054	1,057	1,064	1,061	1,048	1,035	1,038	1,038	1,034	1,031	1,029
		전년동월대비	-19.2%	-22.9%	-21.4%	-17.4%	-17.0%	-16.7%	-13.5%	-11.2%	-11.1%	-11.2%	-11.2%	-6.8%
	무이점포수	2010년도	6,396	6,300	5,262	5,350	5,327	5,175	5,132	5,097	5,044	4,933	4,813	4,786
		2011년도	4,754	4,712	4,663	4,557	4,512	4,476	4,475	4,483	4,457	4,452	4,412	4,422
		전년동월대비	-25.7%	-25.2%	-11.4%	-14.8%	-15.3%	-13.5%	-12.8%	-12.0%	-11.6%	-9.8%	-8.3%	-7.6%
	합계	2010년도	7,763	7,667	6,606	6,638	6,606	6,433	6,329	6,266	6,211	6,098	5,974	5,890
		2011년도	5,858	5,766	5,720	5,621	5,573	5,524	5,510	5,521	5,495	5,486	5,443	5,451
		전년동월대비	-24.5%	-24.8%	-13.4%	-15.3%	-15.6%	-14.1%	-12.9%	-11.9%	-11.5%	-10.0%	-8.9%	-7.5%

7. 신용보증잔액, 건수

〈신용보증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대한민국 신용보증연맹	2010년도	3,519,843	3,528,641	3,523,592	3,500,819	3,506,114	3,517,583	3,648,806	3,544,783	3,529,794	3,519,751	3,526,078	3,539,876
	2011년도	3,550,116	3,568,611	3,559,351	3,565,097	3,551,427	3,724,399	3,756,543	3,780,962	3,784,160	3,783,297	3,811,070	3,843,861
	전년동월대비	0.9%	1.1%	1.0%	1.8%	1.3%	5.9%	3.0%	6.7%	7.2%	7.5%	8.1%	8.6%
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10년도	1,152,339	1,154,320	1,156,002	1,155,093	1,152,509	1,153,889	1,152,474	1,153,575	1,153,574	1,150,060	1,148,625	1,144,564
	2011년도	1,068,191	1,071,083	1,071,741	1,057,444	1,055,689	1,055,969	1,055,889	1,056,797	1,056,446	1,055,073	1,052,354	1,051,209
	전년동월대비	-7.3%	-7.2%	-7.3%	-8.5%	-8.4%	-8.5%	-8.4%	-8.4%	-8.4%	-8.3%	-8.4%	-8.2%
전체	2010년도	4,672,181	4,682,962	4,679,594	4,655,912	4,658,622	4,671,472	4,801,281	4,698,358	4,683,368	4,669,811	4,674,703	4,684,441
	2011년도	4,618,307	4,639,694	4,631,092	4,622,541	4,607,116	4,780,369	4,812,432	4,837,759	4,840,606	4,838,370	4,863,423	4,895,071
	전년동월대비	-1.2%	-0.9%	-1.0%	-0.7%	-1.1%	2.3%	0.2%	3.0%	3.4%	3.6%	4.0%	4.5%

〈신용보증건수 추이〉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1개사	61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62개사
대한민국 신용보증연맹	2010년도	6,730,691	6,740,897	6,762,342	6,724,017	6,710,123	6,733,006	6,885,120	6,787,348	6,754,566	6,714,582	6,699,509	6,721,988
	2011년도	7,007,737	7,016,593	7,008,576	6,735,783	6,673,936	6,840,733	6,857,773	6,888,867	6,878,969	6,865,186	6,886,586	6,916,371
	전년동월대비	4.1%	4.1%	3.6%	0.2%	-0.5%	1.6%	-0.4%	1.5%	1.8%	2.2%	2.8%	2.9%
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10년도	1,938,695	1,979,388	2,019,072	2,052,847	2,081,314	2,106,497	2,121,372	2,145,180	2,121,693	2,182,044	2,202,282	2,224,478
	2011년도	2,081,893	2,103,099	2,126,562	2,150,906	2,173,380	2,193,446	2,212,630	2,234,713	2,254,542	2,281,372	2,306,863	2,333,466
	전년동월대비	7.4%	6.2%	5.3%	4.8%	4.4%	4.1%	4.3%	4.2%	6.3%	4.6%	4.7%	4.9%
전체	2010년도	8,669,386	8,720,285	8,781,414	8,776,864	8,791,437	8,839,503	9,006,492	8,932,528	8,876,259	8,896,626	8,901,791	8,946,466
	2011년도	9,089,630	9,119,692	9,135,102	8,886,689	8,847,316	9,034,179	9,070,403	9,123,580	9,133,511	9,146,558	9,193,449	9,249,837
	전년동월대비	4.8%	4.6%	4.0%	1.3%	0.6%	2.2%	0.7%	2.1%	2.9%	2.8%	3.3%	3.4%

8. 이자반환금, 이자반환에 따른 원금손실액

〈업태별 이자반환금, 이자반환에 따른 원금손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1개사	60개사	61개사	62개사	62개사	61개사	62개사	61개사	61개사	62개사
이자환입금	소방기기업	2010년도	33,923	33,308	37,450	38,885	38,655	32,027	34,184	33,936	36,281	33,204	33,766	36,332
		2011년도	37,092	37,627	42,443	45,750	44,064	39,289	37,983	31,404	32,190	24,481	24,646	36,471
		전년동월대비	9.3%	13.0%	13.3%	17.7%	14.0%	22.7%	11.1%	-7.5%	-11.3%	-26.3%	-27.0%	0.4%
	산업기기업	2010년도	162	109	156	307	156	176	194	330	359	151	172	222
		2011년도	233	227	228	237	174	163	179	205	241	228	170	199
		전년동월대비	43.8%	108.3%	46.2%	-22.8%	11.5%	-7.4%	-7.7%	-37.9%	-32.9%	51.0%	-1.2%	-10.4%
	그레드기기업	2010년도	8,207	8,988	9,144	7,392	8,477	9,305	8,467	8,377	8,819	7,610	7,712	8,566
		2011년도	9,677	8,879	9,062	7,898	6,927	6,556	7,137	7,076	7,049	6,517	6,441	6,668
		전년동월대비	17.9%	-1.2%	-0.9%	6.8%	-18.3%	-29.5%	-15.7%	-15.5%	-20.1%	-14.4%	-16.5%	-22.2%
	합계	2010년도	42,292	42,406	46,751	46,583	47,288	41,508	42,844	42,643	45,458	40,964	41,651	45,120
		2011년도	47,002	46,733	51,733	53,885	51,165	46,008	45,299	38,685	39,480	31,226	31,257	43,337
		전년동월대비	11.1%	10.2%	10.7%	15.7%	8.2%	10.8%	5.7%	-9.3%	-13.2%	-23.8%	-25.0%	-4.0%
이자환입금 금액에 따른 원금손실액	소방기기업	2010년도	17,995	16,629	17,440	18,721	19,152	23,027	16,466	20,027	28,070	15,265	16,273	30,367
		2011년도	14,754	13,237	14,596	11,597	12,400	10,957	9,094	9,834	10,486	6,673	6,585	10,402
		전년동월대비	-18.0%	-20.4%	-16.3%	-38.1%	-35.3%	-52.4%	-44.8%	-50.9%	-62.6%	-56.3%	-59.5%	-65.7%
	산업기기업	2010년도	215	140	216	108	230	227	153	269	223	136	139	197
		2011년도	218	201	174	138	126	104	109	131	124	122	89	88
		전년동월대비	1.4%	43.6%	-19.4%	27.8%	-45.2%	-54.2%	-28.8%	-51.3%	-44.4%	-10.3%	-36.0%	-55.3%
	그레드기기업	2010년도	8,287	8,613	8,597	7,224	8,730	7,995	7,396	7,994	8,364	7,609	7,207	7,580
		2011년도	7,692	6,806	6,954	5,715	5,114	4,910	4,516	4,699	4,237	3,695	3,698	3,841
		전년동월대비	-7.2%	-21.0%	-19.1%	-20.9%	-41.4%	-38.6%	-38.9%	-41.2%	-49.3%	-51.4%	-48.7%	-49.3%
	합계	2010년도	26,497	25,382	26,254	26,054	28,111	31,249	24,014	28,290	36,657	23,010	23,618	38,144
		2011년도	22,664	20,244	21,724	17,450	17,640	15,971	13,719	14,663	14,847	10,490	10,372	14,331
		전년동월대비	-14.5%	-20.2%	-17.3%	-33.0%	-37.2%	-48.9%	-42.9%	-48.2%	-59.5%	-54.4%	-56.1%	-62.4%
전체	2010년도	68,790	67,787	73,004	72,637	75,399	72,757	66,859	70,933	82,116	63,975	65,269	83,265	
	2011년도	69,666	66,976	73,457	71,335	68,804	61,979	59,018	53,348	54,327	41,717	41,629	57,668	
	전년동월대비	1.3%	-1.2%	0.6%	-1.8%	-8.7%	-14.8%	-11.7%	-24.8%	-33.8%	-34.8%	-36.2%	-30.7%	

제 ③ 장 공지정보 · 기타 통계 자료

1.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정보 현황

〈일본신용정보기구(JICC) 등록 현황〉

		등록인수 (만명)	5건 이상 대출 이용자 (만명)	전체인원에 대한 비율	등록건수 (만건)	5건 이상 대출이용자 (만건)	등록 잔액 합계액 (억엔)	5건 이상 대출이용자 (억엔)
2010년	4월	1,508	112	7.4%	3,122	658	122,592	26,795
	5월	1,534	110	7.2%	3,132	641	122,234	26,006
	6월	1,538	107	7.0%	3,109	626	120,840	25,449
	7월	1,517	103	6.8%	3,050	599	117,568	24,075
	8월	1,518	100	6.6%	3,028	579	115,770	23,046
	9월	1,515	97	6.4%	3,002	561	113,741	22,065
	10월	1,495	91	6.1%	2,943	528	110,544	20,599
	11월	1,486	82	5.5%	2,863	472	105,383	17,952
	12월	1,460	77	5.3%	2,789	442	101,551	16,600
2011년	1월	1,455	75	5.2%	2,765	430	100,142	15,977
	2월	1,456	73	5.0%	2,752	419	99,012	15,452
	3월	1,449	70	4.8%	2,720	402	97,147	14,682
	4월	1,459	71	4.9%	2,738	404	109,821	15,893
	5월	1,462	69	4.7%	2,725	393	108,585	15,339
	6월	1,453	66	4.5%	2,691	378	106,770	14,643
	7월	1,439	63	4.4%	2,648	362	104,715	13,926
	8월	1,444	62	4.3%	2,642	353	104,040	13,530
	9월	1,442	61	4.2%	2,626	343	103,071	13,078
	10월	1,423	56	3.9%	2,563	318	100,387	12,067
	11월	1,425	54	3.8%	2,551	308	99,783	11,647
	12월	1,405	52	3.7%	2,502	294	97,625	11,039
2012년	1월	1,402	51	3.6%	2,487	286	96,903	10,732
	2월	1,390	49	3.5%	2,451	277	95,117	10,303
	3월	1,384	47	3.4%	2,426	266	94,025	9,849

(주1) 각 월별수치는 월말 기준의 “잔액 있음”의 수치이다.

<출처 : 일본신용정보기구>

(주2)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의 수치는 미공표

<CIC 등록 현황>

		등록인수 (만명)	5건 이상 대출 이용자 (만명)	전체인원에 대한 비율	등록건수 (만건)	5건 이상 대출이용자 (만건)	등록 잔액 합계액 (억엔)	5건 이상 대출이용자 (억엔)
2010년	4월	1,531	70	4.6%	2,687	421	118,714	-
	5월	1,527	68	4.5%	2,668	412	117,754	17,712
	6월	1,530	67	4.4%	2,664	404	117,501	17,361
	7월	1,518	64	4.2%	2,626	386	115,703	16,470
	8월	1,512	63	4.2%	2,605	374	114,263	15,815
	9월	1,511	61	4.0%	2,590	361	112,891	15,134
	10월	1,510	59	3.9%	2,576	349	112,066	14,528
	11월	1,499	57	3.8%	2,550	338	110,221	13,931
	12월	1,490	55	3.7%	2,522	327	108,778	13,300
2011년	1월	1,471	53	3.6%	2,478	314	106,338	12,649
	2월	1,470	52	3.5%	2,468	306	105,259	12,156
	3월	1,467	50	3.4%	2,451	296	103,783	11,663
	4월	1,463	49	3.3%	2,431	285	102,163	11,099
	5월	1,461	47	3.2%	2,416	276	100,734	10,633
	6월	1,462	46	3.1%	2,404	267	99,782	10,185
	7월	1,424	41	2.9%	2,310	238	97,471	9,096
	8월	1,426	39	2.7%	2,302	229	96,281	8,649
	9월	1,519	47	3.1%	2,505	273	104,050	10,283
	10월	1,518	46	3.0%	2,492	265	103,185	9,872
	11월	1,514	44	2.9%	2,475	256	102,054	9,490
	12월	1,502	42	2.8%	2,441	245	100,764	9,032
2012년	1월	1,485	41	2.8%	2,403	235	99,046	8,601
	2월	1,471	39	2.7%	2,369	226	97,329	8,234
	3월	1,468	38	2.6%	2,353	218	96,405	7,893

(주) 각 월별수치는 매월 20일 기준의 “잔액 있음”의 수치이다.

<출처 : CIC>

2.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예금취급 금융기관 ·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억엔)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전체
	주택대출	소비자 신용	기업 · 정부 등 대상	합계	주택대출	소비자신용 · 기업 · 정 부 등 대상	합계	
1991년도	564,162	267,045	6,437,054	7,268,261	469,866	2,626,556	3,096,422	10,364,683
1992년도	579,063	262,689	6,605,209	7,446,961	512,226	2,884,947	3,397,173	10,844,134
1993년도	594,857	248,917	6,582,103	7,425,877	579,976	3,236,040	3,816,016	11,241,893
1994년도	614,591	235,025	6,538,745	7,388,361	665,445	3,525,336	4,190,781	11,579,142
1995년도	706,734	222,991	6,611,462	7,541,187	664,492	3,671,145	4,335,637	11,876,824
1996년도	773,403	212,443	6,442,850	7,428,696	723,678	3,878,647	4,602,325	12,031,021
1997년도	826,931	198,217	6,374,556	7,399,704	751,478	4,055,997	4,807,475	12,207,179
1998년도	874,519	185,510	6,114,689	7,174,718	745,099	4,260,514	5,005,613	12,180,331
1999년도	940,070	178,786	5,769,539	6,888,395	763,970	4,479,288	5,243,258	12,131,653
2000년도	978,224	168,835	5,654,961	6,802,020	769,801	4,475,020	5,244,821	12,046,841
2001년도	1,034,762	156,396	5,471,878	6,663,036	732,056	4,354,569	5,086,625	11,749,661
2002년도	1,097,149	143,286	5,045,230	6,285,665	661,292	4,226,005	4,887,297	11,172,962
2003년도	1,189,439	132,213	4,728,099	6,049,751	584,120	4,020,068	4,604,188	10,653,939
2004년도	1,242,965	133,900	4,475,852	5,852,717	524,624	3,813,037	4,337,661	10,190,378
2005년도	1,308,628	127,436	4,510,244	5,946,308	466,194	3,490,157	3,956,351	9,902,659
2006년도	1,343,437	122,791	4,579,871	6,046,099	423,186	3,256,082	3,679,268	9,725,367
2007년도	1,382,392	117,352	4,586,949	6,086,693	385,270	2,958,473	3,343,743	9,430,436
2008년도	1,426,389	120,982	4,677,371	6,224,742	343,860	2,720,048	3,063,908	9,288,650
2009년도	1,477,698	112,614	4,461,411	6,051,723	304,376	2,656,447	2,960,823	9,012,546
2010년도	1,507,985	107,086	4,448,771	6,063,842	286,413	2,548,835	2,835,248	8,899,090
2011년도	1,539,829	102,883	4,478,380	6,121,092	274,237	2,445,566	2,719,803	8,840,895

<출처 : 일본은행>

3. 신용공여액 현황 [총괄]

〈신용공여액 총괄 시계열표〉

(단위 : 억엔)

		거래형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 비 자 신 용	판 매 신 용	신 용 카 드	할부방식	할부판매	3,438	3,329	3,230	3,160	3,029	2,878	2,487	2,334	2,068	1,966
				할부구입알선	21,239	21,774	22,552	23,480	25,007	27,162	29,691	30,010	30,719	33,316
			할부방식 계	24,677	25,103	25,782	26,640	28,036	30,040	32,178	32,344	32,787	35,282	
		비할부방식	비할부판매	26,927	28,784	31,786	34,881	38,805	37,119	40,468	42,901	50,843	56,773	
			비할부구입알선	181,135	192,903	208,251	230,090	254,860	280,536	315,155	349,100	359,558	376,833	
			비할부방식 계	208,062	221,687	240,037	264,971	293,665	317,655	355,623	392,001	410,401	433,606	
		신용카드 계		232,739	246,790	265,819	291,611	321,701	347,695	387,801	424,345	443,188	468,888	
		개 별 신 용	할부방식	할부판매	10,874	10,109	9,916	9,630	9,786	9,301	8,543	7,260	7,146	6,430
				할부구입알선	48,270	43,767	39,912	37,914	37,307	33,758	28,608	27,454	24,060	21,505
				론제휴판매	507	426	387	368	156	103	-	-	-	-
	제휴론			25,227	27,393	29,494	29,581	29,635	28,946	24,868	22,397	21,335	21,055	
	할부방식 계			84,878	81,695	79,709	77,493	76,884	72,108	62,019	57,111	52,541	48,990	
	비할부방식		비할부판매	23,931	22,185	21,321	20,492	20,423	19,533	19,184	16,794	13,937	12,539	
			비할부구입알선	13,467	12,789	12,452	12,349	11,339	10,520	9,354	8,705	8,158	7,637	
			비할부방식 계	37,398	34,974	33,773	32,841	31,762	30,053	28,538	25,499	22,095	20,176	
	개별신용 계		122,276	116,669	113,482	110,334	108,646	102,161	90,557	82,610	74,636	69,166		
	판매신용 계		355,015	363,459	379,301	401,945	430,347	449,856	478,358	506,955	517,824	538,054		
	소 비 자 금 용	소 비 자 론	판매신용업무를 취급하는 신용공여자의 소비자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74,805	75,991	75,662	76,363	75,238	75,465	69,521	58,291	47,514	31,071
				기타 소비자론	25,726	26,300	25,534	25,437	25,373	24,331	20,463	16,837	13,388	9,717
				소계	100,531	102,291	101,196	101,800	100,611	99,796	89,984	75,128	60,902	40,788
			민간금융기관		39,858	40,448	39,461	33,005	40,458	26,364	24,440	24,282	23,406	22,202
			소비자금융회사		106,327	101,917	97,507	102,845	104,194	92,703	82,635	58,036	41,670	28,723
			소비자론 계		246,716	244,656	238,164	237,650	245,263	218,863	197,059	157,446	125,978	91,713
			정기예금담보대출		112,644	96,647	91,254	81,739	71,804	69,269	69,013	64,663	51,785	45,319
			우체국적금예금자 대출		25,735	22,633	20,629	19,311	16,892	14,731	14,731	14,731	14,731	14,731
			동산담보대출		853	830	799	772	750	720	689	673	653	645
			소비자금융 계		385,948	364,766	350,846	339,472	334,709	303,583	281,492	237,513	193,147	152,408
	소비자신용 합계				740,963	728,225	730,147	741,417	765,056	753,439	759,850	744,468	710,971	690,462

(주1) 소비자론 중 판매신용업무를 취급하는 신용공여자에 의한 소비자론은 백화점과 양판점, 통신판매 회사, 서비스업, 소매업자 등, 전기회사계열 크레디트회사, 자동차 제조업체 계열 판매금융회사, 유통계열 크레디트회사, 신용판매회사, 중소 소매상 단체, 신용보증회사, 개별신용할부구입알선업자 등, 은행계열 신용카드회사의 합계를 말한다.

(주2) 우체국 적금예금자 대출은 2007년 이후 수치를 공표하고 있지 않아 2006년의 수치를 계상했다.

<출처 : 일본크레디트협회>

4. 다중채무에 관한 상담 현황

〈국민생활센터·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다중채무 관련 상담건수 추이〉 (단위 : 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0,101	95,162	77,951	72,390	45,265

<출처 : 국민생활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에서 실시한 법률상담건수 추이〉 (단위 : 건)

	다중채무사건	금전사건	기타 사건	합계	다중채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2009년도	114,734	35,394	87,178	237,306	48.3%
2010년도	116,921	41,558	98,240	256,719	45.5%
2011년도	101,205	52,901	126,088	280,194	36.1%

<출처 :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콜센터에 접수된 상담종류별 비율 추이〉

	금전 대출	남녀·부부	상속·유언	기타	합계
2009년도	20.1%	10.7%	6.4%	62.8%	100.0%
2010년도	23.3%	13.0%	6.9%	56.8%	100.0%
2011년도	20.7%	15.5%	6.9%	56.9%	100.0%

<출처 : 일본사법지원센터>

5. 다중채무에 관한 카운슬링 실시 현황

〈내용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문의 총건수(건)	안내·타기관 조회		전화상담		카운슬링 접수		카운슬링 실시건수		개입		변호사회 등 소개		기타	
		건수 (건)	비율	건수 (건)	비율	건수 (건)	비율	건수 (건)	비율	건수 (건)	비율	건수 (건)	비율	건수 (건)	비율
2009 년도	7,143	2,951	41.3%	4,192	58.7%	1,785	25.0%	1,648	23.1%	1,033	14.5%	394	5.5%	221	3.1%
2010 년도	6,224	2,367	38.0%	3,857	62.0%	1,653	26.6%	1,539	24.7%	925	14.9%	363	5.8%	251	4.0%
2011 년도	4,099	1,385	33.8%	2,714	66.2%	1,127	27.5%	1,017	24.8%	571	13.9%	244	6.0%	202	4.9%

<출처 : 일본크레디트 카운슬링협회>

<지역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도쿄	개입	427	56.0%	364	49.9%	191	45.5%
	변호사회 등 소개	255	33.5%	258	35.3%	163	38.8%
	기타	80	10.5%	108	14.8%	66	15.7%
	합계	762	100.0%	730	100.0%	420	100.0%
후쿠오카	개입	110	59.8%	104	59.4%	79	62.2%
	변호사회 등 소개	24	13.0%	31	17.7%	9	7.1%
	기타	50	27.2%	40	22.9%	39	30.7%
	합계	184	100.0%	175	100.0%	127	100.0%
나고야	개입	145	77.5%	108	71.1%	56	65.9%
	변호사회 등 소개	20	10.7%	14	9.2%	8	9.4%
	기타	22	11.8%	30	19.7%	21	24.7%
	합계	187	100.0%	152	100.0%	85	100.0%
센다이	개입	88	11.4%	94	63.9%	40	50.0%
	변호사회 등 소개	27	38.6%	26	17.7%	15	18.8%
	기타	35	50.0%	27	18.4%	25	31.3%
	합계	150	100.0%	147	100.0%	80	100.0%
히로시마	개입	123	82.6%	92	81.4%	74	83.1%
	변호사회 등 소개	18	12.1%	7	6.2%	5	5.6%
	기타	8	5.4%	14	12.4%	10	11.2%
	합계	149	100.0%	113	100.0%	89	100.0%
니가타	개입	83	74.1%	83	83.0%	68	62.4%
	변호사회 등 소개	19	17.0%	14	14.0%	25	22.9%
	기타	10	8.9%	3	3.0%	16	14.7%
	합계	112	100.0%	100	100.0%	109	100.0%
시즈오카	개입	57	54.8%	80	65.6%	45	61.6%
	변호사회 등 소개	31	29.8%	13	10.7%	14	19.2%
	기타	16	15.4%	29	23.8%	14	19.2%
	합계	104	100.0%	122	100.0%	73	100.0%
쿠마모토	개입	-	-	-	-	8	53.3%
	변호사회 등 소개	-	-	-	-	4	26.7%
	기타	-	-	-	-	3	20.0%
	합계	-	-	-	-	15	100.0%
하마마쓰	개입	-	-	-	-	2	20.0%
	변호사회 등 소개	-	-	-	-	1	10.0%
	기타	-	-	-	-	7	70.0%
	합계	-	-	-	-	10	100.0%
후쿠시마	개입	-	-	-	-	8	88.9%
	변호사회 등 소개	-	-	-	-	0	0.0%
	기타	-	-	-	-	1	11.1%
	합계	-	-	-	-	9	100.0%
전체	개입	1,033	62.7%	925	60.1%	571	56.1%
	변호사회 등 소개	394	23.9%	363	23.6%	244	24.0%
	기타	221	13.4%	251	16.3%	202	19.9%
	합계	1,648	100.0%	1,539	100.0%	1,017	100.0%

<출처 : 일본크레딧 카운슬링협회>

〈남녀성비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남성	919	55.8%	812	52.8%	569	55.9%
여성	729	44.2%	727	47.2%	448	44.1%
합계	1,648	100.0%	1,539	100.0%	1,017	100.0%

<출처 : 일본크레디트 카운슬링협회>

〈연령대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20대	230	14.0%	193	12.5%	159	15.6%
30대	428	26.0%	361	23.5%	298	29.3%
40대	454	27.5%	397	25.8%	225	22.1%
50대	280	17.0%	285	18.5%	179	17.6%
60대 이상	256	15.5%	303	19.7%	156	15.4%
합계	1,648	100.0%	1,539	100%	1,017	100.0%
(참고) 40세 이상	990	60.1%	985	64.0%	560	55.1%

<출처 : 일본크레디트 카운슬링협회>

〈상담자 1인당 채무건수와 채무액(연령대별) 추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인당 채무건수(건)	1인당 채무액(만엔)	1인당 채무건수(건)	1인당 채무액(만엔)	1인당 채무건수(건)	1인당 채무액(만엔)
20대	5.8	208	5.2	206	5.5	222
30대	6.0	384	6.0	392	5.8	343
40대	7.2	657	7.1	638	6.8	755
50대	6.8	638	6.7	725	6.4	813
60대 이상	6.0	479	5.7	418	5.1	426
전체	6.4	493	6.2	499	6.0	510

<출처 : 일본크레디트 카운슬링협회>

<카운슬링을 받은 상담자의 대출 이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건수(건)	해당율	건수(건)	해당율	건수(건)	해당율
남성	생활비 총당	500	54.4%	472	58.1%	326	57.3%
	실업·전직·소득 감소	459	49.9%	411	50.6%	269	47.3%
	유흥·음식·교제	304	33.1%	257	31.7%	162	28.5%
	사치품·소득 이상의 쇼핑	83	9.0%	87	10.7%	63	11.1%
	교육·자격 취득	84	9.1%	90	11.1%	51	9.0%
	의료·관혼상제	123	13.4%	110	13.5%	59	10.4%
	도박	222	24.2%	170	20.9%	116	20.4%
	자동차·오토바이	122	13.3%	110	13.5%	82	14.4%
	이사	50	5.4%	56	6.9%	26	4.6%
	사업비·운전자금	58	6.3%	51	6.3%	49	8.6%
	응답총수	2,288	-	2,056	-	1,387	-
	상담자총수	919	-	812	-	569	-
여성	생활비 총당	470	64.5%	469	64.5%	307	68.5%
	실업·전직·소득 감소	371	50.9%	382	52.5%	223	49.8%
	유흥·음식·교제	102	14.0%	110	15.1%	72	16.1%
	사치품·소득 이상의 쇼핑	162	22.2%	128	17.6%	122	27.2%
	교육·자격 취득	125	17.1%	156	21.5%	65	14.5%
	의료·관혼상제	137	18.8%	156	21.5%	56	12.5%
	도박	49	6.7%	37	5.1%	11	2.5%
	자동차·오토바이	46	6.3%	47	6.5%	28	6.3%
	이사	47	6.4%	59	8.1%	44	9.8%
	사업비·운전자금	43	5.9%	36	5.0%	18	4.0%
	응답총수	1,804	-	1,835	-	1,094	-
	상담자총수	729	-	727	-	448	-
전체	생활비 총당	970	58.9%	941	61.1%	633	62.2%
	실업·전직·소득 감소	830	50.4%	793	51.5%	492	48.4%
	유흥·음식·교제	406	24.6%	367	23.8%	234	23.0%
	사치품·소득 이상의 쇼핑	245	14.9%	215	14.0%	185	18.2%
	교육·자격 취득	209	12.7%	246	16.0%	116	11.4%
	의료·관혼상제	260	15.8%	266	17.3%	115	11.3%
	도박	271	16.4%	207	13.5%	127	12.5%
	자동차·오토바이	168	10.2%	157	10.2%	110	10.8%
	이사	97	5.9%	115	7.5%	70	6.9%
	사업비·운전자금	101	6.1%	87	5.7%	67	6.6%
	응답총수	4,092	-	3,891	-	2,481	-
	상담자총수	1,648	-	1,539	-	1,017	-

(주) 카운슬링을 받은 상담자가 크레디트나 론 목적으로 신고한 사유(복수응답, 관련성이 높은 상위 3가지를 집계) 중 상위 10가지 사유에 대해 공표했다. 대출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6. 자기파산 현황

〈자기파산 신청건수 추이〉

(단위 : 건)

	자연인의 자기파산 신청건수	법인·기타 자기파산 신청건수	합계
2005년도	184,422	7,786	192,208
2006년도	165,932	8,110	174,042
2007년도	148,248	9,365	157,613
2008년도	129,508	10,627	140,135
2009년도	126,265	10,990	137,255
2010년도	120,930	9,840	130,770

<출처 : 대법원>

7. 자살자 동향

〈남녀성비별 자살자수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남성	23,272	72.0%	23,540	72.3%	22,813	70.9%	23,478	70.9%	22,831	70.8%	23,472	71.5%	22,283	70.3%	20,955	68.4%
여성	9,053	28.0%	9,012	27.7%	9,342	29.1%	9,615	29.1%	9,418	29.2%	9,373	28.5%	9,407	29.7%	9,696	31.6%
합계	32,325	100.0%	32,552	100.0%	32,155	100.0%	33,093	100.0%	32,249	100.0%	32,845	100.0%	31,690	100.0%	30,651	100.0%

<출처 : 경찰청>

〈연령대별 자살자수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19세	589	1.8%	608	1.9%	623	1.9%	548	1.7%	611	1.9%	565	1.7%	552	1.7%	622	2.0%
20~29세	3,247	10.0%	3,409	10.5%	3,395	10.6%	3,309	10.0%	3,438	10.7%	3,470	10.6%	3,240	10.6%	3,304	10.8%
30~39세	4,333	13.4%	4,606	14.1%	4,497	14.0%	4,767	14.4%	4,850	15.0%	4,794	14.6%	4,596	14.6%	4,455	14.5%
40~49세	5,102	15.8%	5,208	16.0%	5,008	15.6%	5,096	15.4%	4,970	15.4%	5,261	16.0%	5,165	16.0%	5,053	16.5%
50~59세	7,772	24.0%	7,586	23.3%	7,246	22.5%	7,046	21.3%	6,363	19.7%	6,491	19.8%	5,959	19.8%	5,375	17.5%
60세 이상	10,994	34.0%	10,894	33.5%	11,120	34.6%	12,107	36.6%	11,793	36.6%	12,034	36.6%	11,982	36.6%	11,661	38.0%
미상	288	0.9%	241	0.7%	266	0.8%	220	0.7%	224	0.7%	230	0.7%	196	0.7%	181	0.6%
합계	32,325	100%	32,552	100%	32,155	100%	33,093	100%	32,249	100%	32,845	100%	31,690	100%	30,651	100%

<출처 : 경찰청>

〈원인·동기별 자살자수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유연 있음	10,443	32.3%	10,360	31.8%	10,466	32.5%	23,209	70.1%	23,490	72.8%	24,434	74.4%	23,572	74.4%	22,581	73.7%
가정문제	1,009	3.1%	1,011	3.1%	1,043	3.2%	3,751	11.3%	3,912	12.1%	4,117	12.5%	4,497	14.2%	4,547	14.8%
건강문제	4,087	12.6%	4,145	12.7%	4,341	13.5%	14,684	44.4%	15,153	47.0%	15,867	48.3%	15,802	49.9%	14,621	47.7%
경제생활문제	3,436	10.6%	3,255	10.0%	3,010	9.4%	7,318	22.1%	7,404	23.0%	8,377	25.5%	7,438	23.5%	6,406	20.9%
업무문제	628	1.9%	654	2.0%	709	2.2%	2,207	6.7%	2,412	7.5%	2,528	7.7%	2,590	8.2%	2,689	8.8%
남녀문제	312	1.0%	317	1.0%	295	0.9%	949	2.9%	1,115	3.5%	1,121	3.4%	1,103	3.5%	1,138	3.7%
학교문제	76	0.2%	71	0.2%	91	0.3%	338	1.0%	387	1.2%	364	1.1%	371	1.2%	429	1.4%
기타	594	1.8%	622	1.9%	645	2.0%	1,500	4.5%	1,538	4.8%	1,613	4.9%	1,533	4.8%	1,621	5.3%
미상	301	0.9%	285	0.9%	332	1.0%	-	-	-	-	-	-	-	-	-	-
유연 없음	21,882	67.7%	22,192	68.2%	21,689	67.5%	9,884	29.9%	8,759	27.2%	8,411	25.6%	8,118	25.6%	8,070	26.3%
합계	32,325	100.0%	23,552	100.0%	32,155	100.0%	33,093	100.0%	32,249	100.0%	32,845	100.0%	31,690	100.0%	30,651	100.0%

(주) 2007년 이후에는 유연 등 자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 명백하게 확정할 수 있는 원인·동기를 자살자 1인당 세가지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해서 유연 있음의 원인·동기별 합이 유연 있음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출처 : 경찰청>

8. 생활보호 수급 현황

〈생활보호 수급자 수 추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피보호세대수 (천세대)	999	1,042	1,076	1,105	1,149	1,274	1,409	1,498
피보호실인원 (천명)	1,423	1,476	1,514	1,543	1,593	1,764	1,952	2,067

(주) 실수는 1개월 평균

<출처 : 후생노동성>

9. 정규·비정규 직원·종업원의 고용 현황

〈정규·비정규 직원·종업원 고용자 수의 추이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정규 직원·종업원	3,410	68.5%	3,374	67.4%	3,411	67.0%	3,441	66.5%	3,399	65.9%	3,380	66.2%	3,355	65.6%	3,185	64.8%
비정규 직원·종업원	1,564	31.4%	1,633	32.6%	1,677	33.0%	1,732	33.5%	1,760	34.1%	1,721	33.7%	1,756	34.4%	1,733	35.2%
전체	4,975	100.0%	5,007	100.0%	5,088	100.0%	5,174	100.0%	5,159	100.0%	5,102	100.0%	5,111	100.0%	4,918	100.0%

(주) 2011년의 실수 및 비율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제외

<출처 : 총무성>

<정규·비정규 직원·종업원 고용자 수의 추이 (남녀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정규 직원 종업원	남자	2,385	69.9%	2,357	69.9%	2,375	69.6%	2,402	69.8%	2,358	69.4%	2,334	69.1%	2,309	68.8%	2,200	69.1%
	여자	1,025	30.1%	1,018	30.2%	1,036	30.4%	1,039	30.2%	1,040	30.6%	1,046	30.9%	1,046	31.2%	985	30.9%
	합계	3,410	100.0%	3,374	100.0%	3,411	100.0%	3,441	100.0%	3,399	100.0%	3,380	100.0%	3,355	100.0%	3,185	100.0%
비정규 직원 종업원	남자	466	29.8%	507	31.0%	517	30.8%	538	31.1%	559	31.8%	526	30.6%	538	30.6%	545	31.4%
	여자	1,098	70.2%	1,125	68.9%	1,159	69.1%	1,194	68.9%	1,202	68.3%	1,195	69.4%	1,217	69.3%	1,188	68.6%
	합계	1,564	100.0%	1,633	100.0%	1,677	100.0%	1,732	100.0%	1,760	100.0%	1,721	100.0%	1,756	100.0%	1,733	100.0%
전체	남자	2,851	57.3%	2,864	57.2%	2,894	56.9%	2,941	56.8%	2,917	56.5%	2,860	56.1%	2,848	55.7%	2,745	55.8%
	여자	2,124	42.7%	2,143	42.8%	2,194	43.1%	2,234	43.2%	2,242	43.5%	2,242	43.9%	2,263	44.3%	2,173	44.2%
	합계	4,975	100.0%	5,007	100.0%	5,088	100.0%	5,174	100.0%	5,159	100.0%	5,102	100.0%	5,111	100.0%	4,918	100.0%

(주) 2011년의 실수 및 비율은 이의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제외

<출처 : 총무성>

<정규·비정규 직원·종업원 고용자 수의 추이 (연령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정규 직원 종업원	15~24세	307	9.0%	290	8.6%	298	8.7%	292	8.5%	286	8.4%	277	8.2%	262	7.8%	239	7.5%
	25~34세	1,018	29.9%	992	29.4%	982	28.8%	940	27.3%	916	26.9%	884	26.2%	862	25.7%	808	25.4%
	35~44세	815	23.9%	832	24.7%	852	25.0%	890	25.9%	898	26.4%	920	27.2%	930	27.7%	908	28.5%
	45~54세	774	22.7%	749	22.2%	737	21.6%	740	21.5%	731	21.5%	732	21.7%	740	22.1%	706	22.2%
	55~64세	447	13.1%	459	13.6%	481	14.1%	512	14.9%	498	14.7%	490	14.5%	488	14.5%	453	14.2%
	65세 이상	50	1.5%	52	1.5%	60	1.8%	68	2.0%	70	2.1%	77	2.3%	73	2.2%	71	2.2%
	합계	3,410	100.0%	3,374	100.0%	3,411	100.0%	3,441	100.0%	3,399	100.0%	3,380	100.0%	3,355	100.0%	3,185	100.0%
비정규 직원 종업원	15~24세	253	16.2%	265	16.2%	254	15.1%	253	14.6%	248	14.1%	227	13.2%	226	12.9%	219	12.6%
	25~34세	310	19.8%	319	19.5%	330	19.7%	326	18.8%	315	17.9%	305	17.7%	301	17.1%	287	16.6%
	35~44세	292	18.7%	302	18.5%	321	19.1%	332	19.2%	347	19.7%	341	19.8%	351	20.0%	354	20.4%
	45~54세	316	20.2%	321	19.7%	320	19.1%	327	18.9%	321	18.2%	323	18.8%	328	18.7%	316	18.2%
	55~64세	296	18.9%	316	19.4%	332	19.8%	354	20.4%	375	21.3%	367	21.3%	387	22.0%	394	22.7%
	65세 이상	96	6.1%	108	6.6%	122	7.3%	140	8.1%	153	8.7%	157	9.1%	162	9.2%	163	9.4%
	합계	1,564	100.0%	1,633	100.0%	1,677	100.0%	1,732	100.0%	1,760	100.0%	1,721	100.0%	1,756	100.0%	1,733	100.0%
전체	15~24세	560	11.3%	555	11.1%	551	10.8%	544	10.5%	535	10.4%	504	9.9%	488	9.5%	458	9.3%
	25~34세	1,329	26.7%	1,312	26.2%	1,311	25.8%	1,265	24.4%	1,231	23.9%	1,190	23.3%	1,163	22.8%	1,095	22.3%
	35~44세	1,107	22.3%	1,134	22.6%	1,173	23.1%	1,222	23.6%	1,246	24.2%	1,262	24.7%	1,282	25.1%	1,262	25.7%
	45~54세	1,089	21.9%	1,071	21.4%	1,057	20.8%	1,068	20.6%	1,052	20.4%	1,055	20.7%	1,068	20.9%	1,022	20.8%
	55~64세	743	14.9%	776	15.5%	813	16.0%	866	16.7%	872	16.9%	858	16.8%	875	17.1%	847	17.2%
	65세 이상	146	2.9%	160	3.2%	182	3.6%	209	4.0%	223	4.3%	234	4.6%	235	4.6%	234	4.8%
	합계	4,975	100.0%	5,007	100.0%	5,088	100.0%	5,174	100.0%	5,159	100.0%	5,102	100.0%	5,111	100.0%	4,918	100.0%

(주) 2011년의 실수 및 비율은 이의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제외

<출처 : 총무성>

연대표 (2006년 12월 ~ 2012년 3월)

2006년 12월	•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시에 공포
2007년 1월	• 20일, 개정법 제1조 시행.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벌칙이 강화
3월	• 개정법에 규정된 대금업협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발족
4월	• 정부의 다중채무대책본부가 “다중채무 개선 프로그램”을 결정
5월	• 기존의 대금업협회(각 도도부현에 설치)가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해산 결정
7월	• 금융청이 신대금업법의 정성령안을 공표하고 public comment를 모집
8월	• 금융청이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지침(안)”을 마련하고 public comment를 모집 •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자율규제기본규칙(안) 등을 정리하여 public comment를 모집
9월	•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신탁회 개요를 책정하고 전국 9개소에서 신탁회 설명회 실시
10월	• 자민당이 신대금업법의 정성령안에 대해 금융청의 당초안을 일부 수정 후 승인
11월	• 신대금업법에 준한 개정 정령 및 내각부령 공포
12월	• 18일, 신대금업법 제2조 시행으로 대금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및 행위 규제의 강화, 감독이 강화 •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일본대금업협회(JFSA) 설립 • 주식회사 일본정보센터, 주식회사 아이넷, 주식회사 테라넷 3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테라넷”이 발족
2008년 3월	• 아에루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7월	• 주식회사 오크스가 나하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9월	• 선라이즈 파이낸스 주식회사와 리먼브라더즈 코머셜 모기지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가자카파이낸스 주식회사가 산와파이낸스 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화
10월	• 주식회사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TOB(주식공개 매수)를 통해 아코무 주식회사를 지분법 적용회사에서 연결 자회사화
12월	• 주식회사 레타스카드가 오사카지방법원에 파산 절차 개시 신청
2009년 1월	• 대법원이 과불금 반환청구 시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 관련 첫 판결을 내림
2월	• 주식회사 SFCG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법정관리에서 파산 절차로 이행)
4월	• 주식회사 OMC카드, 주식회사 센트럴파이낸스, 주식회사 구오코 3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세디나” 발족

	- 주식회사 테라넷이 전국신용정보센터 연합회 가입 33개 정보센터로부터 신용정보사업을 계승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 로 변경 - 개정 할부판매법에 명기된 크레딧 업계의 자율규제단체인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 발족
6월	18일, 개정 대금업법 제3조 시행으로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및 지정신용정보기관 제도, 대금업무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제도 시행
7월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오릭스 크레딧 주식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해 자회사화
8월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가 주식회사 CCB를 합병하여 회사 약칭을 “JIC” 에서 “JICC” 로 변경
9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1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아이후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의 하나인 사업회생ADR(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을 신청
11월	- 대금업 등록업체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5,000사 이하로 감소 - 주식회사 로프로그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12월	- 일본사업자금융협회가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정 - 금융청은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에 규정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을 설치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2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회 사무국 회의에 소집되어 “대금업계의 현황” 에 대해 설명 -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가 경제산업청 장관으로부터 “인정 할부판매협회” 인가를 받음
2010년 1월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2회~제7회 사무국회의 개최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3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의 좌장(금융담당 차관) 앞으로 의견서(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비하여)를 제출
2월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8회~제10회 사무국회의 개최 - 금융청이 지정신용정보기관으로 지정 시 대금업체가 채무자로부터의 과불금 반환 청구에 응했을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등록되는 정보(서비스 정보 71 “계약 재검토 정보”)의 등록 및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4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4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2회~제13회 사무국회의 개최 - 일본대금업협회가 금융청 장관으로부터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 로 인정을 받음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이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 을 정리하여 공표 - 대금업 등록업체 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4,000사 이하로 감소
6월	18일, 상한금리의 인화와 총량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

	• 금융청은 개정 대금업법의 주지 철저와 완전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 및 지원하기 위해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설치
7월	• 금융청이 지정한 제3자 기관이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 ADR”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일본대금업협회는 “금융 ADR”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8월	• 오사카부가 개정 대금업법의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는 “대금특구” 구상을 내각부에 제안
9월	• 대금업 등록업체 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3,000사 이하로 감소 • 금융청은 일본대금업협회 등 7개 단체를 “금융 ADR” 분쟁해결 기관으로 지정 • 주식회사 다케후지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 금융청은 일본대금업협회를 대금업법에 의거한 등록 강습기관으로 등록
10월	• “금융 ADR” 제도 시행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11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10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12월	• 개정 할부판매법 완전 시행. 신용카드회사에 “지불 가능 금액” 조사를 의무화 •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2011년 1월	• 중소기업신용기구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4월	• 일본대금업협회는 금융청에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요청서” 제출 • 금융청은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예외 대출에 대한 절차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개정 공포·시행 • 마루와상사 주식회사(니코니코 크레디트)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6월	• “개정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 개인신용정보기관인 주식회사 CIC에서 대금업 등록 잔액 합계가 처음으로 10조엔 돌파
7월	•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회”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 지침인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운영 개시
8월	• 라쿠텐주식회사가 라쿠텐KC주식회사의 카드사업을 라쿠텐크레디트주식회사에 승계, 개인 대상 론 사업 등을 J트러스트주식회사에 양도, 사명을 “라쿠텐카드주식회사” • 금융청이 “다중채무자상담매뉴얼”을 개정하여 “다중채무자상담 입문”을 작성 공표
9월	•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과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프로미스주식회사는 SMFG에 의한 프로미스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기본계약 체결

10월	- 주식회사 신세이은행은 연결자회사인 신세이파이낸셜주식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 대상 무담보론사업의 일부를 양도 받아 은행에서 “카드론 레이크” 취급 개시 -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 정해진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이 2012년 3월 31일까지 연장
11월	일본대금업협회가 “2011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2012년 1월	주식회사 로프로가 회사분할(흡수분할)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다케후지의 소비자금융사업을 승계
3월	스루가은행 주식회사는 2011년 4월에 파산한 마루와상사주식회사(니코니코크레디트)의 전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화한다고 발표